

한 국 무 역 위 원 회

덤 핑 조 사 지 원 과

재심사 참여 신청서

(구제 23-2026-7호)

재심사대상물품	PET 필름 (Polyethylene Terephthalate)
공급국/관세영역	대만, 태국, UAE
재심사대상기간	2025. 1. 1. ~ 2025. 12. 31.
신청서 제출기한	2026. 9. 17.(목)
담당 조사관	안채린 (An, Chae-Rin)
- 전 화	82-44-203-3867
- 이메일	aquarin@korea.kr
답변서 제출처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
홈페이지	http://www.ktc.go.kr

I. 일반 사항

재정경제부는 관세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대만, 태국, UAE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2026년 8월 26일 이를 공고하였습니다. 재심사개시결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공고 제2026-23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선정된 재심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II. 요청정보상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Annex] CERTIFICATE OF ACCURACY를 날인하여 2026년 9월 17일까지 무역위원회에 재심사 참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심사대상공급자 >

- 공급국/관세영역 :
- 공급자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재심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합니다.

무역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6.10.2조에 따라 재심사대상공급자의 수가 너무 많아 개별적인 조사가 부당하게 부담이 되고 조사의 적시 종결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공급자의 재심사 참여 신청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선정된 재심사대상공급자 이외의 공급자가 재심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정보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사 참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할 것입니다.

II. 요청 정보

1. 회사 개요

(1) 회사

- 회 사 명(영문 및 한글) :
- 주 소(우편번호 포함) :
- 전 화 :
- 이 메 일 :
- 웹사이트 :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2) 법적대리인

- 대리기관명 :
- 대 리 인 명 :
- 주 소 :
- 전 화 :
- 이 메 일 :

(3) 회사 조직 및 관계사

귀사의 조직 및 관계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동 정보는 무역위원회가 귀사가 재심사대상물품의 개발, 생산, 판매, 유통 등에 관여하는 형태와 역할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동 정보 요청은 귀사뿐 아니라 귀사의 관계사도 대상으로 합니다. 관계사에 대한 정보는 향후 재심사 시 판매가격, 판매관리비, 제조원가 등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시장 및 물품

다음 표에 따라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귀사가 한국시장, 내수시장, 제3국 시장에 판매한 물량과 금액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시장	구 분	판매량 (단위 : 톤)	판매금액 (단위 : 미국달러 또는 내수화폐)
한 국	관계사에 대한 판매		
	비관계사에 대한 판매		
내 수	관계사에 대한 판매		
	비관계사에 대한 판매		
제3국	관계사에 대한 판매		
	비관계사에 대한 판매		

* 해당 수치에 단위를 함께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회계/재무 관행

귀사의 회계기간을 포함하여 회계 및 재무보고 관행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 정보는 귀사와 관련한 정보를 무역위원회가 확인하고 분석하는 용도로 활용될 것입니다.

4. 생산량

귀사가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생산한 재심사대상물품의 양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량 : 톤

5. 관계사

귀사의 모든 직·간접적인 관계사의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고 각 사가 재심사대상물품의 개발, 생산, 판매(내수 및 수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6. 귀사 및 귀사의 관계사가 무역위원회의 재심사대상에 포함되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현지실사도 진행될 수 있음에 동의하십니까?

[ANNEX]

CERTIFICATE OF ACCURACY

I, (name and title), currently employed by (company name), certify that

(1) I have read the submission, and (2)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submission
is, to the best of my knowledge, complete and accurate.

DATE: _____

(signature of certifying person)

□ 재심사대상공급자(List of selected suppliers)

관세영역 (Customs territory)	공급자 ¹⁾ (Suppliers)	주 소 (Address)	연락처 (Contact)
대 만 (Chinese Taipei) ²⁾	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5F., Lotus Bldg., No.136, Sec.3, Ren'ai Rd., Da'an Dist., Taipei City, Taiwan	+886-2-2507-1251

1) 명시된 공급자뿐 아니라 조사대상물품의 개발, 생산, 판매, 유통 등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회사)도 본 반덤핑조사의 당사자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만의 WTO 공식 회원명 :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Chinese Taipei)

공개용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2차)
개시여부 검토보고서
(조사번호: 구제 23-2026-7호)

2026. 7.

무 역 조 사 실

< 목 차 >

I. 재심사 요청 개요	1
1. 요청인 및 피요청인	1
2. 그간의 조치경과	4
3. 재심사요청물품 및 국내생산물	5
4.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	8
5. 국내수급 현황	9
6. 비밀취급여부 검토	10
II. 재심사 개시 여부 검토	13
1. 요청자격	15
2. 재심사 요청기한 준수 여부	15
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15
4.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18
III. 종합 검토의견	19
IV. 재심사 개시 결정사항	20
< 참고자료 >	
1. 그간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 무역구제조치 개요	22
2. 요청인이 제출한 덤핑의 지속 및 재발가능성 관련 증빙자료	26
3. 요청인이 제출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및 재발가능성 관련 증빙자료	31
4.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검토 자료	37
5. 재심사요청서 상 비밀취급 요청정보 및 사유	41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의 자료는 환산값과 증감률을 표시함
 - 환산값은 예시와 같이 기준 연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 연도 값과 환산값은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예) 기준 연도 값 : 1,0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변동폭(%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 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음수(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음수(또는 적자) 확대', '양수(또는 흑자) 전환'등으로 표시함

I. 재심사 요청 개요

1. 요청인 및 피요청인

가. 요청취지

- '26.6.19. 도레이첨단소재(주)¹⁾, 마이크로웍스(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은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동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함

나. 요청인

- 요청인: 도레이첨단소재(주), 마이크로웍스(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 대리인: 법무법인(유) JR(변호사 김학훈), 우리회계법인(회계사 한동운)

(‘25년 기준)

요청인		도레이첨단소재(주)
회사설립연월일		1999.12.1.
대표자		김영섭
주소	본사	서울특별시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34, 35, 36층
	구미 1공장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2로 300
	구미 2공장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102
	구미 3공장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249-29
자본금		944,622백만원
주요주주 및 지분율		Toray Industries, Inc.(100.0%)
매출액	총매출액	2,049,291백만원
	동종물품	xxx백만원
주요생산제품		PET 필름, PET 원사, PP/PET 스펀본드부직포, PET 수지
종업원수		2,301명

* 자료: 재심사요청서

1) 본 보고서에서 회사명 앞이나 뒤의 (주)는 주식회사의 약어임

('25년 기준)

요청인		마이크로웍스(주) ²⁾
회사설립연월일		2024.10.4.
대표자		신용선
주소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A동 10층)
	수원사업장 (PET 필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09번길 84
	R&D 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02
	진천사업장 (PET 필름)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고등 1길 27
	김천공장	경북 김천시 공단로 238(웅명동)
	울산공장	울산시 남구 사평로 33(상개동)
자본금		2,572백만원
주요주주 및 지분율		한앤코오스카홀딩스 주식회사(100%)
매출액	총매출액	572,262백만원
	동종물품	xxx백만원
주요생산제품		PET 필름
종업원수		604명

* 자료: 재심사요청서

('25년 기준)

요청인		(주)효성화학 ³⁾
회사설립연월일		2018.6.1.
대표자		이천석
주소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반포동)
	구미공장	경북 구미시 3공단2로 108(시미동)
	용연 1공장	울산시 남구 처용로 487번길 66(성암동)
	용연 2공장	울산시 남구 처용로 487번길 65(성암동)
	용연 3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30(용연동)
	대전공장	대전시 대덕구 신일서로17번길 85(신일동)
	옥산공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산단로 99(호죽리)
자본금		18,959백만원
주요주주 및 지분율		조현준 외(19.48%), (주)효성(32.84%)
매출액	총매출액	1,271,649백만원
	동종물품	xxx백만원
주요생산제품		Nylon 필름, PET 필름, PP/DH, TPA, Naochem, POK
종업원수		884명

* 자료: 재심사요청서

2) 마이크로웍스(주)는 1973.7.16. 설립된 에스케이씨(주)에서 2022.11.1. 분할된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주)에서 2024.10.4. 분할되어 설립됨

3) 효성화학은 2018.6.1. (주)효성에서 화학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됨

('25년 기준)

요청인		(주)화승케미칼
회사설립연월일		2018.2.1.
대표자		현석호
주소	본사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287-21 장천빌딩 6층
	아산공장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98-7
자본금		1,000 백만원
주요주주 및 지분율		화승인더트리(100%)
매출액	총매출액	144,801백만원
	동종물품	xxx백만원
주요생산제품		BOPP 필름, PET 필름
종업원수		xxx명

* 자료: 재심사요청서

다. 피요청인

공급국/ 관세영역 ⁴⁾	공급자	요청인 주장 덤핑률
대만	신콩 (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8.68%
	그 밖의 공급자	
태국	에이제이피 (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5.42%
	폴리플렉스 (Polyplex(Thailand) Public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그 밖의 공급자	
아랍 에미리트 연합 (이하 'UAE')	플렉스 (Flex Middle East FZE)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1.48%
	제이비에프 (JBF RAK LCC)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그 밖의 공급자	

* 자료: 재심사요청서

4) 대만은 '02.1월 대외무역 관계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한 '독자적 관세영역'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바, 이하 본 보고서에서 대만을 '관세영역'으로 지칭함(무역위원회 의결 제2026-19회, p.2. 각주3 참조)

2. 그간의 조치경과

공급국/ 관세영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원심 (‘18.04.30. ~’21.04.29.)	1차재심 (‘21.12.24. ~’26.12.23.)
대만	신콩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8.68%	5.49%
	그 밖의 공급자	8.68%	5.49%
태국	에이제이피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71%	3.71%
	폴리플렉스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7%	3.19%
	그 밖의 공급자	3.68%	3.68%
UAE	플렉스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98%	7.98%
	제이비에프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0.95%	60.95%
	그 밖의 공급자	51.48%	51.48%

3. 재심사요청물품 및 국내생산품

가. 재심사요청물품

○ 품명: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 관세품목분류(HSK⁵⁾): 3920.62.0000, 3920.69.0000
- 관세율: 기본관세율 8%, WTO협정세율(대만) 6.5%,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태국) 0%, 한-UAE CEPA 협정세율(UAE) 0%

- 정의: 통상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TPA) 또는 테레프탈산디메틸(Dimethyl Terephthalate, DMT)과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EG) 간 축중합 등으로 얻어진 PET chip을 면상으로 압출한 후 종·횡연신을 통해 일정한 두께와 물성을 부여한 필름
- 재심사 범위: PET 필름 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의 합이 0.25 μm ⁶⁾ 이하인 것. 다만,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또는 유채색(흰색 제외) 물품은 제외함
- 물리적 특성: PET 필름의 용도와 품질수준을 결정하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장강도⁷⁾, 신장률⁸⁾, 흐림도⁹⁾, 가열수축률¹⁰⁾ 등이 있음

관세품목분류			정 의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	6-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3920	62	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3920	69	00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 1마이크로미터(μm , micron, micrometer)는 1mm의 1/1,000임

7) 인장강도: 표준시편을 일정한 속도로 잡아당겼을 때 절단되는 힘

8) 신장률: 표준시편에 가해지는 인장력에 의해 늘어난 길이로, 초기 길이에 대한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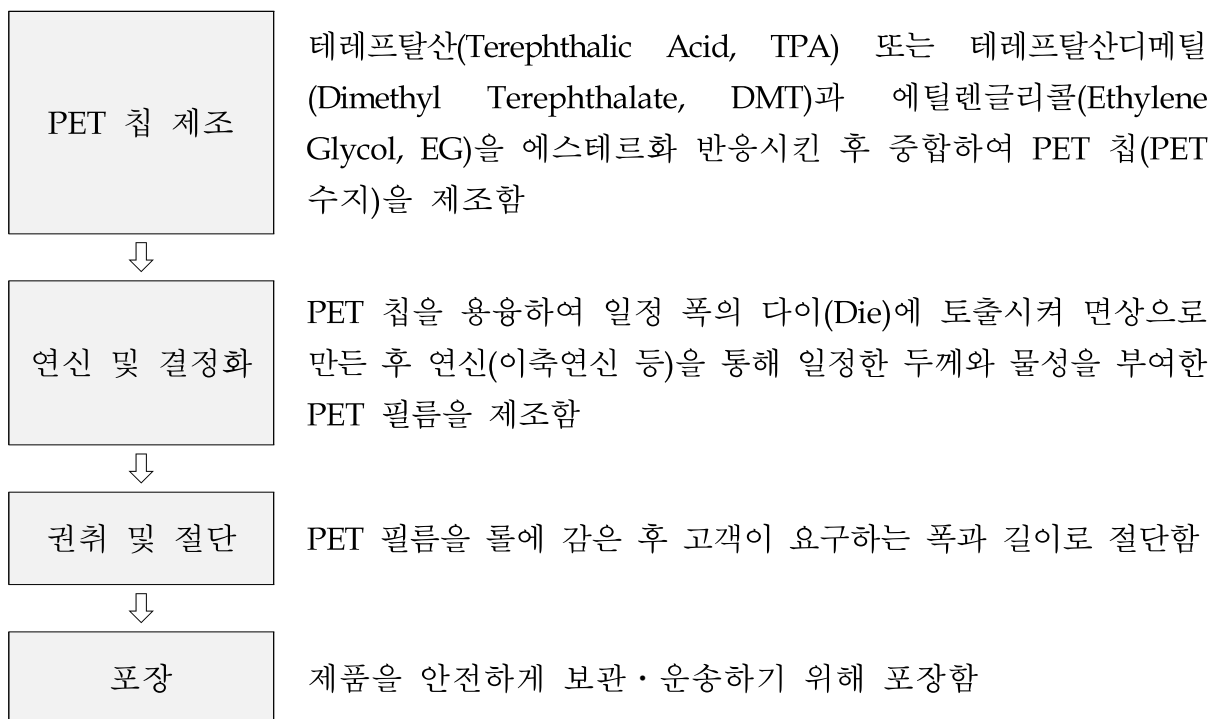
9) 흐림도: 기재를 통과한 빛이 산란된 정도, 탁도(濁度)라고도 함

10) 가열수축률: 연신된 필름이 일정한 높은 온도 하에서 방치되었을 때 수축되는 정도

○ 용도

- (포장용) 높은 기계적 특성과 열적 안정성으로 식품 포장재*로 널리 사용
* 레토르트 식품 포장재, 과자 포장재(폴리프로필렌(PP) 필름 등과 합지)
- (산업용) 우수한 전기절연성, 내한·내온성으로 전자용, 공정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
* 모터 절연용, MLCC¹¹⁾ 생산용, 태양전지 Back Sheet, 접착테이프 등
- (광학용) 높은 투명도, 강도 및 내열성으로 LCD용, BLU 소재, 편광판 보호용 및 확산 프리즘 필름으로 사용
- (그래픽용) 내화학적 및 전도성 등이 매우 우수하여 잉크젯 및 레이저 프린터의 인쇄용지 및 인쇄판용으로 사용

○ 제조공정



11)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s): 세라믹과 금속(전극)을 여러 층으로 쌓아 만든 초소형 콘덴서로서, 전자기기 회로에서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량씩 내보내는 '담'의 역할을 수행함

- 유통경로: 국내수입상이 해외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수요자가 직접 해외수출자로부터 수입함



나. 국내생산품

- 국내생산품은 재심사요청물품과 품명, 정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유통경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함
- 원심¹²⁾과 1차 종료재심사¹³⁾에서 국내생산품과 재심사요청물품은 동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12) 무역위원회 의결 제2018-1호('18.1.18.)

13) 무역위원회 의결 제2021-11호('21.9.16.)

4.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

가. 국내생산자

('25년 기준)

국내생산자	생산량(톤)	비중(%)
도레이첨단소재(주)	xxx	xxx
마이크로웍스(주)	xxx	xxx
(주)효성화학	xxx	xxx
(주)화승케미칼	xxx	xxx
합계	xxx	100%

* 자료: 재심사요청서

나. 수입자

○ xxx, xxx, xxx, xxx 등

다. 수요자

○ xxx, xxx, xxx, xxx 등

5. 국내수급 현황

- PET 필름의 수요는 '25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소비는 xxx톤으로 xxx%, 국내생산품 수출은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 PET 필름의 공급은 '25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공급은 xxx톤으로 xxx%, 외국산제품 총수입은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 국내수급 현황 >

(단위: 톤, 백만원,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요	국내소비 (국산품내수 +총수입)	물량	<u>1,000</u>	<u>928</u>	-7.2	<u>996</u>	7.3	<u>959</u>	-3.7
		금액	<u>1,000</u>	<u>885</u>	-11.5	<u>918</u>	3.7	<u>919</u>	0.1
	수출 (국산품 수출)	물량	<u>1,000</u>	<u>931</u>	-6.9	<u>1,031</u>	10.7	<u>787</u>	-23.6
		금액	<u>1,000</u>	<u>916</u>	-8.4	<u>1,042</u>	13.7	<u>887</u>	-14.8
합계		물량	<u>1,000</u>	<u>929</u>	-7.1	<u>1,005</u>	8.2	<u>914</u>	-9.1
		금액	<u>1,000</u>	<u>894</u>	-10.6	<u>954</u>	6.7	<u>910</u>	-4.6
공급	국내공급 (국산품내수 +수출)	물량	<u>1,000</u>	<u>915</u>	-8.5	<u>947</u>	3.5	<u>818</u>	-13.6
		금액	<u>1,000</u>	<u>912</u>	-8.8	<u>978</u>	7.3	<u>893</u>	-8.8
	수입 (총수입)	물량	<u>1,000</u>	<u>980</u>	-2.0	<u>1,218</u>	24.3	<u>1,267</u>	4.0
		금액	<u>1,000</u>	<u>810</u>	-19.0	<u>836</u>	3.2	<u>994</u>	18.9

* 자료: 재심사요청서

6. 비밀취급여부 검토

< 주요 검토사항 >

- 비밀취급 요청한 자료가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요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비밀취급 요청한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비밀취급 요청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요약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규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6.5조

성격상 비밀인 정보 (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아니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1조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2조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정보의 제공자가 그 정보의 공개나 일반화된 또는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인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가. 비밀취급 요청 자료

- 요청인 제출자료: 재심사요청서 및 별첨자료

나. 비밀취급 요청 사유 및 요약서 제출 여부

- 요청인은 비밀취급 요청 자료에 대해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상세한 공개본 자료를 제출하였음

다. 비밀취급 요청 자료 공개 시 제출자 및 이해관계인 이익의 침해 우려 여부 등

- 요청인은 제조원가,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거래처 정보 등 비밀취급을 요청하는 정보 및 사유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였음¹⁴⁾
- 조사실은 재심사 요청서 및 별첨서류 상의 비공개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자들이 해당 정보를 영업에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요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정적 영향이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참고5) 재심사요청서 상 비밀취급 요청정보 및 사유

II. 재심사 개시 여부 검토

< 주요 검토사항 >

- 재심사 요청인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 재심사 요청기한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였는지 여부
- 덤프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관련 법규

- 관세법 제56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프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
 - 2. 덤프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프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은 덤프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프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 WTO 반덤핑협정 제5.3조

당국은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11.2조

당국은 ...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관세의 계속적인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해당사자는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 관세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갖는다. ...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 모든 확정 반덤핑관세는 부과일(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가 덤핑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제2항에 의한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된다. 다만, ... 동 일자 이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요청자격

- 요청인인 도레이첨단소재(주), 마이크로웍스(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은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요청자격이 있음

2. 재심사 요청기한 준수 여부

- 재심사요청서가 접수된 '26.6.19.은 1차 종료재심사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작일인 '21.12.24.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이며, 덤핑방지조치의 종료일인 '26.12.23.로부터 6월 이전에 해당되므로 재심사 요청기한을 준수함

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가. 요청인의 주장

- (태국) 요청인은 태국산 물품의 경우 1차재심조치 이후에도 수입량이 증가세를 보였고, 공급국 수출 여력 또한 여전히 높아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이 지속 또는 재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요청인 제시 덤핑률 45.42%)을 요청함
- (대만, UAE) 요청인은 대만 및 UAE산 물품의 경우 1차재심조치 이후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각 국가·지역의 높은 수출 여력을 고려할 때, 조치 종료 시 덤핑이 재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만 및 UAE산 물품에 대한 원심 덤핑률¹⁵⁾인 8.68%, 51.48%를 적용하여줄 것을 요청함
- 또한 요청인은 대만·UAE산 물품은 PET 필름 세계 2위 소비국인 미국으로부터, 태국산 물품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바,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한국으로의 덤핑이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15) 요청인은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덤핑방지조치의 영향이 없었던 정상적인 경쟁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조사 시 산정한 덤핑률을 제시함

나. 요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 요청인은 대만, 태국 및 UAE산 재심사요청물품에 대하여 각각 8.68%, 45.42%, 51.48%의 덤핑률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 태 국 >

- (정상가격) 요청인은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정보를 입수하고자 하였으나, 기업 간 거래(B to B) 품목 특성상 해당 가격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음¹⁶⁾
 - 이에 따라 요청인은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자료로서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ICIS¹⁷⁾)의 원재료 가격¹⁸⁾ 자료, 요청인의 제조원가¹⁹⁾, 태국 내 알려진 공급자인 ‘폴리플렉스’²⁰⁾의 공개된 재무제표 등을 사용하여 구성가격을 산정·제출함
 - 한편, 내수판매 시 내륙운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비공개 정보로서 파악이 어려워 해당 비용을 정상가격 조정요소로 제시하지 않았고,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덤핑가격 조정요소에도 포함하지 않음
-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 요청인은 ‘25.1월~’25.12월 태국산 재심사요청 물품의 평균수입가격(CIF)을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으로 사용하고, 한국 관세무역개발원 수입통계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함
 - 덤핑가격 조정요소로는 해상운반비를 제시하고, 관련 증빙²¹⁾을 제출함

16) 요청인은 코트라(KOTRA)에 공급국 소매가격동향 조사를 의뢰했으나, 조사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

17) ICIS(Independent Commodity Intelligence Services, www.icis.com): 1871년 설립된 글로벌 상품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화학, 에너지, 약품, 플라스틱 및 고무 등의 가격·서비스·정보 및 컨설팅 등 제공

18) 2025년도 평균 원재료 가격

19) 요청인의 원재료 비용 대비 PET 칩 가공비 및 노무비·제조경비 비율에 관한 2025년 자료

20) 태국의 재심사대상공급자임

21) 요청인의 태국 방콕항~한국 부산항 간 2025년 평균 해상운임 증빙자료

< 대만 및 UAE >

- 요청인은 원심 및 1차재심 조치 이후 대만 및 UAE산 재심사요청물품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합리적인 덤핑률 추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 당시 피요청인(대만) 및 그 밖의 공급자(UAE)에 대하여 산정된 덤핑률인 8.68%(대만), 51.48%(UAE)를 금번 재심 덤핑률로 제시함
- 아울러, 요청인은 대만 및 UAE산 재심사요청물품에 대한 덤핑의 재발 가능성에 관한 근거로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입통계자료, 각 국가 및 지역의 수출여력에 관한 자료(Wood Mackenzie 보고서²²⁾)를 증빙으로 제출함
- WTO 반덤핑협정 제5.3조 규정에 따라, 요청서에 제시된 증빙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대한 재심사 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판단함

22) Wood Mackenzie : 1973년 최초로 석유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한 화학산업 전문 조사기관으로, 글로벌 오일, 가스, 에너지, 금속 및 화학 시장에 대한 시장정보 조사·제공. 요청인은 Wood Mackenzie에서 발행한 '2025 Global BOPET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을 각 국가·지역별 수출여력에 관한 증거로 제시함

4.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가. 요청인의 주장

- 요청인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재심사요청물품의 저가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요청함

나. 요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 요청인은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관한 증빙자료로 요청인의 결산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공급국 및 관세영역의 생산 및 수출 현황 등의 자료(Wood Mackenzie, International Trade Centre²³⁾ 보고서 등)를 제출함
 - 재심사요청물품 및 국내생산품의 '22년부터 '25년까지의 물량, 가격 현황, 시장점유율 등의 자료를 제출함
 -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2년부터 '25년까지의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판매량, 재고율, 손익, 제조원가, 설비투자, 연구개발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함
- WTO 반덤핑협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서에 제시된 증빙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대하여 재심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판단됨

23) 196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해 세계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무역조직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1968년부터 GATT/WTO와 유엔의 공동 후원 하에 운영되어 현재 UN과 WTO의 소속기관으로서 세계무역통계의 데이터를 제공 및 연구하고, 국제무역의 활성화 지원, 수출지원방법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Ⅲ. 종합 검토의견

- 재심사요청인의 요청서를 검토한바, 재심사 개시에 필요한 재심사 요청 자격 및 요청기한 요건을 충족함
-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됨
- 따라서, 관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재심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IV. 재심사 개시 결정사항

1. 재심사대상물품

- 품명: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 관세품목분류(HSK): 3920.62.0000, 3920.69.0000
- 관세율: 기본관세율 8%, WTO협정세율(대만) 6.5%,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태국) 0%, 한-UAE CEPA 협정세율(UAE) 0%

- 재심사 범위: 기획재정부령 제877호²⁴⁾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PET 필름 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의 합이 0.25 μ m 이하인 것. 다만,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또는 유채색(흰색 제외) 물품은 제외함

2.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대한 재심사
 - '25.1.1.부터 '25.12.31.까지로 하되,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대한 재심사
 - '22.1.1.부터 '25.12.31.까지로 하되, 국내산업피해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판정 시 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24) 기획재정부령 제877호: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21.12.24.)

3. 재심사대상공급자

-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대한 재심사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공급국/ 관세영역	공급자	요청인 제시 덤핑률
대만	신콩 (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8.68%
태국	에이제이피 (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	45.42%
	폴리플렉스 (Polyplex(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	
UAE	플렉스 (Flex Middle East FZE)	51.48%
	제이비에프 (JBF RAK LLC)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대한 재심사
 - 대상범위: 국내생산자, 국내수입자, 국내수요자, 해외공급자 등
 - * 실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수행함

4. 재심사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실시하되,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이해관계인 참가 신청

- 재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결정에 관한 관보 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 【덤핑부문은 덤핑조사지원과(044-203-3867),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6)】에 제출토록 함

참고1

그간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 무역구제조치 개요

< 원심 >

1. 개요

- 신청인: 에스케이씨(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 총 5개사(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 신청물품: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
 - 재심사범위: PET 필름 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의 합이 $0.25\mu\text{m}$ 이하인 것
 - * 다만,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 관세품목분류: HSK 3920.62.0000, 3920.69.0000
- 덤핑방지조치기간: '18.4.30~'21.4.29(3년), 덤핑방지관세부과율: 3.67~60.95%
- 덤핑방지관세 부과율

공급국/ 관세영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 부과율(원심)
대만	신콩 (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8.68%
	그 밖의 공급자	8.68%
태국	에이제이피 (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	3.71%
	폴리플렉스 (Polyplex(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	3.67%
	그 밖의 공급자	3.68%
UAE	플렉스 (Flex Middle East FZE)	7.98%
	제이비에프 (JBF RAK LLC)	60.95%
	그 밖의 공급자	51.48%

2. 원심 판정 내용²⁵⁾

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 여부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품명 및 조사범위가 동일하며, 조사대상 공급자의 답변서 및 홈페이지와 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품 주요 사양을 검토한 결과 물리적 특성, 제조공정, 용도 및 유통경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함
- 수요자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혼용 또는 대체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어 상호 동종물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과 조사대상물품이 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이 저가로 판매되고 있고, 덤핑물품의 판매 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하락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확인

다.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유무

- 국내산업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내수판매량 감소 및 판매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영업이익 및 시장점유율 하락, 수익성 악화, 투자유인 및 투자여력 약화 등 경영지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함

라. 덤핑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유무

- 덤핑물품 이외의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고 판매가격도 동종물품 및 덤핑물품과 비교하여 하락폭이 작은 점을 고려할 때,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덤핑물품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평가

²⁵⁾ 무역위원회 의결 제2018-1호('18.1.18.)

< 1차 종료재심사 >

1. 개요

- 신청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효성화학(주), (주)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 총 5개사(대리인: 법무법인 린, 우리회계법인)
- 신청물품: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
 - 재심사범위: PET 필름 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의 합이 $0.25\mu\text{m}$ 이하인 것
 - * 다만,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 관세품목분류: HSK 3920.62.0000, 3920.69.0000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21.12.24~'26.12.23(5년), 덤핑방지관세부과율: 3.19~60.95%
- 덤핑방지관세 부과율

공급국 / 관세영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 부과율 (1차재심)
대만	신콩 (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5.49%
	그 밖의 공급자	5.49%
태국	에이제이피 (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	3.71%
	폴리플렉스 (Polyplex(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	3.19%
	그 밖의 공급자	3.68%
UAE	플렉스 (Flex Middle East FZE)	7.98%
	제이비에프 (JBF RAK LLC)	60.95%
	그 밖의 공급자	51.48%

2. 1차 종료재심사 판정 내용²⁶⁾

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 여부

- 국내생산품은 재심사대상물품과 품명 및 정의, 물리적 특성, 기능 및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및 소비자평가 등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은 최종수요자에 의하여 혼용 또는 대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고있는 것으로 판단

나.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 재심사대상공급자의 덤핑사실 여부,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변동, 공급국 및 관세영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한국시장으로의 덤핑수입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다.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 덤핑방지조치 후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등에서 국내산업이 개선되는 효과가 일부 있었고, 이러한 개선효과에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
- 덤핑방지조치 시 한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만큼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할 요인이 생겨 국내동종물품과의 판매가격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고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억제 내지 하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덤핑조치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관세 영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가격비교 및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²⁶⁾ 무역위원회 의결 제2021-11호('21.9.16.)

참고2

요청인이 제출한 덤프의 지속 및 재발가능성 관련 증빙자료

1. 국가/관세영역별 증빙 자료

< 대만 >

☐ 재심사요청물품의 對한국 수출동향

- 요청인은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된 '17년 이후, 대만산 재심사요청물품의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덤프방지 조치의 효과이며, 동 조치가 종료 되면 덤프가 재발할 것이라 주장하고, 관련 수입통계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함

<대만산 PET 필름 수입통계>

(단위: 톤)

2017 (원심 '17.4월~)	2018	2019	2020 (1차재심 '20.12월~)	2021	2022	2023	2024	2025
<u>1,000</u>	<u>888</u>	<u>934</u>	<u>783</u>	<u>518</u>	<u>546</u>	<u>309</u>	<u>35</u>	<u>23</u>

* 자료: 재심사요청서(HS CODE 3920.62 및 3920.69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입통계자료)

☐ 요청인 주장 덤프률

- 요청인은 원심조치 이후 대만산 재심사요청물품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제3국의 對대만 반덤핑조치 현황, 대만의 높은 초과생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현행조치 종료 시 덤프의 재발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원심 시 대만의 조사대상공급자,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산정된 8.68%의 덤프률을 금번 재심에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태국 >

□ 재심사요청물품의 對한국 수출동향

- 요청인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17년 이후, '18~'19년은 태국산 재심사요청물품이 감소하였으나 '2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동 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이 지속 또는 재발할 것이라 주장하며, 관련 수입통계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함

<태국산 PET 필름 수입통계>

(단위: 톤)

2017 (원심, '17.4월~)	2018	2019	2020 (1차재심, '20.12월~)	2021	2022	2023	2024	2025
<u>1,000</u>	<u>865</u>	<u>773</u>	<u>1,117</u>	<u>1,399</u>	<u>1,389</u>	<u>1,367</u>	<u>1,401</u>	<u>1,538</u>

* 자료: 재심사요청서(HS CODE 3920.62 및 3920.69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입통계자료)

□ 요청인 주장 덤핑률

- 요청인은 태국의 공급자에 대하여 45.42%의 덤핑률을 제시함

(단위: USD/kg)

조정된 정상가격(A)	조정된 수출가격(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비공개				45.42%

□ 덤핑률 산정근거 및 증빙자료

-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 요청인은 태국의 내수시장가격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워 재심사요청물품의 정상가격으로서 구성가격을 산정·제시함
- (정상가격) 통상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 비용 및 이윤을 이용하여 산정한 구성가격을 조정 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으며, 그 증빙자료를 제출함

- (조정요소) 내수판매 시 내륙운반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비공개 정보로서 요청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해당 비용을 정상가격 조정요소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덤핑가격 조정요소에도 포함하지 않음

(단위: USD/kg)

제조원가(A)			판매관리비 ²⁷⁾ (B)	이윤 (C)	조정요소 (D)	조정된 정상가격 ²⁸⁾ (E=A+B+C+D)
재료비 ²⁹⁾	가공비 ³⁰⁾	소계(A)				
비공개						

○ 덤핑가격 및 조정요소

- (덤핑가격) 요청인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수입통계자료상 '25년도의 재심사요청물품의 평균수입단가(CIF)를 수출가격으로 사용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
- (조정요소) 태국 내 운임은 정상가격 조정요소와 동일하게 포함하지 않았으며, 해상운반비는 요청인이 실제 거래한 운송업체의 '25년 평균 운임(방콕항~부산항)을 적용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

(단위: USD/kg)

덤핑가격(A)	조 정 요 소(B)	조정된 덤핑가격(C=A-B)
	해상운송비	
비공개		

- 과세가격: 요청인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수입통관자료상 '25년의 재심사요청물품의 평균수입단가(CIF 가격)를 과세가격으로 사용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

27) 구성가격 산정을 위한 판매관리비와 이윤은 태국의 재심사대상공급자인 '폴리플렉스'의 공시된 재무 자료를 사용함

28) 보고서에 기재된 CCN별 제조원가, 이윤 및 구성가격, 각종 조정요소 등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표기 값이며, 실제 덤핑률 산정 시에는 자릿수 조정 없이 실제 단가를 적용함. 이하 동일

29) 원재료비는 재심사요청물품의 원재료인 TPA와 MEG에 대하여 ICIS에서 공시하는 2025년의 평균시장 가격을 적용하고, 주요 원재료인 PTA와 MEG는 실제 생산에서 소요되는 투입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함

30) 요청인인 국내생산자의 2025년 제조원가명세서를 이용해 가공비를 산정함

< UAE >

☐ 재심사요청물품의 對한국 수출동향

- 요청인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17년 이후, UAE산 재심사요청물품의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덤핑방지 조치의 효과이며, 동 조치가 종료 되면 덤핑이 재발할 것이라 주장하고, 관련 수입통계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함

<UAE산 PET 필름 수입통계>

(단위: 톤)

2017 (원심, '17.4월~)	2018	2019	2020 (1차재심, '20.12월~)	2021 ³¹⁾	2022	2023	2024	2025
<u>1,000</u>	<u>326</u>	<u>71</u>	<u>19</u>	<u>327</u>	<u>42</u>	<u>30</u>	<u>26</u>	<u>19</u>

* 자료: 재심사요청서(HS CODE 3920.62 및 3920.69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입통계자료)

☐ 요청인 주장 덤핑률

- 요청인은 원심조치 이후 UAE산 재심사요청물품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제3국의 對UAE 반덤핑조치 현황, UAE의 높은 초과생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현행조치 종료 시 덤핑의 재발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원심 시 UAE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산정된 51.48%의 덤핑률을 금번 재심에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제3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 재심사대상국가 모두 제3국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고 있음

조사국가	피조사국가/관세영역	최초 부과명령	덤핑방지관세 부과율
미국	대만	'20.5.20	1.06%~2.56%
	UAE	'08.9.24	4.8%~70.75%
인도네시아	태국	'15.12.7	2.2%~7.1%

* 자료: 재심사요청서(미상무성 및 인도네시아 KADI 판정문)

31) '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입 증가가 나타났으나, 이후 다시 감소함

3. 재심사대상국가의 수출여력

□ 재심사대상국가 및 지역별 PET 필름 산업현황을 살펴보면, '25년 기준 생산능력은 대만 xxx톤, 태국 xxx톤, UAE xxx톤임

○ 이 중, 태국과 UAE의 여유생산능력은 각각 xxx톤(자국 총수요의 약 xxx배), xxx톤(자국 총수요의 xxx배)으로 자국 수요를 현저히 초과해, 수출여력이 크다고 판단됨

< 재심사대상국가의 여유생산 능력 >

(단위: 천톤)

국가/ 관세영역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대만	생산능력	<u>1,000</u>	<u>1,030</u>	<u>1,030</u>	<u>1,030</u>	<u>1,030</u>	<u>1,030</u>
	총수요	<u>1,000</u>	<u>1,028</u>	<u>1,037</u>	<u>1,065</u>	<u>1,065</u>	<u>1,084</u>
	초과생산능력	<u>1,000</u>	<u>1,033</u>	<u>1,016</u>	<u>967</u>	<u>967</u>	<u>934</u>
태국	생산능력	<u>1,000</u>	<u>1,124</u>	<u>1,177</u>	<u>1,247</u>	<u>1,274</u>	<u>1,274</u>
	총수요	<u>1,000</u>	<u>1,036</u>	<u>1,071</u>	<u>1,107</u>	<u>1,161</u>	<u>1,179</u>
	초과생산능력	<u>1,000</u>	<u>1,162</u>	<u>1,223</u>	<u>1,308</u>	<u>1,323</u>	<u>1,315</u>
UAE	생산능력	<u>1,000</u>	<u>1,000</u>	<u>1,000</u>	<u>1,000</u>	<u>1,000</u>	<u>1,000</u>
	총수요	<u>1,000</u>	<u>1,000</u>	<u>1,000</u>	<u>1,000</u>	<u>1,100</u>	<u>1,100</u>
	초과생산능력	<u>1,000</u>	<u>1,000</u>	<u>1,000</u>	<u>1,000</u>	<u>992</u>	<u>992</u>

* 자료: 재심사요청서(2025 Global BOPET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 by Wood Mackenzie)

참고 3

요청인이 제출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및 재발가능성 관련 증빙자료

1. 국내소비 현황

< 국내소비 현황 >

(단위: 톤, 백만원, %)

구분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³²⁾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a=b+e)	물량		<u>1,000</u>	<u>928</u>	-7.2	<u>996</u>	7.3	<u>959</u>	-3.7
	금액		<u>1,000</u>	<u>885</u>	-11.5	<u>918</u>	3.7	<u>919</u>	0.1
총수입 (b=c+d)	물량		<u>1,000</u>	<u>980</u>	-2.0	<u>1,218</u>	24.3	<u>1,267</u>	4.0
	금액		<u>1,000</u>	<u>810</u>	-19.0	<u>836</u>	3.2	<u>994</u>	18.9
재심사요청 물품 ³³⁾ 수입(c)	물량		<u>1,000</u>	<u>909</u>	-9.1	<u>840</u>	-7.6	<u>917</u>	9.2
	금액		<u>1,000</u>	<u>694</u>	-30.6	<u>699</u>	0.7	<u>778</u>	11.3
대만산	물량		<u>1,000</u>	<u>566</u>	-43.4	<u>64</u>	-88.7	<u>43</u>	-33.0
	금액		<u>1,000</u>	<u>446</u>	-55.4	<u>107</u>	-76.1	<u>210</u>	97.1
태국산	물량		<u>1,000</u>	<u>984</u>	-1.6	<u>1,008</u>	2.5	<u>1,107</u>	9.8
	금액		<u>1,000</u>	<u>747</u>	-25.3	<u>825</u>	10.4	<u>899</u>	9.0
UAE산	물량		<u>1,000</u>	<u>696</u>	-30.4	<u>615</u>	11.7	<u>459</u>	-25.3
	금액		<u>1,000</u>	<u>587</u>	-41.3	<u>545</u>	-7.0	<u>416</u>	-23.7
기타국산 물품수입(d)	물량		<u>1,000</u>	<u>1,049</u>	4.9	<u>1,585</u>	51.1	<u>1,605</u>	1.3
	금액		<u>1,000</u>	<u>887</u>	-11.3	<u>927</u>	4.5	<u>1,138</u>	22.8
국내생산품 출하(e)	물량		<u>1,000</u>	<u>907</u>	-9.3	<u>905</u>	-0.3	<u>833</u>	-7.9
	금액		<u>1,000</u>	<u>909</u>	-9.1	<u>944</u>	3.9	<u>895</u>	-5.2
국내 시장 점유율	재심사요청 물품				-0.3%p		-1.9%p		1.6%p
	대만산				-1.0%p		-1.3%p		-0.1%p
	태국산				0.7%p		-0.6%p		1.7%p
	UAE산				0.0%p		0.0%p		0.0%p
	기타국산				1.9%p		6.8%p		1.2%p
	국내생산품				-1.6%p		-4.9%p		-2.8%p

* 자료: 재심사요청서

32) 이하 본 보고서에서 %를 단위로 하는 지표(시장점유율, 가동률 등)의 경우 '증감률'란에 표기된 수치는 각 연도의 전년 대비 변동폭을 의미하며, 그 단위로 %p를 표기함

33) 참고 3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재심사요청서 증빙자료 표에 표기된 '재심사요청물품'은 대만, 태국 UAE산 PET 필름을 의미함

2. 가격 현황

< 가격 현황 >

(단위: 원/KG, %)

구분 \ 연도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요청물품 원화재판매가격 ³⁴⁾		<u>1,000</u>	<u>740</u>	-26.0	<u>860</u>	16.3	<u>877</u>	2.0
	대만산	<u>1,000</u>	<u>789</u>	-21.1	<u>1,673</u>	112.2	<u>4,916</u>	193.8
	태국산	<u>1,000</u>	<u>737</u>	-26.3	<u>794</u>	7.7	<u>788</u>	-0.7
	UAE산	<u>1,000</u>	<u>842</u>	-15.8	<u>884</u>	4.9	<u>919</u>	4.0
국내생산품 평균판매가격		<u>1,000</u>	<u>1,002</u>	0.2	<u>1,044</u>	4.1	<u>1,074</u>	2.9

* 자료: 재심사요청서

3. 국내산업 생산 현황

< 국내산업 생산 현황 >

(단위: 톤, %)

구분 \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u>1,000</u>	<u>1,000</u>	0.0	<u>1,000</u>	0.0	<u>844</u>	-15.6
생산량(b)	<u>1,000</u>	<u>889</u>	-11.1	<u>896</u>	0.8	<u>849</u>	-5.2
가동률(b/a)			-7.8%p		0.5%p		7.7%p

* 자료: 재심사요청서

34) 원화재판매가격 = 평균수입가격(CIF) + 관세 + 통관제비용

4. 판매 현황

< 판매 현황 >

(단위: 톤, 백만원, %)

구분 \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 판매 (a=b+c+d)	물량	<u>1,000</u>	<u>915</u>	-8.5	<u>947</u>	3.5	<u>818</u>	-13.6
	금액	<u>1,000</u>	<u>912</u>	-8.8	<u>978</u>	7.3	<u>893</u>	-8.8
국내판매 (b)	물량	<u>1,000</u>	<u>907</u>	-9.3	<u>905</u>	-0.3	<u>833</u>	-7.9
	금액	<u>1,000</u>	<u>909</u>	-9.1	<u>944</u>	3.9	<u>895</u>	-5.2
수출 (c)	물량	<u>1,000</u>	<u>931</u>	-6.9	<u>1,031</u>	10.7	<u>787</u>	-23.6
	금액	<u>1,000</u>	<u>916</u>	-8.4	<u>1,042</u>	13.7	<u>887</u>	-14.8
자가소비 (d)	물량	<u>1,000</u>	<u>1,000</u>	0.0	<u>1,000</u>	0.0	<u>1,000</u>	0.0
	금액	<u>1,000</u>	<u>1,000</u>	0.0	<u>1,000</u>	0.0	<u>1,000</u>	0.0

* 자료: 재심사요청서

5. 재고 현황

< 재고 현황 >

(단위: 톤, %)

구분 \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 판매(a)		<u>1,000</u>	<u>923</u>	-7.7	<u>963</u>	4.3	<u>854</u>	-11.3
재고(b)		<u>1,000</u>	<u>895</u>	-10.5	<u>571</u>	-36.2	<u>668</u>	16.9
재고율(b/a)				-0.4%p		-5.5%p		2.7%p

* 자료: 재심사요청서

6. 내수 부문 손익

< 내수 부문 손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a)	<u>1,000</u>	<u>909</u>	-9.1%	<u>944</u>	3.9%	<u>895</u>	-5.2%
매출원가(b)	<u>1,000</u>	<u>962</u>	-3.8%	<u>953</u>	-0.9%	<u>887</u>	-6.9%
매출총이익 (c=a-b)	<u>1,000</u>	<u>406</u>	-59.4%	<u>866</u>	113.2%	<u>980</u>	13.2%
판매비와 관리비(d)	<u>1,000</u>	<u>718</u>	-28.2%	<u>857</u>	19.4%	<u>603</u>	-29.7%
영업이익 (e=c-d)	<u>적자</u>	<u>적자</u>	적자확대	<u>적자</u>	적자축소	<u>흑자</u>	흑자전환
영업이익률 (f=e/a)			음수확대		음수축소		양수전환

* 자료: 재심사요청서

7. 제조원가 현황

< 제조원가 현황 >

(단위: 원/KG, %)

구분 \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료비(a)	<u>1,000</u>	<u>999</u>	-0.1	<u>1,006</u>	0.7	<u>1,007</u>	0.1
노무비(b)	<u>1,000</u>	<u>990</u>	-1.1	<u>937</u>	-5.2	<u>1,021</u>	8.9
경비(c)	<u>1,000</u>	<u>1,060</u>	6.0	<u>1,019</u>	-3.9	<u>1,042</u>	2.3
제조원가 (a+b+c)	<u>1,000</u>	<u>1,021</u>	2.1	<u>1,003</u>	-1.7	<u>1,022</u>	1.9

* 자료: 재심사요청서

8.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설비투자	<u>1,000</u>	<u>989</u>	-1.1	<u>1,340</u>	35.5	<u>5,434</u>	305.5
연구개발	<u>1,000</u>	<u>916</u>	-8.4	<u>862</u>	-5.9	<u>1,061</u>	23.1

* 자료: 재심사요청서

9.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 >

(단위: 원/톤)

구분 \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TPA	<u>1,000</u>	<u>953</u>	-4.7	<u>927</u>	-2.7	<u>842</u>	-9.2
EG	<u>1,000</u>	<u>922</u>	-7.8	<u>1,023</u>	10.9	<u>1,018</u>	-0.4
DMT	<u>1,000</u>	<u>1,005</u>	0.5	<u>1,058</u>	5.3	<u>1,067</u>	0.8
PET Chip	<u>1,000</u>	<u>962</u>	-3.8	<u>928</u>	-3.5	<u>858</u>	-7.6

* 자료: 재심사요청서

10. 재심사요청물품의 공급국 및 관세영역 생산 현황

< 재심사요청물품의 공급국 및 관세영역 생산 현황 >

(단위: 천톤, %)

구분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		<u>1,000</u>	<u>1,024</u>	2.4	<u>1,034</u>	1.0	<u>1,034</u>	0.0
	대만산	<u>1,000</u>	<u>1,000</u>	0.0	<u>1,000</u>	0.0	<u>1,000</u>	0.0
	태국산	<u>1,000</u>	<u>1,058</u>	5.8	<u>1,082</u>	2.3	<u>1,082</u>	0.0
	UAE산	<u>1,000</u>	<u>1,000</u>	0.0	<u>1,000</u>	0.0	<u>1,000</u>	0.0
생산량		<u>1,000</u>	<u>1,077</u>	7.7	<u>1,128</u>	4.7	<u>1,266</u>	12.3
	대만산	<u>1,000</u>	<u>1,088</u>	8.8	<u>1,053</u>	-3.2	<u>1,061</u>	0.8
	태국산	<u>1,000</u>	<u>1,007</u>	0.7	<u>1,088</u>	8.0	<u>1,255</u>	15.4
	UAE산	<u>1,000</u>	<u>1,435</u>	43.5	<u>1,739</u>	21.2	<u>2,348</u>	35.0
가동률				2.7%p		2.0%p		7.0%p
	대만산			5.8%p		-2.3%p		0.6%p
	태국산			-3.0%p		3.3%p		9.7%p
	UAE산			7.5%p		5.3%p		10.5%p

* 자료: 재심사요청서

11. 피요청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현황

< 피요청국에 대한 무역구제 현황 >

조치국가	대상국가/관세영역	최초부과명령	덤핑관세율
미국	대만	2002-05-20	1.06%~2.56%
	UAE	2008-09-24	4.8%~70.75%
인도네시아	태국	2015-12-07	2.2%~7.1%

* 자료: 재심사요청서

참고 4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검토 자료

< 비공개 >

< 비공개 >

< 비공개 >

< 비공개 >

참고 5

재심사요청서 상 비밀취급 요청정보 및 사유

<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아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자료

- ① 제조원가
- ②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 ③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페이지	비밀취급 요청정보	법적 근거	비밀취급 사유
1	글로벌 시장정보	④	글로벌 시장정보는 전문조사기업에서 조사한 자료로서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약정
1, 16, 17, 19, 20, 28, 29, 49, 50, 51, 52, 53	피요청국의 산업현황 정보	④	피요청국의 생산현황 정보는 전문조사기업에서 조사한 자료로서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약정
1, 49, 54	우리나라의 산업현황	④	우리나라의 생산능력 정보는 전문조사기업에서 조사한 자료로서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약정
15, 18, 19, 27, 28, 47, 48, 60	재심사요청물품의 수입현황	④	분석된 수출입자료로서 가격 및 물량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유출시 당사자에게 사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23	ICIS 정보	④	공개되지 않는 유료정보로서, 계약당사자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12	주요 수입자 및 수요자 정보	⑤	수입자 및 수요자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수입 및 수요의 사실 등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12	생산량 및 내수판매량	②	공시되지 않는 기업의 부문매출 및 생산에 대한 정보공개는 회사의 경영에서 많은 불이익을 초래. 본 정보를 공개한다면 해당회사의 경영방식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음
13	국내수급상황	②	공시되지 않는 기업의 매출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회사의 경영에서 많은 불이익을 초래. 본 정보를 공개한다면 해당회사의 경영전략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음

페이지	비밀취급 요청정보	법적 근거	비밀취급 사유
27	해상운임 및 보험료	②	공시되지 않는 기업의 관계사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공개될 경우 회사의 경영에서 많은 불이익을 초래. 본 정보를 공개한다면 해당회사의 경영이 경쟁사에 노출 되어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음
33, 34, 35, 62, 63	국내소비현황	②, ④	본 자료는 매출수량 및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 이며,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판매 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음
35, 36, 58, 59, 58, 66, 67, 68, 69, 70	가격	①, ②, ④	가격정보는 국내생산자 또는 해외수출자의 이익창출의 기본 정보로서, 공개 시에는 산업참가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
2, 37	생산현황	①, ②	생산현황은 회사의 이익창출의 기본 자료이며, 미공 시자료.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 이 침해될 수 있음.
38	판매현황	②	판매현황은 회사의 이익창출의 기본 자료이며, 미공 시자료.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음.
39, 40	재고현황	②	재고현황은 회사의 이익창출의 기본 자료이며, 미공 시자료.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음.
40, 41, 42	손익	②	부문손익현황은 회사의 이익창출의 기본 자료이며, 미공시자료.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 이 침해될 수 있음.
24, 25, 43	제조원가	①	제조원가는 회사의 이익창출의 기본 자료이며, 미공 시자료.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 외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음.
44	설비투자현황	②	설비투자현황은 국내산업의 생산구조를 포함한 정보 로서,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음
45	원자재의 가격	②	원자재의 가격은 제조원가의 일부로서 미 공시자료.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 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음

무 역 조 사 실

무역조사실장 전 응 길

조 사 단

[국내산업피해조사]

조사단장	산업피해조사과장	이 길 준
조 사 관	산업피해조사과	정 경 욱

[덤핑조사]

조사단장	덤핑조사지원과장	김 영 윤
조 사 관	덤핑조사지원과	안 채 린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요청서

2026년 6월 19일

요청인

도레이첨단소재 주식회사
마이크로웍스 주식회사
효성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승케미칼

대리인

법무법인(유) JR
우리회계법인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요청서

본 요청인은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으로부터 수입되는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및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세법 제56조 제1항과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에 필요한 재심사를 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본 요청서 및 별책 부록 첨부서류에는 요청인의 제조원가,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거래처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비밀로 취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9일

요청인:	도레이첨단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영 섭
	마이크로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용 선
	효성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천 석
	주식회사 화승케미칼	대표이사	김 두 한
대리인:	법무법인(유) JR	변 호 사	김 학 훈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 동 운

무 역 위 원 회 귀중

목 차

I. 조사신청개요

1. 요청취지	1
2. 요청인	3
3. 피요청인	7
4. 원심 및 재심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7
5. 재심사요청물품	8
6. 국내시장현황	12

II. 요청인의 신청자격유무에 관한 사항

1. 재심사요청인이 재심사요청 자격이 있다는 사실	14
2. 재심사 요청기간 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사실	14
3. 요청인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사실 유무	14
4. 재심사요청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국내생산자간의 특수관계 존재 유무	14

III.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우려

1.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관한 검토	15
2.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의 지속에 관한 증빙	33
3.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관한 증빙	47
4.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종료 시 재심사요청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빙	64

< 별첨 목록 >	73
-----------------	----

< 비밀취급요청 및 사유 >	74
-----------------------	----

I. 재심사요청 개요

1. 요청취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는 2018. 1. 18.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산 PET 필름의 덤핑수입 사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 4. 30.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이하 “원심”).

이후 무역위원회는 1차 종료재심사에서, 원심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재심사대상국의 대(對)한국 수출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사대상국이 여전히 충분한 수출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심사요청물품의 국내 재판매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재심사대상국이 제3국으로부터도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위원회는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2021. 9. 16.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5년간 연장하기로 판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 12. 24.부터 추가 5년간 덤핑방지관세가 연장·부과되고 있습니다(이하 “1차 종료재심사”).

2025년 PET 필름 글로벌 시장의 생산은 [*****] 천톤이며, 생산능력은 [*****] 천톤으로 글로벌 생산능력의 약 51%가 유휴상태입니다. 이러한 초과공급 상황은 대만, 태국 및 중국 등의 신흥경제국가의 과도한 설비투자로 인해 생산능력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피요청국 별로 살펴보면, 대만의 생산능력은 [***] 천톤이며 수요는 [***] 천톤으로 약 [***] 천톤의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국의 생산능력과 수요는 [***] 천톤과 [***] 천톤으로 초과생산능력은 [***] 천톤이며, UAE의 생산능력과 수요는 [***] 천톤과 [***] 천톤으로 초과생산능력은 [***] 천톤입니다. 피요청국의 초과생산능력을 합산하면 약 [***] 천톤으로 우리나라의 수요인 [***] 천톤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미국 및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규모의 PET 필름 수요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포장용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포장용뿐만 아니라 광학용, IT용 및 전자기기용 등 고부가가치 PET 필름에 대한 수요가 폭넓게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PET 필름 시장은 높은 기술수

준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수준이 형성되어 있어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의 경우 2022년 이후 우리나라가 최대 수출시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 유인이 상당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요청국들이 보유한 상당한 규모의 초과생산능력과 한국 시장의 높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현행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한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사요청물품의 톤당 재판매가격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내생산품 가격을 하회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산업의 가격 인상을 제약하고 가격 하락 압력을 초래하여 국내 생산자의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국내 생산자들은 장기간의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말 국내생산자인 마이크로웍스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PET 필름 사업을 합병하였고, 합병 과정에서 [*****] 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생산자가 저가의 덤핑수입이 증가하여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자구적으로 타개하고자 대규모의 산업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입니다.

한편, 피요청국은 미국과 인도네시아로부터 덤핑방지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산 PET 필름에 대해서는 2002년 5월부터 1.1%~2.7%, UAE산 PET 필름에 대해서는 70.75%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무역위원회는 2026. 2. 12 대만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 및 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덤핑방지조치를 5년 연장하였습니다. UAE산 PET 필름에 대해서는 미국 무역위원회가 2026. 2. 10.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태국산 PET 필름은 인도네시아에서 2.2% ~7.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2026. 4. 1 종료재심사를 통해 5년간 연장되었습니다.

피요청국의 PET 필름 제품에 대하여 미국 및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입국들이 장기간 덤핑방지조치를 유지 또는 연장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국가들의 수출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만산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조치를

최근 종료재심사를 통해 추가 연장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태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조치를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산 PET 필름의 경우에도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덤핑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우려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2026. 2. 28.부터 덤핑방지관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 덤핑방지조치가 완화되거나 종료될 경우 저가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덤핑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심사요청물품의 수입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가격의 하락, 수익성 악화, 출하량 및 생산량의 감소 등의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방지조치에도 산업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 해당 국가들의 상당한 초과생산능력과 제3국 수입규제에 따른 수출전환 가능성 그리고 국내 시장의 높은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재심사요청물품의 덤핑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강화된 덤핑방지조치에 따른 대체 수출 효과(풍선효과)까지 감안하면 덤핑수입이 확대될 개연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행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하거나 지속될 우려가 충분히 존재하며, 국내 PET 필름 산업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요청인은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연장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 요청인

본 건 재심사 요청인은 도레이첨단소재 주식회사, 마이크로웍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화학, 주식회사 화승케미칼입니다.

원심 및 1차 재심의 요청인은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SKC, 효성화학 및 화승케미칼의 5개 회사였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SKC의 필름사업부가 마이크로웍스 주식회사로 물적분할되었습니다¹. 그리고 마이크로웍스는 2024년 12월 코오롱인더스트리 필름사업부와 합병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요청인이었던 SKC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마이크로웍스로 통합되었으며, 요청인은 위의 4개 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회사명		도레이첨단소재 주식회사
회사설립연월일		1999년 12월 01일
사업시작(PET필름)		1999년 12월(전신인 제일합섬은 1985년에 시작)
대표자		김영섭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10길 7 한국도레이R&D센터
	전화	02-3279-1000
	팩스	02-3279-1411
구미 1공장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2로 300
	전화	054-479-6114
	팩스	054-479-6371
구미 2공장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102
	전화	054-479-6114
	팩스	054-479-6371
구미 3공장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249-29
	전화	054-479-6605
	팩스	054-479-6609
자본금		944,622백만원

¹ SKC에서 분할시의 회사명은 SK마이크로웍스였으나, 2025년 12월 마이크로웍스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주주 및 지분율	Toray Industries, Inc. (100.0%)
총매출액	2,049,291 백만원
조사요청물품 매출액	[*****]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PET필름, PET원사, PP/PET스핀본드, 부직포, PET Chip
종업원수	2,301명

(2025년 기준)

회사명		마이크로웍스 주식회사
회사설립연월일		2024.10.4
대표자		신용선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00 (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A동 10층)
	전화	02-6313-6114
	팩스	02-6313-6116
수원사업장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09번길 84
	전화	031-250-7625
	팩스	031-251-4749
R&D 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02
	전화	031-240-0114
	팩스	031-257-5266
진천사업장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고등 1길 27
	전화	070-7467-6114
	팩스	043-535-9521
김천사업장	주소	경북 김천시 공단로 238 (응명동)
	전화	054-430-8651
	팩스	054-429-7667
울산사업장	주소	울산시 남구 사평로 33(상개동)
	전화	052-228-2300
	팩스	052-256-0438
자본금		2,572 백만원
주요주주 및 지분율		한앤코오스카홀딩스 주식회사(100%)

총매출액	572,262 백만원
재심사요청물품 매출액	[*****]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PET 필름
종업원수	604명

마이크로웍스 주식회사는 1973.7.16. 설립된 SKC 주식회사에서 2022.11.01. 분할된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 주식회사에서 2024.10.4. 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 주식회사에서 마이크로웍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회사명		주식회사 효성화학
회사설립연월일		2018.06.01
대표자		이천석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5(반포동)
	전화	02-2146-5500
	팩스	02-707-7799
구미공장	주소	경북 구미시 3공단2로 108 (시미동)
	전화	054-470-9171
	팩스	054-470-9177
용연 1공장	주소	울산시 남구 처용로487번길 66 (성암동)
	전화	052-208-9000
	팩스	052-208-9220
용연 2공장	주소	울산시 남구 처용로 487번길 65(성암동)
	전화	052-208-9000
	팩스	052-208-9999
용연 3공장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30(용연동)
	전화	052-208-9750
	팩스	052-208-9720
대전공장	주소	대전시 대덕구 신일서로17번길 85(신일동)
	전화	042-349-9608
	팩스	042-349-9611
옥산공장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산단로 99(호죽리)
	전화	043-249-3600
	팩스	043-249-3899

자본금	18,959 백만원
주요주주 및 지분율	조현준 외 19.48%, (주)효성 32.84%
총매출액	1,271,649백만원
재심사요청물품 매출액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Nylon 필름, PET 필름, PP/DH, TPA, Naochem, POK
종업원수	884명

효성화학은 2018. 6. 1.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화학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회사명	주식회사 화승케미칼	
회사설립연월일	2018.02.01	
대표자	김두환, 현석호, 이재욱	
주사무소 및 공장	주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98-7
	전화	041-531-5005
	팩스	041-531-0035
본사	주소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287-21 장천빌딩 6층
	전화	051-311-0081
	팩스	051-312-2465
자본금	1,000 백만원	
주요주주 및 지분율	화승인더트리(100%)	
총매출액	144,801 백만원	
재심사요청물품 매출액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BOPP 필름, PET 필름	
종업원수	[****]명	

화승케미칼은 2018. 2. 1 화승인더스트리의 필름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별첨 1> 대리인 선임장 사본

<별첨 2> 재심사 요청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3. 피요청인

국가	피요청인
대만	신콩(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태국	에이제이피(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
	폴리플렉스 (Polyplex(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
UAE	플렉스(Flex Middle East FZE)
	제이비에프(JBF RAK LLC)

<별첨 3> 피요청인 주소 및 연락처

4. 원심 및 재심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공급국	공급자	원심 2018.04.30. ~ 2021.04.29	1차 재심 2021.04.30. ~ 2026.12.23
대만	신콩 (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8.68%	5.49%
	그 밖의 공급자	8.68%	5.49%
태국	에이제이피(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71%	3.71%
	폴리플렉스[Polyplex(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7%	3.19%
	그 밖의 공급자	3.68%	3.68%
UAE	플렉스(Flex Middle East FZE)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98%	7.98%
	제이비에프(JBF RAK LLC)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0.95%	60.95%
	그 밖의 공급자	51.48%	51.48%

<별첨 4> 2018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령 제680호,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첨 5> 2021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령 제877호,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5. 재심사요청물품

가. 재심사요청물품명

재심사요청물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Polyethylene-terephthalate Film, 이하 “PET 필름”)으로, PET 필름에 코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양면 기준으로 코팅한 두께가 0.25 μ m(0.00025mm) 이하의 물품입니다. 단, 금속으로 증착된 제품 및 유채색(흰색 제외)의 필름은 재심사요청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나. 재심사요청물품의 관세분류 및 관세율

관세분류번호상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분류번호 (HSK)	정의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아세안 FTA
			대만 / UAE	태국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6.5%	0%
3920.69.00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별첨 6> 관세청-재심사요청물품 정의, 분류 및 관세율

다. 재심사요청물품의 정의

재심사요청물품은 테레프탈산 (Terephthalic Acid, 이하 “TPA” 또는 Purified Terephthalic Acid, 이하 “PTA”) 또는 디메틸테레프탈산 (Dimethyl Terephthalate, 이하 “DMT”)과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이하 “EG”)을 사용하여 축중합²으로 얻어지는 PET Chip을 건조공정을 거쳐 수분을 제거하고 용융과정을 통해 면상으로 압출한 뒤, 냉각, 고화시킨 다음 중형연신을 하여 일정한 두께와 물성을 부여한 면상 필

² 폴리 축합, 중축합, 축합 중합이라고도 하며, 축합 반응을 실행하면서 점차 중합해 고분자 물질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을 의미함. 주로 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페놀 수지, 요소 수지, 실리콘 수지 등의 합성 섬유, 합성 수지의 생성 반응에 사용되고 있음.

름을 의미합니다.

재심사요청물품의 기계적 특성으로는 플라스틱 필름 중에서 인장강도, 단열저항, 충격강도 및 파열강도가 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약품에 강한 내약품성(특히 산성에 강함), 열 안정성, 습도의 변화에 따른 치수안정성이 우수하며, 수분침수상태와 건조상태에서도 기계적 강도의 변화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PET 필름은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용도 및 제품특성

- ◆ 포장용: 뛰어난 기계적 특성과 열적안정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포장인쇄, Laminating, 증착제품용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스낵, 라면, 레토르트식품 등의 포장소재로 사용됩니다.
- ◆ 산업용: 투명성과 접착성 때문에 다양한 산업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며, 전기절연성, 내한 및 내온성이 우수하여 전자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태양전지 Back Sheet, 모터 절연용, MLCC 생산용, 열차단 윈도우필름 및 점착테이프 등으로 사용됩니다.
- ◆ 광학용: 광학용 초투명 소재로서 상대적으로 두껍고, 강도 및 내열성이 뛰어나고 외부 충격에 강하며, 기기로부터 나오는 유해한 물질을 차단하고 화면의 명암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LCD용, BLU 소재, 편광판 보호용 및 확산 프리즘 필름으로 사용됩니다.
- ◆ 그래픽용: 그래픽 분야에서 요구하는 투명도, 광택도, 내열성 및 내한성, 내화학적 및 전도성 등이 매우 우수하여 잉크젯 및 레이저프린터의 인쇄용지 및 인쇄판용으로 사용됩니다.

(2) 구성요소

재심사요청물품인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TPA”) 또는 디메틸 테레프탈레이트(Dimethyl terephthalate “DMT”)과 에틸렌글라이콜(Ethylene Glychol “EG”)간의 축중합으로 얻어지는 PET Chip을 제막 연신 가공하여 필름화 한 것입니다.

(3) 제조공정

1) PET Chip 제조공정

PET Chip을 제조하는 데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Terephthalate Acid(TPA) 와 Ethylene Glycol(EG) 의 에스테르화 반응 후 중합하는 방법과 Dimethyl Terephthalate(DMT) 와 Ethylene Glycol(EG) 의 에스테르화 반응 후 축중합하는 방법으로 중합된 Chip은 비결정성의 칩(Chip) 형태로 생산됩니다.

2) 연신 및 결정화 공정

중합 공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칩을 건조 후 용융하여 일정 폭의 Die에 토출시켜 판형태로 만든 후 기계방향(MD) 및 폭방향(TD)으로 늘리는 연신 공정을 통하여 PET 필름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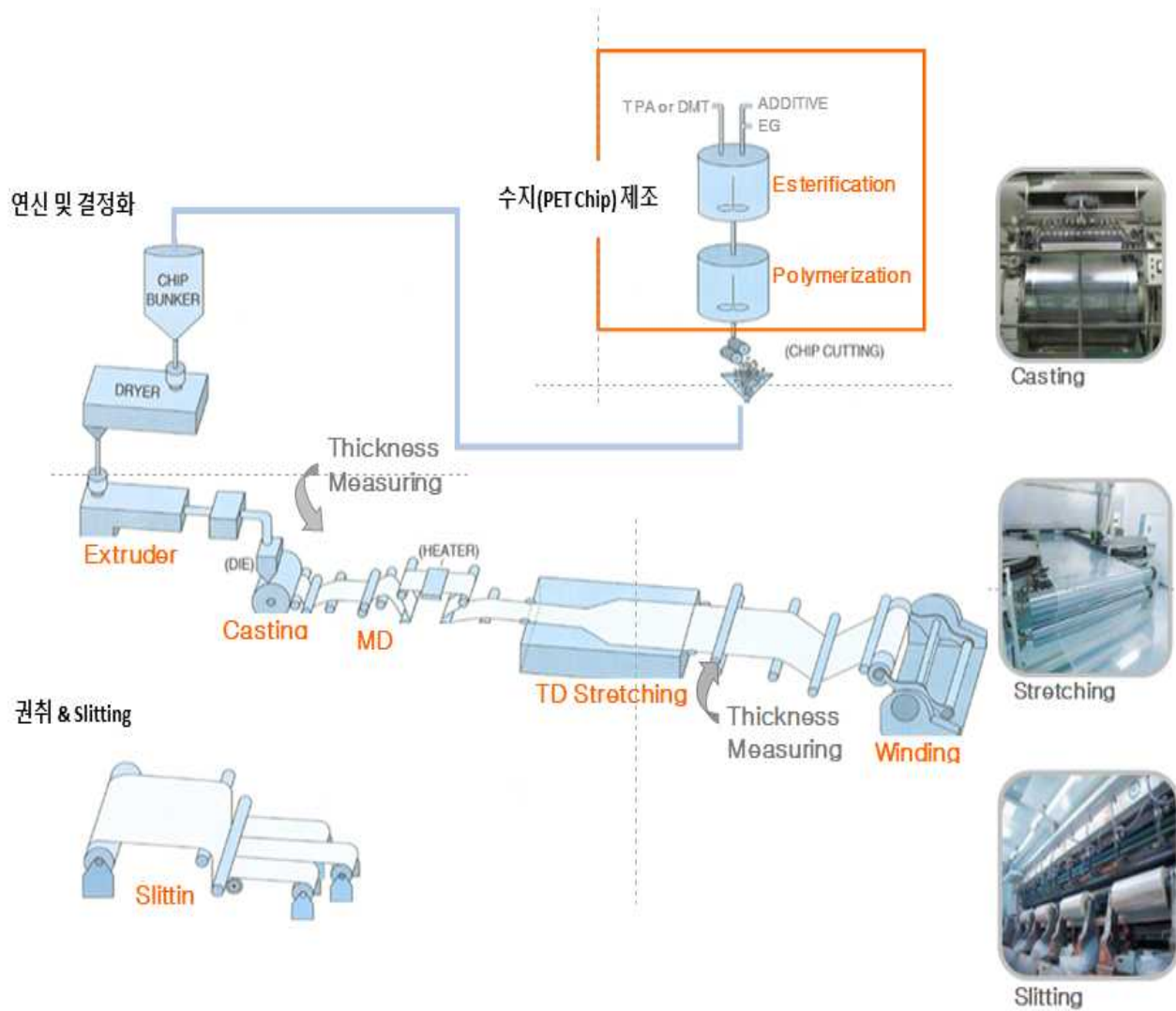
3) 권취 및 절단 공정

Mill roll 형태로 권취된 필름을 고객의 요구에 맞는 폭과 길이로 절단하여 제품화하는 공정입니다.

4) 포장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절단된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 운송하기 위해 포장하는 공정입니다.

<공정도>



6. 국내시장현황

가. 수입자 및 수요자

(1) 수입자 현황

재심사요청물품의 주요 수입자는 [*****]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자의 업체별 연락처는 <별첨 7> 주요 수입자 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7> 주요 수입자 리스트

(2) 수요자 현황

재심사요청물품의 주요 수요자로는 [*****] 등이 있습니다. 주요 수요자의 업체별 연락처는 <별첨 8> 주요 수요자 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8> 주요 수요자의 리스트

나. 국내생산자

(2025년 기준, 단위: 톤)

국내생산자	생산량(톤)	비중 (%)	찬성여부
도레이첨단소재	*****	*****	*****
마이크로웍스	*****	*****	*****
효성화학	*****	*****	*****
화승케미칼	*****	*****	*****
합계	*****	100%	

<별첨 9> 국내생산자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요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서

다. 국내수급현황

제심사요청물품의 국내 수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수급현황〉

(단위: 톤, 백만원,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 요	내수	물량	1,000	928	△7.2%	996	7.3%	959	△3.7%
		금액	1,000	885	△11.5%	918	3.7%	919	0.1%
	수출	물량	1,000	931	△6.9%	1,031	10.7%	787	△23.6%
		금액	1,000	916	△8.4%	1,042	13.7%	887	△14.8%
	합계	물량	1,000	929	△7.1%	1,005	8.2%	914	△9.1%
		금액	1,000	894	△10.6%	954	6.7%	910	△4.6%
공 급	국내 공급	물량	1,000	915	△8.5%	947	3.5%	818	△13.6%
		금액	1,000	912	△8.8%	978	7.3%	893	△8.8%
	수입	물량	1,000	980	△2.0%	1,218	24.3%	1,267	4.0%
		금액	1,000	810	△19.0%	836	3.2%	994	18.9%
	합계	물량	1,000	929	△7.1%	1,005	8.2%	914	△9.1%
		금액	1,000	894	△10.6%	954	6.7%	910	△4.6%

① 내수수요 = 국내생산품 내수 + 수입

② 국내공급 = 국내 출하 + 수출

③ 국내공급과 수출은 제심사요청인의 결산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④ 수입은 관세청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수입통관자료를 기초로 하여 해당 연도 한국은행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단, [*****

*****.]

〈별첨 10〉 관세청 무역통계자료

〈별첨 1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입통관자료

〈별첨 12〉 한국은행 환율통계자료 (원/ US\$)

II. 요청인의 요청자격유무에 관한 사항

1. 재심사요청인이 재심사요청 자격이 있다는 사실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는 덤핑방지관세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①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②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 수입자 또는 그 단체, ③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 재심사 요청인인 도레이첨단소재(주), 마이크로웍스(주), 효성화학(주) 및 (주)화승케미칼의 4개 회사는 동종물품의 국내 총생산의 [***]%를 점유하는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로서 본 재심사 요청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재심사 요청기간 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사실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관세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요청인의 재심사 요청은 덤핑방지 관세부과일인 2021년 12월 24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덤핑방지관세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인 2026년 12월 23일로부터 6개월 전에 해당하므로 재심사 요청기간 내에 적법하게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재심사 요청인이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재심사요청물품의 수입 사실 유무

재심사요청인은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재심사요청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영 제5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재심사요청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국내생산자간의 특수 관계 존재 유무

요청인은 재심사요청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별첨 13> 재심사 요청인이 해외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 관계가 없다는 서약서

Ⅲ.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의 지속 및 재발가능성 우려

1.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관한 검토

가. 대만

(1) 수입가격 및 물량의 변동

〈대만산 PET 필름 수입통계〉

(단위: 톤, 천USD, USD/톤)

국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대만	중량	1,000	888	934	783	518	546	309	35	23
	금액	1,000	919	946	732	607	601	265	61	115
	단가	1,000	1,034	1,014	934	1,170	1,101	859	1,746	4,919

자료: HSCODE: 3920.62 및 3920.69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및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

대만산 PET 필름의 수입 동향을 보면,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인 2017년에는 [****]톤이 수입되었으나, 기획재정부령 제680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2018년 4월 30일부터 부과되고(잠정관세는 2017년 11월 1일부터 부과), 2018년 수입량은 [****]톤으로 전년 대비 11.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대만산 물품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수입량은 [****]톤으로 2017년 대비 약 98%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대만산 물품의 수입가격은 연도별로 등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수입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2024년 이후에는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가격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소량의 시험·평가용(Test) 제품 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 규격 제품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 심사요청물품의 정상적인 시장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수출여력

< 대만의 여유생산능력 >

(단위: 천톤)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생산능력	1,000	1,030	1,030	1,030	1,030	1,030
총수요	1,000	1,028	1,037	1,065	1,065	1,084
초과생산능력	1,000	1,033	1,016	967	967	934
초과생산능력 비중	***%	***%	***%	***%	***%	***%

자료: 2025 Global BOPET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 by Wood Mackenzie

<별첨 29> 2025 Global BOPET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 by Wood Mackenzie

대만산 PET 필름의 수입 현황을 보면,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인 2017년에는 [*****]톤이 수입되었으나, 덤핑방지관세가 2018년 4월 30일부터 부과되면서 2018년 수입량은 [*****]톤으로 전년 대비 11.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적인 수입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대만산 물품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수입량은 [***]톤으로 2017년 대비 약 98% 감소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대만산 물품의 수입가격은 연도별로 등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한 2024년 이후에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입가격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업적 거래 물량이라기보다는 소량의 시험·평가용(Test) 제품이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 규격 제품의 수입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근의 높은 수입가격은 정상적인 시장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대만산 물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만산 물품의 수입이 장기간에 걸쳐 급격히 감소한 것은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관세조치가 종료될 경우 다시 저가의 덤핑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3) 요청인 제시 덤프률

2025년 대만산 PET 필름의 수입량은 [***]톤으로 감소하여 과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감소는 대만산 물품의 수출경쟁력 자체가 약화된 결과라기보다는 현행 덤프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만은 2025년 기준 약 [***]천톤의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의 수출 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미국 및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규모의 PET 필름 수요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으로 인해 수출국 입장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만과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물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수입 수준은 덤프방지조치의 효과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덤프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대만 생산업체들이 보유한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산 PET 필름의 덤프수입이 재발하고, 이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심사요청인은 현행 덤프방지조치의 효과로 대만산 재심사요청물품의 덤프수입이 사실상 중단되었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정상적인 거래물량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는, 현 시점의 수입가격 또는 거래자료를 기초로 실질적인 덤프률을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덤프방지조치 종료 시 덤프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덤프방지조치로 인해 왜곡된 현재의 시장상황이 아니라, 덤프방지조치 시행 이전 또는 덤프방지조치의 영향이 없었던 정상적인 경쟁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에 재심사요청인은 덤프방지조치 시행 이전의 원심에서 판정한 대만산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덤프률인 8.68%를 본 종료재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

시합니다. 해당 덤핑률은 덤핑방지조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의 경쟁환경에서 산정된 수치로서,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재발 가능한 덤핑 수준을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라고 사료됩니다.

나. 태국

(1) 수입가격 및 물량의 변동

〈태국산 PET 필름 수입통계〉

(단위: 톤, 천USD, USD/톤)

국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태국	중량	1,000	865	773	1,117	1,399	1,389	1,367	1,401	1,538
	금액	1,000	934	827	1,095	1,560	1,485	1,098	1,160	1,213
	단가	1,000	1,080	1,069	981	1,114	1,069	803	828	789

자료: HSCODE: 3920.62 및 3920.69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및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

태국산 PET 필름의 수입 추이를 보면,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인 2017년에는 수입량이 [*****]톤이었으나,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인 2019년에는 [*****]톤으로 약 23%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초기에는 일정 수준의 수입 억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020년 수입량은 [*****]톤으로 전년 대비 약 44% 증가하였고, 이후 2025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덤핑방지관세의 초기 억제 효과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2020년부터 태국산 물품의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태국의 생산자인 [*****
 *****3*****4*****
 *****] 에 의한 것입니다.

태국산 제품의 수입가격을 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2018년 톤당 가격은 [****]달러로, 관세 부과 이전인 2017년의 [****]달러 대비 약 8.1%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2022

3 *****

4 *****.

년까지는 대체로 톤당 [****]달러 수준에서 등락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수입가격은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5% 하락하였고, 2025년에는 [****]달러까지 추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태국산 물품의 저가 판매 전략이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입량 증가와 수입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시장에서 가격 하락 압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태국산 물품의 수입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초기에는 하락하였지만, 2020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의 생산능력 증가 및 적극적인 판매 확대 등으로 수입이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입량 증가와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행 덤핑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태국산 물품의 가격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 대한 덤핑수출의 유인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출여력

< 태국의 여유생산능력 >

(단위: 천톤)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생산능력	1,000	1,124	1,177	1,247	1,274	1,274
총수요	1,000	1,036	1,071	1,107	1,161	1,179
초과생산능력	1,000	1,162	1,223	1,308	1,323	1,315
초과생산능력 비중	***%	***%	***%	***%	***%	***%

자료: 2025 Global BOPET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 by Wood Mackenzie

태국의 PET 필름 산업 현황을 보면, 생산능력은 2020년 [***]천톤에서 2022년 [***]천톤, 2024년 [***]천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태국의 PET 필름 총수요는 2020년 [***]천톤 수준에서 연평균 약 4% 증가하여 2025년에는 [***]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이후에도 총수요는 연간 약 4~5%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태국의 초과생산능력은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초과생산능력은 [***]천톤으로 총 생산능력의 약 [***]% 수준이었으며, 2025년에는 [***]천톤으로 증가하여 총 생산능력의 약 [***]%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 증가에 따라 초과생산능력 비중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태국 PET 필름 산업은 내수시장 규모에 비해 생산능력이 현저히 큰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상당한 규모의 초과생산능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설비의 안정적인 가동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일 것입니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태국의 초과생산능력 2025년 기준 [***]천톤이며, 2025년의 태국의 수입량 [*****]톤의 약 5배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는 태국 생산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상당한 공급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태국산 PET 필름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수입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태국 생산업체들이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덤핑방지 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될 경우, 태국 생산업체들이 보유한 대규모 초과생산능력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태국 PET 필름 산업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 상당한 규모의 초과생산능력, 최근의 수입 증가 및 가격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태국산 PET 필름의 덤핑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 또는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3) 태국의 주요 수출시장

< 태국의 주요수출시장 >

(단위: 천USD, %)

국가	2022	2023	2024	2025	수출비중
한국	69,963	57,647	59,303	63,411	26%
미국	41,071	41,832	45,651	34,970	15%
인도	33,642	15,775	15,305	22,654	9%

(단위: 천USD, %)

국가	2022	2023	2024	2025	수출비중
베트남	26,602	22,569	19,642	19,478	8%
인도네시아	17,566	15,130	16,504	14,342	6%
말레이시아	20,476	15,007	13,584	13,578	6%
호주	17,623	13,904	13,930	11,670	5%
브라질	14,182	10,923	8,546	11,100	5%
일본	11,920	10,017	10,936	10,771	4%
필리핀	14,844	8,219	8,639	7,515	3%
기타	37,812	31,484	32,069	31,679	13%
합계	305,701	242,507	244,109	241,168	

자료: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⁵의 Trade Map에서 제공하는 통관자료

<별첨14>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의 Trade Map의 태국 수출 현황

태국산 PET 필름의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태국 PET 필름 산업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입니다. 2025년 기준 태국의 PET 필름 총수출액은 241,168천 달러이며, 이 중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액은 63,411천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26%를 차지하였고, 이는 미국(15%), 인도(9%), 베트남(8%) 등 다른 주요 수출시장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태국의 전체 PET 필름 수출액은 2022년 305,701천달러에서 2025년 241,168천달러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액은 2024년 59,303천달러에서 2025년 63,411천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태국 생산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태국 PET 필름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기능하

⁵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해 1964년 세계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무역조직을 목표로 설립되었음. ITC는 1968년부터 GATT/WTO와 유엔의 공동 후원 하에 운영되었으며 유엔은 유엔 무역개발(UNCTAD)을 통해 활동했으며, 개발도상국 및 전환기 경제권과의 기술 협력, 무역 촉진 및 수출 개발을 위한 UN의 핵심부문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UN과 WTO의 소속기관으로서 세계무역통계의 데이터를 제공 및 연구하고, 국제무역의 활성화 지원, 수출 지원방법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고 있으며, 태국은 상당한 규모의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될 경우 태국 생산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유인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태국의 초과생산능력 규모가 2025년 기준 약 [***]천톤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은 상당하며 이에 따른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요청인 제시 덤핑률

<정상가격 및 산정근거>

(단위: USD/KG)

조정 전 정상가격	조 정 사 항				조정 후 정상가격
1.90					1.90

1) 요청인은 태국산 재심사요청물품의 정상가격 산정을 위하여 각 회사가 보유한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조사와 코트라(KOTRA)의 현지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태국 내 판매가격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요청인은 코트라(KOTRA)에 의뢰한 태국에 대한 해외시장조사의 사전검토 과정에서, 방콕무역관으로부터 소매가격동향에 대해서는 “조사불가”의 의견을 2025. 12. 15에 받았습니다.

태국의 PET 필름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천 톤에 불과하여 생산능력인 [***]천 톤의 약 2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국 PET 필름 산업은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거래 또한 대부분 기업 간 거래(B2B)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내수 판매가격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태국의 주요 생산업체인 Polyplex (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와 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의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양 회사 모두 2025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설령 일부 내수 판

매가격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가격은 원가 미만 판매에 따른 비정상적인 가격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요청인은 태국 내 판매가격을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관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태국산 재심사 요청물품의 정상가격을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에 기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구성가격의 산정

요청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재심사요청물품의 정상가격을 구성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구성가격은 통상적인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 비용 및 이윤을 가산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가격 및 산정근거〉

(단위: USD/KG)

구성요소	금액	비고
PTA	***	ICIS의 2025년 평균가격
MEG	***	
원재료가격 (A=PTAx***+MEGx***)	***	
PET Chip 가공비 (B=A X***%)	***	도레이첨단소재의 PET CHIP 제조원가 비율
PET Chip 제조원가 (C= A+B)	***	
노무비 (D=C X***%*20.3%/39%)	***	효성화학의 2025년 제조원가명세서
제조경비 (E= C X***%)	***	
PET FILM 제조원가 (F=C+D+E)	***	
판매관리비 (G=F X***%)	***	Polypex(Thailand) 손익계산서 2025.03
금융비용 (H=F X***%)	***	
이익 (H=F X***%)	***	
구성가격	***	

① 원재료비는 재심사요청물품의 원재료인 PTA와 MEG에 대하여 ICIS⁶에서 공시하는 2025년의 평균가격⁷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원재료인 PTA 와 MEG는 실제 생산에

⁶ ICIS (www.icis.com) 는 석유화학, 에너지 및 비료(Fertilizer) 시장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서 소요되는 투입비율⁸에 따라 가중평균하였습니다.

<별첨 15> ICIS의 PTA 및 MEG 공시가격

② PET Chip 가공비는 국내생산자인 도레이첨단소재의 PET Chip 제조원가의 가공비 비율⁹을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PET 필름용 Chip을 생산하는 전용 중합라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다른 제품 생산에 따른 비용 혼재 없이 중합 공정에 대한 가공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요청인은 해당 가공비 비율이 PET Chip의 구성가격 산정에 적절한 반영 요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PET Chip은 원료 투입 후 통합된 중합 설비에서 단일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제조원가 중 설비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태국과 우리나라의 PET Chip 생산설비는 기술적 측면 및 생산공정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요청인은 도레이첨단소재의 PET Chip 제조원가 중 가공비 비율을 태국산 핵심사요청물품의 제조원가 산정에 적용하였으며, 국가 간 생산설비 차이는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별첨 16> PET Chip의 가공비율 산정내역

③ PET 필름은 생산라인별로 연속공정으로 생산됨에 따라 생산라인의 생산스피드, 토출량 등의 사양에 따라 비용구조가 결정됩니다. 요청인은 피요청인의 생산설비가 국내생산자 대비 상대적으로 최근에 구축된 설비로, 보다 생산적인 설비일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요청인은 국내생산자 중 최신의 생산설비를 보유한 효성화학의 2025년도 제조원가를 기초로 구성가격의 요소인 노무비 및 제조경비의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④ 노무비는 태국과 우리나라 간 임금수준 및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세계

⁷ 조정전 덤핑가격도 동일하게 2025년의 평균수입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⁸ PET Chip의 100kg 생산을 위해서는 [PTA 87kg 와 MEG 34kg]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⁹ 도레이첨단소재의 2025년 PET Chip 가공비 비율

은행(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를 활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청인은 태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및 노동생산성¹⁰ 지표를 검토하였으며, 태국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20.3% 수준,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의 39.0% 수준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청인은 국내생산자의 노무비를 기초로 하되, 양국 간 급여 수준 및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여 태국의 노무비를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재심사요청물품의 생산공정은 설비집약적 특성이 강하며, 태국과 우리나라의 생산설비 및 제조공정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조경비의 상당 부분은 설비 관련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인은 노무비에 대해서는 양국 간 경제수준 및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나, 제조경비의 경우 생산설비 및 제조공정의 유의적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별첨 17> 노무비율 및 제조경비 비율의 산정

<별첨 18> 태국, 한국의 World Development Data

⑤ 판매관리비 및 금융비용은 태국의 재심사요청물품 생산·판매업체인 폴리플렉스(Polyplex (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폴리플렉스의 2026. 3. 31. 종료 사업연도 재무자료는 영업손실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구성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청인은 영업이익이 발생한 2025. 3. 31. 종료 사업연도(2024. 4. 1. ~ 2025. 3. 31.)의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출원가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및 금융비용의 비율을 산정하였으며, 해당 비율을 재심사요청물품의 구성가격 산정에 적용하였습니다. 폴리플렉스는 태국의 주요 PET 필름 생산 및 판매업체로서 재심사요청물품과 동일

¹⁰ World Bank에서 제공되는 정보이며, 일인당 GDP 및 국민생산성 정보는 2024년의 정보를 이용하였습니다.

국가	일인당 GDP(미국Dollar)	국민생산성정보 (미국Dollar)
한국	36,239	98,259
태국	7,347	38,289
비율	20.3%	39.0%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비용 구조는 태국 PET 필름 산업의 일반적인 판매관리비 및 금융비용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⑥ 구성가격에 포함되는 합리적인 이윤을 산정하기 위하여 요청인은 태국의 재심사 요청물품 생산업체인 폴리플렉스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요청인은 폴리플렉스의 2025년 3월 31일 종료 사업연도(2024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일)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률을 구성가격 산정을 위한 이윤율로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폴리플렉스와 에이제이피(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의 2026년 3월 31일 종료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양사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구성가격 상의 이윤으로 적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기대되는 합리적인 이윤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청인은 손실이 발생한 최근 사업연도 대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하여 이익이 실현된 가장 최근 사업연도인 2025년 3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 구성가격에 포함되는 합리적인 이윤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별첨 19> 태국의 판매비와관리비, 이익률 등의 산정

<수출가격 및 산정근거>

(단위: USD/KG)

조정 전 덤핑가격	조 정 사 항				조정 후 덤핑가격
	해상운송료			소계	
***	***			***	***

(1) 조정 전 덤핑가격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조회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HSK인 3920.62.0000 및 3920.69.0000에 대한 수입자료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가격은 CIF 기준 가격입니다.

(2) 해상운송료는 마이크로웍스(주)의 [*****]

****]을 적용하였습니다. 해상보험료는 수출 금액의 [*****]로 소액으로 덤핑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내수운반비는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공정한 비교를 위해 양측에서 모두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별첨 20> 태국의 해상운송료 산정내역

<덤핑률 산정>

(단위: USD/KG)

조 정 후 정상가격(a)	조 정 후 덤핑가격(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	***	***	***	45.42%

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 수입가격 및 물량의 변동

<UAE산 PET 필름 수입통계>

(단위: 톤, 천USD, USD/톤)

국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UAE	중량	1,000	326	71	19	327	42	30	26	19
	금액	1,000	341	89	25	354	50	29	26	19
	단가	1,000	1,042	1,258	1,328	1,082	1,179	982	987	985

자료: HSCODE: 3920.62 및 3920.69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및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

UAE산 PET 필름의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인 2017년 수입량은 [****]톤이었습니다. 이후 2018년 UAE산 PET 필름의 수입량은 [****]톤으로 전년 대비 67.3%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톤으로 추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UAE산 물품

에 대하여 7.98~60.95%의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이 부과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그 결과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이후 UAE산 PET 필름의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입 증가가 나타났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25년 수입량은 [**]톤에 그쳤습니다. 이와 같이 UAE산 PET 필름의 수입량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 수입량은 2017년 대비 약 98% 감소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행 덤핑방지조치가 UAE산 물품의 덤핑수입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낮은 수입 수준은 UAE 생산업체의 수출능력 감소보다는 현행 덤핑방지조치의 효과이지만, 그렇다고 향후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될 경우 UAE산 PET 필름의 수입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2)수출여력

< UAE의 여유생산능력>

(단위: 천톤)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생산능력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수요	1,000	1,000	1,000	1,000	1,100	1,100
초과생산능력	1,000	1,000	1,000	1,000	992	992
초과생산능력 비중	***%	***%	***%	***%	***%	***%

자료: 2025 Global BOPET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 by Wood Mackenzie

UAE의 PET 필름 생산능력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천톤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UAE의 PET 필름 총수요는 2020년 [***]천톤에서 2024년 및 2025년 [***]천톤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UAE의 초과생산능력은 2020년 [***]천톤에서 2025년 [***]천톤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과생산능력 비중 역시 전체 생산능력의 약 92~93%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UAE의 내수 수요는 생산능력의 10% 미만에 불과하여, UAE의 PET 필름 산업은 구조적으로 수출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UAE 생

산업체들은 생산설비의 가동을 유지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해외 시장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UAE 생산업체들은 국내 수요를 현저히 초과하는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초과생산능력은 지속적인 수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천톤에 달하는 초과생산능력은 한국 시장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큰 수준입니다.

한편 UAE산 PET 필름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우리나라로의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 감소는 UAE 생산업체의 수출여력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에 따른 수입 억제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UAE의 수출지향적 산업구조, 상당한 규모의 초과생산능력, 그리고 현행 덤핑방지조치 이후 나타난 수입 감소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가 종료될 경우 UAE산 PET 필름의 대(對)한국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 덤핑수입이 재발 또는 증가하고,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요청인 제시 덤핑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UAE산 PET 필름의 수입량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 감소는 UAE 생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또는 수출 여력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따른 제재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수입물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수입 자체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덤핑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해당 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수입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의 종료재심사(Sunset Review) 판단기준에서도 확인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Policy Bulletin 98-3에서 “반덤핑 조치 부과 이후 수입물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덤핑마진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

이는 반덤핑조치가 없다면 수출자가 과거 수준의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덤핑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서도 UAE산 PET 필름의 수입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UAE 생산업체들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반덤핑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시장은 UAE 생산업체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수출 시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UAE산 PET 필름에 대한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될 경우, UAE 생산업체들이 보유한 수출 여력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어 덤핑수입이 재발할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요청인은 UAE산 PET 필름의 수입물량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 UAE의 상당한 초과생산능력, 그리고 제3국의 반덤핑조치로 인한 수출 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역위원회가 원심에서 산정한 UAE산 PET 필름의 덤핑률인 51.48%를 본 종료재심사에서 적용하여야 할 덤핑률로 제시합니다.

라. 제3국으로 부터의 무역구제 조치에 따른 피요청국가의 대 한국 수출여력의 증대

피요청국에 대한 제3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대만 및 UAE산 PET 필름은 각각 2002년 및 200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PET 필름 소비시장 중 하나로서, 해당 시장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피요청국의 수출기회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태국산 PET 필름은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요청국들은 주요 수출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무역구제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어 해당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무역위원회는 2026. 2. 10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6. 2. 12에는 대만산 PET 필름에 대해

서도 덤핑 및 산업피해의 재발 가능성을 인정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추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도 2026. 4. 1. 중국, 태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조치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요청국의 PET 필름 산업이 주요 수출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덤핑 문제와 관련된 무역구제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해당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가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피요청국들은 상당한 규모의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시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될 경우, 제3국의 무역구제조치로 인하여 제한된 수출물량이 상대적으로 개방된 한국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5위 규모의 PET 필름 수요시장으로서 높은 부가가치와 안정적인 수요를 갖추고 있어 피요청국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수출시장에 해당합니다.

결국 피요청국의 상당한 초과생산능력, 제3국의 장기간 무역구제조치, 그리고 한국 시장의 높은 매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될 경우 피요청국으로부터의 저가 수입이 증가하고 덤핑이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3국으로 부터의 피요청국에 대한 무역구제 현황 >

조치국가	대상국가	최초부과명령	덤핑관세(예치)율
미국	대만	2002-05-20	1.06%-2.56%
	UAE	2008-09-24	4.8% ~ 70.75%
인도네시아	태국	2015-12-07	2.2%~7.1%

자료: 미상무성 및 인도네시아 KADI 판정문

<별첨 21> 미국, 인도네시아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문

<별첨 22> 미국ITC의 UAE 무역구제조치 연장 판정문(Sunset Review) 2026. 2. 10

<별첨 23> 미국ITC의 대만무역구제조치 연장 판정문(Sunset Review) 2026. 2. 12

<별첨 24> 미국상무성의 대만 재심 판정문(Administrative review) 2026. 4. 13

<별첨 25> 미국상무성의 UAE 재심 판정문(Administrative review) 2021. 2. 2

<별첨 26> 인도네시아의 태국 무역구제조치 연장 판정문(Sunset Review) 2026. 4. 1

마. 덤핑조사기간

2026. 2. 28 부터 이란-미국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원유 및 나프타의 가격이 시장의 정상적인 수급 요인 외의 외생적 요인에 의해 급격하게 변동하였습니다. PET 필름 역시 대표적인 석유화학제품의 하나로서 이러한 비정상적 원재료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원재료 가격 변동은 PET 필름의 제조원가 및 판매가격 형성에 일시적이지만 중대한 왜곡을 초래하여, 해당 기간의 가격자료가 정상적인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인은 비시장적 외부 충격에 따른 왜곡 효과를 배제하고 정상적인 경쟁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덤핑조사기간을 2025. 1. 1. ~ 2025. 12. 31.로 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의 지속에 관한 증빙

가. 수입

(1) 국내소비현황

<재심사요청물품의 국내소비 현황 >

(단위: 톤, 백만원,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a=b+e)		물량	1,000	928	△7.2%	996	7.3%	959	△3.7%	
		금액	1,000	885	△11.5%	918	3.7%	919	0.1%	
총수입 (b=c+d)		물량	1,000	980	△2.0%	1,218	24.3%	1,267	4.0%	
		금액	1,000	810	△19.0%	836	3.2%	994	18.9%	
재심사대상물품(c)		물량	1,000	909	△9.1%	840	△7.6%	917	9.2%	
		금액	1,000	694	△30.6%	699	0.7%	778	11.3%	
		태국	물량	1,000	984	△1.6%	1,008	2.5%	1,107	9.8%
			금액	1,000	747	△25.3%	825	10.4%	899	9.0%
		대만	물량	1,000	566	△43.4%	64	△88.7%	43	△33.0%
			금액	1,000	446	△55.4%	107	△76.1%	210	97.1%
		UAE	물량	1,000	696	△30.4%	615	△11.7%	459	△25.3%
			금액	1,000	587	△41.3%	545	△7.0%	416	△23.7%
기타국 수입(d)		물량	1,000	1,049	4.9%	1,585	51.1%	1,605	1.3%	
		금액	1,000	887	△11.3%	927	4.5%	1,138	22.8%	
국내생산품 출하(e)		물량	1,000	907	△9.3%	905	△0.3%	833	△7.9%	
		금액	1,000	909	△9.1%	944	3.9%	895	△5.2%	
국내 소 비 점 유 률	재심사대상물품		****%	****%	△0.3%p	****%	△1.9%p	****%	1.6%p	
	태국		****%	****%	0.7%p	****%	△0.6%p	****%	1.7%p	
	대만		****%	****%	△1.0%p	****%	△1.3%p	****%	△0.1%p	
	UAE		****%	****%	0.0%p	****%	0.0%p	****%	0.0%p	
	기타국수입		****%	****%	1.9%p	****%	6.8%p	****%	1.2%p	
	국내생산품출하		****%	****%	△1.6%p	****%	△4.9%p	****%	△2.8%p	

자료: 요청인의 결산자료, 관세청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단,

[*****]

*****]

PET 필름의 국내 소비량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포장재, 전자제품 및 관련 산업의 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던 PET 필름 수요가 팬데믹 종료 이후 정상 수준으로 회귀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태국산 물품의 수입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산 물품의 국내 소비점유율은 2022년 [***]%에서 2025년 [***]%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태국산 물품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증가한 것은 태국산 물품은 국내생산품 및 기타 수입품 대비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대만산 물품의 수입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감소하였고, UAE산 물품의 수입 역시 같은 기간 [****]톤에서 [****]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대만산 및 UAE산 물품의 수입량 합계는 국내 총소비량 [****]톤의 약 0.1% 수준입니다.

대만 및 UAE산 물품의 수입 감소는 해당 국가의 수출 여력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태국산 물품의 수입 증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조사대상기간 중 중국산 및 태국산 물품에는 약 2~4% 수준의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 반면, 대만산 및 UAE산 물품에는 기본 관세 6.5%에 더하여 각각 5%~51.48% 수준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입시장에서 대만산 및 UAE산 물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생산품의 출하량은 2020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국내시장 점유율 역시 같은 기간 [***]에서 [***]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가 소폭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생산품이 시장을 상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국 수입의 대부분은 중국산 물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국 수입의 주요

공급국은 중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이지만, 이 중 중국산 물품이 기타국 수입량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PET 필름의 수입량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소비는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산 및 중국산 물품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생산품의 출하량과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저가 수입품의 증가가 국내산업의 판매기회 상실 및 시장점유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 가격

<재심사요청물품의 수입가격>

(단위: 톤, 천USD, USD/톤, 원/KG)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대만	수입물량(톤)	1,000	566	△43.4%	64	△88.7%	43	△33.0%
	수입금액(천US\$)	1,000	441	△55.9%	101	△77.1%	191	89.0%
	평균수입가격(US\$/톤)	1,000	778	△22.2%	1,556	100.0%	4,444	185.7%
	원화재판매가격AD제외(원/KG)	1,000	789	△21.1%	1,673	112.2%	4,916	193.8%
	원화재판매가격AD포함(원/KG)	1,000	789	△21.1%	1,673	112.2%	4,916	193.7%
태국	수입물량(톤)	1,000	984	△1.6%	1,008	2.5%	1,107	9.8%
	수입금액(천USD)	1,000	740	△26.0%	781	5.6%	817	4.6%
	평균수입가격(US\$/톤)	1,000	778	△22.2%	778	0.0%	722	△7.1%
	원화재판매가격AD제외(원/KG)	1,000	760	△24.0%	818	7.6%	812	△0.7%
	원화재판매가격AD포함(원/KG)	1,000	737	△26.3%	794	7.7%	788	△0.7%
UAE	수입물량(톤)	1,000	696	△30.4%	615	△11.7%	459	△25.3%
	수입금액(천US\$)	1,000	580	△42.0%	515	△11.1%	379	△26.5%
	평균수입가격(US\$/톤)	1,000	842	△15.8%	842	0.0%	842	0.0%
	원화재판매가격AD제외(원/KG)	1,000	842	△15.8%	883	4.9%	919	4.1%
	원화재판매가격AD포함(원/KG)	1,000	842	△15.8%	884	4.9%	919	4.0%
합계	수입물량(톤)	1,000	909	△9.1%	840	△7.6%	917	9.2%
	수입금액(천US\$)	1,000	687	△31.3%	662	△3.7%	707	6.7%
	평균수입가격(US\$/톤)	1,000	778	△22.2%	778	0.0%	778	0.0%

(단위: 톤, 천USD, USD/톤, 원/KG)

구분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원화재판매가격AD제외(원/KG)	1,000	761	△23.9%	824	8.2%	841	2.1%
	원화재판매가격AD포함(원/KG)	1,000	740	△26.0%	860	16.3%	877	2.0%
국내생산품		1,000	1,002	0.2%	1,044	4.1%	1,074	2.9%

자료: 요청인의 결산자료와 관세청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입통계자료

- ① 원화재판매가격 = 수입가격 (CIF Korea Port 기준) * 한국은행 평균환율 * (1 + 일반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 통관제비용(*)
 (*)통관제비용은 효성화학의 2025년 수입에 따라 발생한 비용인 [*****]을 적용하였습니다.
 <별첨 28> 통관제비용의 산정내역

- ② 국내생산품의 가격은 재심사요청인의 평균 국내판매가격입니다.

태국산 물품의 원화재판매가격(덤핑방지관세포함)은 2022년 [****]원이며, 2023년 [****]원으로 26.3% 하락하였으며, 2025년 [****]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태국산 물품의 가격은 2023년부터 국내생산품의 약 50%의 가격으로 수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다만, UAE 산 물품은 수입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국내시장점유율이 약 0.1% 내외여서 국내시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2023년 이후 태국산 물품은 국내생산품 가격의 약 50% 수준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저한 가격 차이는 국내 수요자들이 저가 수입품으로 구매를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국내생산품의 판매기회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동시에 국내생산품의 가격 인상 또는 적정 가격 유지를 어렵게 하는 가격압박(price suppression) 효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실제로 국내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태국산 물품의 수입량과 시장점유율은 매년 증가한 반면, 국내생산품의 출하량과 시장점유율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태국산 저가 수입품이 국내시장 내 경쟁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대만산 및 UAE산 물품의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2025년 기준 국내시장점유율이 약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입 감소는 해당 국가 생산업체의 수출능력 감소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현행 조치가 종료될 경우, 대

만 및 UAE산 물품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되어 국내시장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나. 생산

<생산현황>

(단위: 톤,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1,000	1,000	0.0%	1,000	0.0%	844	△15.6%
생산량(B)	1,000	889	△11.1%	896	0.8%	849	△5.2%
가동률(=B/A)	***%	***%	△7.8%p	***%	0.5%p	***%	7.7%p

자료: 요청인의 내부자료

요청인의 연간 생산능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톤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말 국내 PET 필름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설비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마이크로웍스는 PET 필름 사업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설비를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은 2022년 [*****]톤에서 2025년에는 [*****]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연평균 약 5%의 감소율에 해당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소비량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감소율은 약 1.4% 수준에 그쳤습니다. 즉, 국내 소비의 감소 폭보다 국내생산량의 감소 폭이 현저히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생산자가 시장수요 감소 이상의 판매기회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국내생산자의 가동률은 2022년 [*****]에서 2024년 [*****]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가동률이 [*****]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생산설비 폐쇄 및 생산능력 축소에 따른 기계적인 상승에 따른 것

입니다. 실제로 2025년 생산량은 여전히 감소 추세를 지속하였으며, 국내생산자의 생산 및 판매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내생산자는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설비 폐쇄 및 사업 통합이라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감소와 시장점유율 하락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소비 감소율을 크게 상회하는 생산량 감소와 장기간의 가동률 하락은 덤핑수입으로 인한 시장잠식이 국내산업의 생산활동에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판단됩니다.

다. 판매

〈판매현황〉

(단위: 톤, 백만원, 천원/톤,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 (a=b+c)	물량	1,000	915	△8.5%	947	3.5%	818	△13.6%
	금액	1,000	912	△8.8%	978	7.3%	893	△8.8%
	단가	1,000	996	△0.4%	1,033	3.7%	1,091	5.6%
국내출하 (b)	물량	1,000	907	△9.3%	905	△0.3%	833	△7.9%
	금액	1,000	909	△9.1%	944	3.9%	895	△5.2%
	단가	1,000	1,002	0.2%	1,044	4.1%	1,074	2.9%
수출 (c)	물량	1,000	931	△6.9%	1,031	10.7%	787	△23.6%
	금액	1,000	916	△8.4%	1,042	13.7%	887	△14.8%
	단가	1,000	984	△1.6%	1,011	2.7%	1,127	11.5%

자료: 요청인의 내부자료

(*)국내생산자의 자가소비는 없습니다.

국내생산품의 총출하량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출하량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출량 역시 같은 기간 [*****]톤에서 [*****]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출하량의 감소는 국내 소비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내 PET 필름 소비량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약 4.1% 감소하는 데 그쳤

으나, 국내출하량은 같은 기간 약 16.7%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수요 감소 이상의 판매기회 상실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저가 수입 증가와 더불어 태국산 물품의 저가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가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국내생산품의 판매 기회를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 측면에서도 국내생산품의 출하는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PET 필름 시장의 공급과잉,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에 따라 국내생산자의 해외 판매여건이 악화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결국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생산품의 국내출하와 수출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총출하량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시장에서는 태국산 및 기타국산 저가 수입품의 증가가 국내생산품의 판매기회를 상당 부분 대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산업의 생산, 판매 및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재고

<재고현황>

(단위: 톤,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a)	1,000	923	△7.7%	963	4.3%	854	△11.3%
재고(b)	1,000	895	△10.5%	571	△36.2%	668	16.9%
재고율(b/a)	***%	***%	△0.4%p	***%	△5.5%p	***%	2.7%p

자료: 요청인의 내부자료

국내생산자의 재고는 2022년 [****]톤에서 2023년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톤으로 다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고율(재고/총출하)은 2022년 및 2023년 각각 [****]%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에 [****]%까지 재고율이 감소한 것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마이크로웍스와의 합병을 위해 일시적으로 재고를 감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 그러나 2025년에는 재고율이 다시 [****]%로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의 재고 증가는 시장 상황 개선에 따른 생산 확대의 결과라기보다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재고 감소 효과가 제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총출하량이 2024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약 11.3% 감소한 점 역시 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국내생산자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생산설비 폐쇄, 사업 통합 및 생산량 조정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증가하였습니다. 재고 증가의 다른 원인은 생산량 감소보다 총출하량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즉, 생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판매 부진이 더욱 심화되면서 재고 부담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태국산 등 저가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국내생산품의 판매기회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저가 수입품의 지속적인 유입은 국내생산자의 판매가격 인하 압력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출하량 감소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재고 누적 및 수익성 악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국내생산자는 생산능력 축소와 생산량 조정을 통해 재고를 관리하려 노력하였으나, 저가 수입품 증가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인해 재고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재고 부담은 향후 생산계획, 가동률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손익

<손익현황>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A)	1,000	909	△9.1%	944	3.9%	895	△5.2%
매출원가(B)	1,000	962	△3.8%	953	△0.9%	887	△6.9%
매출총이익(C=A-B)	1,000	406	△59.4%	866	113.2%	980	13.2%
판매관리비(D)	1,000	718	△28.2%	857	19.4%	603	△29.7%
영업이익(E=C-D)	1,000	6,601	560.1%	691	△89.5%	1,000	흑자전환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영업이익률(E/A)	***%	***%	△3.1%p	***%	2.7%p	***%	0.9%p

자료: 요청인의 내부자료

국내생산품의 국내매출액은 2022년 [*****]백만원에서 2025년 [*****]백만원으로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출하량 감소와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감소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산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 이르러서야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은 주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과, 태국산 및 중국산 물품의 저가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생산품의 가격 인상이 억제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태국산 물품은 국내생산품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며, 중국산 물품의 수입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은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 하락 및 가격인상 억제 효과를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국내산업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한편, 2025년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은 시장환경 개선 또는 덤핑수입 감소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국내생산자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4년 말 국내생산자인 [*****]

 *****]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이며 2023년 및 2024년에도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 [***]%로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성 개선은 저가 수입품에 따른 경쟁압력이 완화된 결과가 아니라, 국내생산자가 생산설비 감축, 비용 절감 및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생산구조 전환 등 상당한 자구노력을 통하여 달성한 결과입니다.

국내생산자는 덤핑물품과 국내생산품 간 가격 격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덤핑물품의 가격 수준에 맞추어 정상적인 판매를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국내생산자는 생산설비 통합 및 일부 생산라인 폐쇄를 통해 고정비 부담을 축소하는 한편, 수익성이 낮은 제품의 생산 비중을 축소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하는 방향으로 판매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회성 구조조정 효과 및 제품구성(Product Mix) 개선은 2025년 국내생산자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산량 및 판매량의 축소와 소비점유율 하락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국내산업의 피해는 오히려 더욱 심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025년의 수익성 개선은 시장 경쟁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저수익 사업 축소와 비용 절감에 기반한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영업이익 흑자 전환만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내산업은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설비 폐쇄 및 사업 재편이라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자구노력이 없었다면 손실 상태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내산업이 여전히 덤핑수입에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될 경우 산업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제조원가

〈단위당 제조원가〉

(단위:원/KG)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I. 재료비	1,000	999	△0.1%	1,006	0.7%	1,007	0.2%
II. 노무비	1,000	990	△1.0%	937	△5.3%	1,021	8.9%
III. 경비	1,000	1,060	6.0%	1,019	△3.9%	1,042	2.3%
합계	1,000	1,021	2.1%	1,003	△1.7%	1,022	1.9%

자료: 요청인의 내부자료

국내생산품의 KG당 제조원가는 2022년 [****]원에서 2025년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022년 [****]원에서 2025년 [****]원으로 상승하였으며, 경비는 같은 기간 [****]원에서 [****]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노무비는 2022년 [****]원에서 2024년 [****]원까지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말 대한민국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재정립된 데 기인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및 일률성을 중심으로 판단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조건부 또는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등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건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노무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전체 KG당 제조원가는 2022년 [****]원에서 2023년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다시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즉, 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은 지속적으로 높은 제조원가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국내산업은 원재료비와 제조원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태국산 등의 저가 수입품과 경쟁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수입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 인상이 제한되었으며,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전

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내생산자는 덤핑물품과의 가격 격차가 과도하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저수익 제품의 판매를 축소하거나 사실상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국내생산자의 판매량 감소와 시장점유율 하락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산업은 높은 제조원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가 덤핑수입에 따른 가격경쟁 압력까지 동시에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 악화와 판매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일부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장 경쟁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생산설비 감축, 비용 절감 및 사업구조 재편 등 자구노력에 의한 일시적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저가 수입이 다시 확대되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하거나 더욱 심화될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설비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설비투자	1,000	989	△1.1%	1,340	35.5%	5,434	305.5%
토지	1,000	1,000	0.0%	1,000	0.0%	1,000	0.0%
건물	1,000	-	△100.0%	-	-	-	-
구축물	1,000	581	△41.9%	484	△16.7%	1,753	262.5%
기계장치	1,000	1,035	3.5%	1,536	48.3%	4,406	186.9%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	1,000	935	△6.5%	93	△90.1%	749	709.7%
연구개발	1,000	916	△8.4%	862	△5.9%	1,061	23.1%

자료: 요청인의 내부자료

국내 산업은 PET 필름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과 신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하여 상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속적·고정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설비투자는 주로 생산설비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 변화 및 덤핑 수입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자는 기존 생산설비의 생산품종 전환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비 개선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출은 설비투자 즉 유형자산의 증가로 처리되었습니다.

아. 주요 원자재 가격

〈주요 원자재가격〉

(단위: 원/KG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원재료	TPA	1,000	953	△4.7%	927	△2.7%	842	△9.2%
	EG	1,000	922	△7.8%	1,023	10.9%	1,018	△0.4%
	DMT	1,000	1,005	0.5%	1,058	5.3%	1,067	0.8%
	PET Chip	1,000	962	△3.8%	928	△3.5%	858	△7.6%
국내생산품의 가격(원/KG)		1,000	945	△5.5%	972	2.8%	912	△6.2%
재심사요청물품의 가격(USD/KG)		1,000	1,002	0.2%	1,044	4.1%	1,074	2.9%
재심사요청물품의 가격(원/KG)		1,000	753	△24.7%	786	4.4%	769	△2.1%

자료: 요청인의 내부자료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입통관자료

국내생산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PET 필름의 주요 원재료인 TPA의 KG당 가격은 2022년 [****]원에서 2025년 [****]원으로 15.8% 하락하였으며, PET Chip 역시 같은 기간 [****]원에서 [****]원으로 14.2%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EG와 DMT는 일부 연도에 변동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이와 같은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품의 평균 판매가격은 2022년 [****]원에서 2025년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평균 판매가격 상승은 국내산업의 가격결정력이 개선되었거나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정상적으로 전가한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는 재심사요청물품과의 가격 격차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국내생산자가 저가 덤핑수입품과 직접 경쟁하는 제품의 판매를 축소하거나 사실상 중단하고, 상대적으로 판매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구조를 재편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평균 판매가격 상승은 실질적인 가격 인상이라기보다는 제품구성(Product Mix) 변화에 따른 통계적 상승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재심사요청물품의 피해가 단순한 가격억제(price suppression) 또는 가격하락(price depression) 수준을 넘어, 국내생산자의 판매기회 자체를 축소시키는 시장잠식 내지 시장배제 효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생산자는 저가 덤핑수입으로 인해 상당한 판매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이는 판매량 감소와 시장점유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관한 증빙

가. 재심사요청물품의 현저한 수입 증가

<재심사요청물품의 대 한국 수출현황>

(단위: 톤, 천USD, USD/KG)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태국	중량	1,000	984	△1.6%	1,009	2.5%	1,107	9.8%
	금액	1,000	740	△26.0%	781	5.6%	817	4.6%
	단가	1,000	752	△24.8%	775	3.1%	738	△4.8%
대만	중량	1,000	566	△43.4%	64	△88.7%	43	△33.0%
	금액	1,000	441	△55.9%	101	△77.1%	191	89.0%
	단가	1,000	780	△22.0%	1,585	103.2%	4,470	182.0%
UAE	중량	1,000	696	△30.4%	615	△11.7%	459	△25.3%
	금액	1,000	580	△42.0%	516	△11.1%	379	△26.5%
	단가	1,000	832	△16.8%	838	0.7%	824	△1.6%
재심사요 청물품	중량	1,000	909	△9.1%	840	△7.6%	917	9.2%
	금액	1,000	687	△31.3%	662	△3.7%	706	6.7%
	단가	1,000	756	△24.4%	788	4.2%	770	△2.2%

자료: HSCODE: 3920.62 및 3920.69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입통관자료

태국산 물품의 수입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약 11%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의 수입량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인 2017년의 [*****]톤보다 약 54% 증가한 수준입니다. 반면 태국산 물품의 수입가격은 2022년 kg당 [***]달러에서 2025년 [***]달러로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 태국산 물품의 가격은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의 50% 이하 수준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가격으로 국내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태국산 물품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수입물량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현행 덤핑방지조치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덤핑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만약 현행 조치가 종료된다면 태국산 물품의 저가 수입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대만산 물품의 수입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감소하였고, UAE산 물품의 수입 역시 같은 기간 [*****]톤에서 [*****]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대만산 및 UAE산 물품의 수입량은 국내 총소비량의 약 0.1% 수준에 불과하여 현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 감소는 해당 국가의 수출여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의 효과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대만은 2025년 기준 약 [**]천톤의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능력의 약 3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UAE는 약 [**]천톤의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능력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의 잉여 생산물량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재심사요청물품 전체의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2023년 [**] 감소하고 2024년 [**]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태국산 물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 감소 추세가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산 물품의 수입 증가 역시 동남아시아 지역 내 생산능력 확대와 한국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판매 확대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요청국들은 상당한 규모의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입국으로부터 장기간 무역구제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 규모의 PET 필름 수요시장으로서 높은 가격 수준과 다양한 수요 기반을 갖춘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따라서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피요청국의 잉여 생산물량이 한국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원심 조사에서 재심사요청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산업피해 수준을 89.1%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PET 필름 산업의 공급과잉은 당시보다 더욱 심화되었고, 중국 및 태국산 저가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산업은 생산설비 폐쇄와 사업 통합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한 이후에야 제한적인 수익성 회복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될 경우 재심사요청물품의 덤핑수입은 재발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국내산업은 원심 조사 당시와 같거나 그 이상의 심각한 산업피해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조

치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재심사요청물품의 공급국 생산 및 수출여력

(1) 생산능력 증대에 따른 피요청국가의 수출여력

< PET 필름의 글로벌 생산현황 >

(단위: 천톤,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	1,000	1,120	12.0%	1,278	14.1%	1,406	10.0%
수요 및 공급	1,000	989	△1.1%	1,048	6.0%	1,098	4.7%
가동률	***%	***%	△7.4%p	***%	△4.0%p	***%	△2.5%p
초과생산능력	1,000	1,347	34.7%	1,674	24.3%	1,939	15.8%

자료: 2025 Global BOPET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 by Wood Mackenzie

글로벌 PET 필름 산업의 생산능력, 수요 및 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생산능력은 [****]천톤, 수요는 [****]천톤으로 가동률은 [**]%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생산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요 증가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동률은 2023년 [**]%, 2025년 [**]%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초과생산능력은 2022년 [*****]천톤에서 2025년 [*****]천톤으로 약 두 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2025년 PET 필름 소비량인 [*****]천톤의 약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세계 시장에 막대한 공급과잉 물량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급과잉은 주로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국들의 지속적인 설비 증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반면 세계 수요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 단기간 내 공급과잉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환경에서는 생산설비의 가동을 유지하기 위한 수출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저가 수출 또는 덤핑수

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피요청국들은 상당한 규모의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은 세계 5위 규모의 수요시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과 다양한 수요 기반을 갖추고 있어 수출대상국으로서 높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피요청국의 잉여 생산물량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현재의 글로벌 PET 필름 시장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에 있으며, 생산능력 대비 수요 부족으로 인해 국제시장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덤핑수입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 대만의 여유생산능력>

(단위: 천톤,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	1,000	1,000	0.0%	1,000	0.0%	1,000	0.0%
총수요	1,000	1,019	1.9%	1,026	0.7%	1,039	1.3%
초과생산능력	100.0%	101.9%	1.9%p	102.6%	0.7%p	103.9%	1.3%p
초과생산능력 비중	***%	***%	△1.3%p	***%	△0.5%p	***%	△0.9%p

자료: 2025 Global BOPET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 by Wood Mackenzie

대만의 PET 필름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능력은 2022년 [***]천톤에서 추가적인 설비 증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대만의 PET 필름 총수요는 2022년 [***]천톤에서 연평균 약 2%의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 [***]천톤에 이르렀으며, 2025년 이후에도 연간 약 2~3% 수준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능력은 2022년 [***]천톤에서 수요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25년에도 약 [***]천톤의 초과생산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대만의 PET 필름 산업이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수출 의존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만의 초과생산능력은 장기적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 있으나,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천톤의 초과생산능력은 우리나라 연간 PET 필름 소비량의 약 [***]%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한국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량입니다.

한편, 대만산 PET 필름의 국내 수입량은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현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수입 감소는 대만의 수출능력 감소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무역구제조치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초과생산능력이 한국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5위 규모의 PET 필름 수요시장으로서 높은 가격 수준과 다양한 고부가가치 수요를 보유하고 있어 대만 생산자에게 매력적인 수출시장에 해당합니다.

결국 대만은 현재 국내시장에 대한 수출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수출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수입이 재발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역시 재발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태국의 여유생산능력 >

(단위: 천톤,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	1,000	1,058	5.8%	1,082	2.3%	1,082	0.0%
총수요	1,000	1,025	2.5%	1,073	4.7%	1,102	2.7%
초과생산능력	1,000	1,070	7.0%	1,086	1.5%	1,075	△1.0%
초과생산능력 비중	***%	***%	0.8%p	***%	△0.6%p	***%	△0.7%p

자료: 2025 Global BOPET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 by Wood Mackenzie

태국의 PET 필름의 산업현황을 보면, 생산능력은 2022년 [***]천톤에서 2023년 [***]천톤, 2024년 [***] 천으로 증가 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태국의 PET 필름 총수요는

2022년 [***]천톤 연평균 약 4%의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 [***] 천 톤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이후에도 총수요의 증가는 약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태국의 초과생산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초과생산능력은 2022년 [***]천톤에서 2025년 [***]천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생산능력의 약 [***]%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 증가에 따라 초과생산능력 비중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태국 PET 필름 산업은 내수시장 규모에 비해 생산능력이 현저히 큰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상당한 규모의 초과생산능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설비의 안정적인 가동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일 것입니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태국의 초과생산능력 2025년 기준 [***]천톤이며, 2025년의 태국산 물품 수입량 [***] 톤의 약 [**]배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는 태국 생산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상당한 공급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태국산 PET 필름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수입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태국 생산업체들이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될 경우, 태국 생산업체들이 보유한 대규모 초과생산능력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태국 PET 필름 산업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 상당한 규모의 초과생산능력, 최근의 수입 증가 및 가격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태국산 PET 필름의 덤핑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 또는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 UAE의 여유생산능력>

(단위: 천톤,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단위: 천톤,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	1,000	1,000	0.0%	1,000	0.0%	1,000	0.0%
총수요	1,000	992	△0.8%	1,008	1.6%	1,040	3.2%
초과생산능력	1,000	1,001	0.1%	1,000	△0.1%	997	△0.3%
초과생산능력 비중	***%	***%	0.1%p	***%	△0.1%p	***%	△0.2%p

자료: 2025 Global BOPET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 by Wood Mackenzie

UAE의 PET 필름 생산능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천톤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UAE의 PET 필름 총수요는 2022년 [***]천톤에서 2024년 및 2025년 [***]천톤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UAE의 초과생산능력은 2022년 [***]천톤에서 2025년 [***]천톤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과생산능력 비중 역시 전체 생산능력의 약 [***]%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UAE의 내수 수요는 생산능력의 [***]% 미만에 불과한 수준으로, PET 필름 산업은 구조적으로 수출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UAE 생산업체들은 생산설비의 가동률 유지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해외시장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UAE 생산업체들은 국내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설비의 가동률 유지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상당 규모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톤에 달하는 초과생산능력은 한국 시장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큰 수준입니다.

한편 UAE산 PET 필름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우리나라로의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이러한 수입 감소는 UAE 생산업체의 수출여력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에 따른 수입 억제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UAE의 수출지향적 산업구조, 상당한 규모의 초과생산능력, 그리고 현행 덤핑방지조치 이후 나타난 수입 감소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될 경우 UAE산 PET 필름의 수출이 한국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덤핑수입이 재발 또는 증가하고,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피요청국인 대만, 태국 및 UAE의 초과생산능력은 2025년 기준 총 약 [***]천톤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연간 PET 필름 소비량인 [***]천톤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더욱이 태국산 물품은 현행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만 및 UAE 역시 상당한 규모의 수출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된다면 피요청국 생산자들은 유희생산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초과생산능력을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규모의 저가 수입물량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시장 가격 하락, 국내생산품 판매 감소, 수익성 악화 및 시장점유율 하락 등 심각한 산업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요청국 PET 필름 산업의 가동률 및 추가 공급여력

<재심사대상국의 가동률 현황>

(단위: 천톤,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태국	생산능력	1,000	1,058	5.8%	1,082	2.3%	1,082	0.0%
	생산량	1,000	1,007	0.7%	1,088	8.0%	1,255	15.4%
	가동률	***%	***%	△3.0%p	***%	3.3%p	***%	9.7%p
대만	생산능력	1,000	1,000	0.0%	1,000	0.0%	1,000	0.0%
	생산량	1,000	1,088	8.8%	1,053	△3.2%	1,061	0.8%
	가동률	***%	***%	5.8%p	***%	△2.3%p	***%	0.6%p
UAE	생산능력	1,000	1,000	0.0%	1,000	0.0%	1,000	0.0%
	생산량	1,000	1,435	43.5%	1,739	21.2%	2,348	35.0%
	가동률	***%	***%	7.5%p	***%	5.3%p	***%	10.5%p
합계	생산능력	1,000	1,024	2.4%	1,034	1.0%	1,034	0.0%

(단위: 천톤, %)

구분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량	1,000	1,077	7.7%	1,128	4.7%	1,266	12.3%
	가동률	***%	***%	2.7%p	***%	2.0%p	***%	7.0%p

자료: 2025 Global BOPET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 by Wood Mackenzie

피요청국인 대만, 태국 및 UAE의 PET 필름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이들 3개국의 합산 생산능력은 2022년 [***]천톤에서 2025년 [***]천톤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합산 생산량은 [***]천톤에서 [***]천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동률은 [***]%에서 [***]%로 상승하였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만의 생산능력은 대상기간 동안 [***]천톤 수준에서 대체로 유지되었으며, 가동률 역시 [***]%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태국은 생산능력이 2022년 [***]천톤에서 2025년 [***]천톤으로 약 [***]% 증가하여 피요청국 중 가장 큰 설비 확장을 나타냈습니다. 태국의 생산량 역시 [***]천톤에서 [***]천톤으로 증가하였으나, 가동률은 [***]%대 중반에 머물러 상당한 유휴생산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AE의 경우 생산능력은 대상기간 동안 [***]천톤으로 유지되었으나, 생산량은 2022년 [***]천톤에서 2025년 [***]천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동률도 [***]%에서 [***]%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 상당한 수준의 유휴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피요청국 전체의 가동률은 2025년 기준 [***]%에 불과하여 전체 생산능력의 약 [**]%가 유휴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피요청국들이 상당한 규모의 유휴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해당 잉여 생산능력은 향후 수출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요청국은 내수시장 규모 대비 생산설비가 큰 전형적인 수출 중심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생산설비의 안정적인 가동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피요청국이 보유한 잉여 생산능력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어 덤핑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제3국으로부터의 무역구제 조치에 따른 피요청국가의 대 한국 수출여력의 증대

피요청국에 대한 제3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대만 및 UAE산 PET 필름은 각각 2002년 및 200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PET 필름 소비시장 중 하나로서, 해당 시장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피요청국의 수출기회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태국산 PET 필름은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와 같이 피요청국들은 주요 수출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무역구제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어 해당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무역위원회는 2026. 2. 10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6. 2. 12에는 대만산 PET 필름에 대해서도 덤핑 및 산업피해의 재발 가능성을 인정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추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역시 2026. 4. 1. 중국, 태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조치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요청국의 PET 필름 산업이 주요 수출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덤핑 문제와 관련된 무역구제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해당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가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피요청국들은 상당한 규모의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시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될 경우, 제3국의 무역구제조치로 인하여 제한된 수출물량이 상대적으로 개방된 한국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5위 규모의 PET 필름 수요시장으로서 높은 부가가치와 안정적인 수요를 갖추고 있어 피요청국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수출시장에 해당합니다.

결국 피요청국의 상당한 초과생산능력, 제3국의 장기간 무역구제조치, 그리고 한국 시장의 높은 매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될 경

우 피요청국으로부터의 저가 수입이 증가하고 덤핑이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 제3국으로 부터의 피요청국에 대한 무역구제 현황〉

조치국가	대상국가	최초부과명령	덤핑관세(예치)율
미국	대만	2002-05-20	1.06%~2.56%
	UAE	2008-09-24	4.8% ~ 70.75%
인도네시아	태국	2015-12-07	2.2%~7.1%

자료: 미상무성 및 인도네시아 KADI 판정문

〈별첨 21〉 미국, 인도네시아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문

〈별첨 22〉 미국ITC의 UAE 무역구제조치 연장 판정문(Sunset Review) 2026. 2. 10

〈별첨 23〉 미국ITC의 대만무역구제조치 연장 판정문(Sunset Review) 2026. 2. 12

〈별첨 24〉 미국상무성의 대만 재심 판정문(Administrative review) 2026. 4. 13

〈별첨 25〉 미국상무성의 UAE 재심 판정문(Administrative review) 2021. 2. 2

〈별첨 26〉 인도네시아의 태국 무역구제조치 연장 판정문(Sunset Review) 2026. 4. 1

다. 재심사요청물품의 한국 내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재심사요청물품의 수입가격>

(단위: 톤, 천USD, %)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태국	수입물량(톤)	1,000	984	△1.6%	1,009	2.5%	1,107	9.8%
	수입금액(천USD)	1,000	740	△26.0%	781	5.6%	817	4.6%
	평균수입가격(US\$/톤)	1,000	752	△24.8%	775	3.1%	738	△4.8%
	원화재 판매가격AD제외(원/KG)	1,000	762	△23.8%	820	7.6%	814	△0.7%
	원화재 판매가격AD포함(원/KG)	1,000	762	△23.8%	820	7.6%	814	△0.7%
대만	수입물량(톤)	1,000	566	△43.4%	64	△88.7%	43	△33.0%
	수입금액(천US\$)	1,000	441	△55.9%	101	△77.1%	191	89.0%
	평균수입가격(US\$/톤)	1,000	780	△22.0%	1,585	103.2%	4,470	182.0%
	원화재 판매가격AD제외(원/KG)	1,000	790	△21.0%	1,668	111.2%	4,890	193.1%
	원화재 판매가격AD포함(원/KG)	1,000	789	△21.1%	1,667	111.3%	4,888	193.2%
UAE	수입물량(톤)	1,000	696	△30.4%	615	△11.7%	459	△25.3%
	수입금액(천US\$)	1,000	580	△42.0%	516	△11.1%	379	△26.5%
	평균수입가격(US\$/톤)	1,000	832	△16.8%	838	0.7%	824	△1.6%
	원화재 판매가격AD제외(원/KG)	1,000	842	△15.8%	885	5.1%	908	2.6%
	원화재 판매가격AD포함(원/KG)	1,000	842	△15.8%	886	5.2%	909	2.6%
합계	수입물량(톤)	1,000	909	△9.1%	840	△7.6%	917	9.2%
	수입금액(천US\$)	1,000	687	△31.3%	662	△3.7%	706	6.7%
	평균수입가격(US\$/톤)	1,000	756	△24.4%	788	4.2%	770	△2.2%
	원화재 판매가격AD제외(원/KG)	1,000	763	△23.7%	826	8.3%	843	2.0%
	원화재 판매가격AD포함(원/KG)	1,000	762	△23.8%	824	8.1%	840	2.0%
국내생산품		1,000	1,002	0.2%	1,043	4.1%	1,073	2.9%

자료: 요청인의 결산자료와 관세청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입통계자료

- ① 원화재판매가격 = 수입가격 (CIF Korea Port 기준) * 한국은행 평균환율 * (1 + 일반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통관제비용(*)

(*)통관제비용은 효성화학의 2025년 수입에 따라 발생한 비용인 [****]을 적용하였습니다.

<별첨 27> 통관제비용의 산정내역

- ② 국내생산품의 가격은 재심사요청인의 평균 국내판매가격입니다.

제심사요청물품의 수입가격 변동을 보면, 전체 평균수입가격은 2022년 kg당 [***]달러에서 2025년 [***]달러로 약 23% 하락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원화 재판매가격(덤핑방지관세 포함 기준) 역시 kg당 [***]원에서 [***]원으로 약 8.4%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심사요청물품의 국내 유통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태국산 물품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수입가격은 매년 하락하였습니다. 태국산 물품의 수입량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약 11% 증가하였으며, 이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인 2017년 수입량 [****]톤보다 약 54% 많은 수준입니다. 반면 평균수입가격은 2022년 kg당 [***]달러에서 2025년 [***]달러로 약 26% 하락하였습니다. 원화 재판매가격(덤핑방지관세 포함 기준) 역시 2022년 [****]원/kg에서 2025년 [****]원/kg으로 약 21%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태국산 물품이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면서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태국산 물품은 가격 인하를 통해 국내생산품 및 기타 수입품을 대체하며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는 국내시장 가격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생산품의 평균 판매가격은 2022년 [****]원에서 2025년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상승은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내생산자가 덤핑가격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저수익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덤핑수입과의 가격경쟁의 정도가 낮은 산업용 등 제품 중심으로 판매구조를 전환한 데 따른 제품구성(Product Mix) 변화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매구조의 조정을 통해 국내산업은 수익성을 일부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덤핑수입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자구노력의 결과일 뿐, 산업 전반의 건전한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과정에서 생산능력 및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국내시장 내 소비점유율 역시 하락하는 등 국내산업의 규모 자체가 축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국내산업의 수익성 개선은 덤핑수입 압력 하에서 불가피하게 사업구조를 재편한 결과이며, 이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해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비용을 국내산업이 부담한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2025년 태국산 물품의 원화 재판매가격은 [****]원/kg으로 국내생산품 평균 판매가격 [****]원/kg의 약 50%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저한 가격 격차는 수요자로 하여금 가격이 낮은 수입품으로 구매를 전환하도록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판매물량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즉, 태국산 저가수입은 국내산업에 명백한 가격억제(price suppression), 가격하락(price depression) 및 판매의 축소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한편 대만 및 UAE산 물품의 수입량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대만산 물품의 수입량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UAE산 물품 역시 같은 기간 [****]톤에서 [****]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실질적인 수입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만산 물품의 수입가격은 2024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PET 필름의 거래가격 범위를 현저히 상회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은 일반적인 상업판매 물량이 아니라 시험용 소량 물품 또는 특수용도 제품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합하면, 대만 및 UAE산 물품의 수입 감소는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의 직접적인 효과로 판단됩니다. 반면 태국산 물품은 현행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수입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요청국 생산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저가판매 전략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피요청국 생산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확대할 유인이 충분하며, 이는 국내시장 가격의 추가 하락, 국내생산품 판매 감소, 수익성 악화 및 설비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라. 한국의 신규 부가가치 시장에 대한 진입 노력

국내 PET 필름 산업은 산업 형성 초기부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PET 필름 산업의 후발주자로 출발하였으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라인 코팅(In-Line Coating) 생산공정 도입, 투명 증착 필름 개발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생산공정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LCD 및 LED 디스플레이 패널용 광학 PET 필름 개발과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국내산업은 모바일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Hard Coating용 필름, 이형(In-Line Coating) 필름, 터치스크린 패널용 ITO 보호필름 등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양산하여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높은 기술력과 품질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태양광(PV) 산업이 성장하였고, 국내산업 역시 이에 발맞추어 태양광용 투명 PET 필름 및 화이트 PET 필름 개발과 생산설비 확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제품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판매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전자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반도체 및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PET 필름은 MLCC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소재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품질 MLCC용 PET 필름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산업의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라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국내산업은 단순 포장용 필름 시장을 넘어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및 전자소재 분야 등 고부가가치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설비 투자, 그리고 기술혁신 노력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덤핑수입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경우 국내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연구개발 투자와 신규 설비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내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개척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시장마저 저가 덤핑수입에 의해

잠식될 경우, 국내 생산자들의 기술혁신 노력과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투자 성과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덤핑방지조치의 종료는 단순히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 문제를 넘어, 국내 산업의 기술개발 능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저해하고 국가 차원의 첨단소재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덤핑방지관세 조치의 유지가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라 할 것입니다.

마. 결론

PET 필름의 글로벌 시장은 과거 중국, 태국 등 신흥경제국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로 인해 장기간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글로벌 PET 필름 생산능력은 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시장에서는 치열한 가격 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생산능력의 절반 이상이 유휴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들은 가동률 유지와 고정비 회수를 위해 수출 확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덤핑수출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요청국인 대만, 태국 및 UAE는 주요 PET 필름 수입국인 미국과 신흥 수입시장인 인도네시아로부터 장기간 무역구제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덤핑수출이 국제적으로 문제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은 대만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연장하였고, 인도네시아 역시 태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만 및 UAE산 물품의 수입량은 현행 덤핑방지조치 이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덤핑이 소멸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로 인해 수입이 억제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대만과 UAE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초과생산능력과 수출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시장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의 공급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핵심사요청물품의 수입가격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여전히 국내생산품 가격을 상당 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산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에도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입가격

은 오히려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피요청국 생산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저가판매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피요청국이 보유한 대규모 초과생산능력과 제3국 무역구제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수출압력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결과 저가의 덤핑수입이 재발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내시장 가격의 하락, 판매량 감소, 수익성 악화 및 시장점유율 하락 등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재발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의 종료는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역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4.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종료 시 재심사요청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빙

가. 재심사요청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국내소비점유율>

(단위: 톤, 백만원, %)

구분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a=b+e)	물량		1,000	928	△7.2%	996	7.3%	959	△3.7%
	금액		1,000	885	△11.5%	918	3.7%	919	0.1%
총수입 (b=c+d)	물량		1,000	980	△2.0%	1,218	24.3%	1,267	4.0%
	금액		1,000	810	△19.0%	836	3.2%	994	18.9%
재심사대상물품(c)		물량	1,000	909	△9.1%	840	△7.6%	917	9.2%
		금액	1,000	694	△30.6%	699	0.7%	778	11.3%
	태국	물량	1,000	984	△1.6%	1,009	2.5%	1,107	9.8%
		금액	1,000	747	△25.3%	825	10.4%	899	9.0%
	대만	물량	1,000	566	△43.4%	64	△88.7%	43	△33.0%
		금액	1,000	446	△55.4%	107	△76.1%	210	97.1%
	UAE	물량	1,000	696	△30.4%	615	△11.7%	459	△25.3%
		금액	1,000	587	△41.3%	546	△7.0%	417	△23.7%
	기타국 수입 (d)	물량	1,000	1,049	4.9%	1,585	51.1%	1,606	1.3%
		금액	1,000	887	△11.3%	927	4.5%	1,138	22.8%
국내생산품 출하 (e)	물량		1,000	907	△9.3%	904	△0.3%	833	△7.9%
	금액		1,000	909	△9.1%	944	3.9%	895	△5.2%
국내 소비 점유율	재심사대상물품		***%	***%	△0.3%p	***%	△1.9%p	***%	1.6%p
	태국		***%	***%	0.7%p	***%	△0.6%p	***%	1.7%p
	대만		***%	***%	△1.0%p	***%	△1.3%p	***%	△0.1%p
	UAE		***%	***%	0.0%p	***%	0.0%p	***%	0.0%p
	기타국수입		***%	***%	1.9%p	***%	6.8%p	***%	1.2%p
	국내생산품출하		***%	***%	△1.6%p	***%	△4.9%p	***%	△2.8%p

자료: 요청인의 결산자료, 관세청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단,

[*****
*****]

*****]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PET 필름 시장의 총소비량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수요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국내 수요 자체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재심사요청물품의 수입은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국산 물품의 수입량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비점유율 역시 [***]%에서 [***]%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태국산 물품의 수입량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인 2017년 수입량 [*****]톤보다 약 54% 증가한 수준입니다.

반면 대만산 및 UAE산 물품의 수입량은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태국산 물품 역시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시장은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생산품의 국내출하량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약 16.7% 감소하였으며, 국내시장점유율 역시 [****] 수준에서 [****]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소비량 감소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단순한 수요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특히 태국산 물품은 국내생산품 가격의 약 50% 수준에 불과한 저가로 판매되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생산자는 판매물량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에 직면하였고, 출하량 감소와 시장점유율 하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국내출하량과 수출량 역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조사대상기간 동안 재심사요청물품, 특히 태국산 물품의 수입 증가는 국내생산품의 판매량 감소와 시장점유율 하락을 초래하였으며, 국내생산자의 생산 및 출하 감소, 설비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재심사요청물품의 수입은 국내산업의 판매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재심사요청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1) 재심사요청물품이 국내생산품에 비해 저가판매 여부

< 재심사요청물품의 저가판매 >

(단위:원/KG)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요청물품 재판매가격(a)	1,000	762	△23.8%	823	8.1%	840	2.0%
- 태국	1,000	762	△23.8%	820	7.6%	814	△0.7%
- 대만	1,000	789	△21.1%	1,668	111.3%	4,890	193.2%
- UAE	1,000	842	△15.8%	885	5.1%	908	2.6%
○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	1,000	845	△15.5%	585	△30.9%	709	21.2%
○국내생산품판매가격(b)	1,000	1,002	0.2%	1,044	4.1%	1,074	2.9%
○차이(c=a-b)	1,000	1,498	49.8%	1,499	0.1%	1,557	3.9%
- 태국	1,000	1,478	47.8%	1,487	0.6%	1,590	6.9%
- 대만	1,000	1,516	51.6%	-461	△130.4%	-8,126	1663.1%
- UAE	1,000	1,438	43.8%	1,475	2.6%	1,525	3.4%
- 기타수입국	1,000	2,839	183.9%	6,418	126.1%	5,353	△16.6%

자료: 요청인의 결산자료와 관세청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입통계자료

- ① 원화재판매가격 = 수입가격 (CIF Korea Port 기준) * 한국은행 평균환율 * (1 + 일반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통관제비용(*)

(*)통관제비용은 효성화학의 2025년 수입에 따라 발생한 비용인 [*****]을 적용하였습니다.

<별첨 27> 통관제비용의 산정내역

- ② 국내생산품의 가격은 재심사요청인의 평균 국내판매가격입니다.

덤핑방지관세가 포함된 재심사요청물품의 평균 재판매가격은 대만산 물품의 최근 수입 가격을 제외할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사대상기간 전반에 걸쳐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하회하였습니다. 특히 태국산 물품의 경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매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의 약 5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한 가격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UAE산 물품 역시 대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내생산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대만산 물품의 경우 2024년 이후 수입량이 극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평균 수입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상업판매 물량이 아닌 시험용 또는 특수용도 물품의 수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므로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심사요청물품은 현행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생산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생산품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판매량 감소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재심사요청물품의 저가판매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역시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재심사요청서 제Ⅲ장 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지속에 관한 증빙」 중 「(2) 가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심사요청물품의 국내생산품 가격 하락 초래 여부

< 수입가격과 국내생산자 제조원가의 비교>

(단위: 원/KG, USD/KG)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단위당제조원가(원화)	1,000	1,021	2.1%	1,003	△1.7%	1,022	1.9%
단위당제조원가(USD/KG)	1,000	1,010	1.0%	950	△5.9%	928	△2.3%
평균수입가격(USD/KG)	1,000	756	△24.4%	788	4.2%	770	△2.2%
평균환율	1,292	1,305	1.0%	1,364	4.5%	1,422	4.3%

재심사요청물품의 수입가격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kg당 [*****] 달러 수준으로 형성된 반면, 국내생산자의 단위당 제조원가(달러 환산)는 같은 기간 kg당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상물품은 전 기간에 걸쳐 국내생산자의 제조원가를 상당 폭 하회하는 가격 수준으로 국내시장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2025년 기준 대상물품의 평균 수입가격은 [****]달러로, 국내생산자의 단위당 제

조원가 [***] 달러 대비 약 44%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내생산자가 정상적인 원가 구조를 반영한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저가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국내시장에 유입될 경우, 국내생산자는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억제하거나 기존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물품의 저가 수입은 국내생산품의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 억제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3) 재심사요청물품의 국내생산품 가격인상 억제 여부

< 국내생산품의 실제판매가격과 적정판매가격 비교 >

(단위: 원/KG)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생산품적정판매가격(a)	1,000	966	△3.4%	946	△2.2%	904	△4.4%
-제조원가	1,000	1,021	2.1%	1,003	△1.7%	1,022	1.9%
-판매관리비	1,000	831	△16.9%	792	△4.6%	447	△43.6%
국내생산품판매가격(b)	1,000	1,002	0.2%	1,044	4.1%	1,074	2.9%
차액(a-b)	1,000	779	△22.1%	436	△44.1%	22	△94.9%

자료:

- ① 국내생산품의 적정판매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 A.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당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1-적정 영업이익률)
 - B. 적정 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기업경영분석의 각 년도별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의 영업이익률을 이용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의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5.42% 및 2023년 3.23%, 2024년 3.2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② 국내생산품의 가격은 재심사요청인의 평균 국내판매가격입니다.

<별첨 28> 한국은행의 업종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국내생산품의 실제 판매가격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적정 판매가격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은 적정 판매가격보다 2022년 kg당 [***]원, 2023년 [***]원, 2024년 [***]원, 2025년 [***]원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국내생산자가 정상적

인 원가와 적정 이윤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국내생산자의 수익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국내산업은 대상기간 중 상당 기간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 달성한 영업이익률 역시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즉,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입니다.

다만,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는 재심사요청물품의 국내 유통가격을 일정 부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국내생산자의 수익성 개선에 일부 기여하였습니다. 실제로 적정 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간의 차이는 2022년 [***]원에서 2025년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기간 종료 시점에도 실제 판매가격은 여전히 적정 판매가격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생산자가 아직도 충분한 원가 보상과 정상적인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재심사요청물품의 저가 판매가 여전히 국내생산품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 재심사요청물품 수입으로 인한 수입상실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억제로 인한 수입상실>

(단위: 톤, 백만원, 원/KG)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적정판매가격 (a)	1,000	966	△3.4%	946	△2.2%	904	△4.4%
실제판매가격 (b)	1,000	1,002	0.2%	1,044	4.1%	1,074	2.9%
단위당 수입상실 (c=a-b)	1,000	779	△22.1%	436	△44.1%	22	△94.9%
국내판매수량 (d)	1,000	907	△9.3%	905	△0.3%	833	△7.9%
수입상실 (e=c*d)	1,000	707	△29.3%	394	△44.2%	19	△95.3%

자료:

- ① 국내생산품의 적정판매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 A.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당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1-적정 영업이익률)
 - B. 적정 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기업경영분석의 각 년도별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의 영업이익률을 이용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의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5.42% 및 2023년 3.23%, 2024년 3.2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② 국내생산품의 가격은 재심사요청인의 평균 국내판매가격입니다

요청인의 가격효과에 따른 수입상실액은 2022년 [*****]백만원에서 2025년 [*****]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덤핑방지관세 조치의 효과로 재심사요청물품의 국내 유통가격이 일부 상승하고, 국내생산자의 판매가격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격효과에 따른 수입상실은 대상기간 종료 시점에도 여전히 [*****]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내생산자가 생산 및 출하 감소, 소비점유율 하락 등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판매가격을 인상하였음에도, 실제 판매가격이 여전히 적정 판매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국내산업은 판매량 감소라는 희생을 통해서만 제한적인 가격 회복을 달성하였을 뿐, 정상적인 원가 회수와 적정 이윤 확보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상실로 인한 수입상실〉

(단위: 톤, 백만원, 원/KG)

구분 \ 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적정판매량(a)	1,000	991	△0.9%	955	△3.6%	860	△9.9%
실제내수판매량(b)	1,000	907	△9.3%	905	△0.3%	833	△7.9%
판매상실물량(c=a-b)	1,000	1,204	20.4%	1,083	△10.0%	929	△14.3%
적정판매단가(d)	1,000	966	△3.4%	946	△2.2%	904	△4.4%
수입상실(e=c*d)	1,000	1,164	16.4%	1,024	△12.0%	840	△18.0%

자료: 국내생산자의 내부자료, 적정판매량은 국내생산자의 평균 가동률인 [***]%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요청인의 적정판매량은 2022년 [*****]톤에서 2025년 [*****]톤으로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실제 내수판매량도 [*****]톤에서 [*****]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상실물량은 2022년 [*****]톤, 2023년 [*****]톤, 2024년 [*****]톤, 2025년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적정판매량의 감소는 국내생산자의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능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판매상실물량에 적정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입상실액은 2022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2024년 [*****]백만원, 2025년 [*****]백만원으로 나타

났습니다. 비록 2025년 수입상실액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약 [*****]억원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 재심사요청물품 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등에 미친 영향

(1) 재심사요청물품 이외의 수입이 국내생산자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국 수입물량의 대부분은 중국산 PET 필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PET 필름 역시 국내생산품 및 재심사요청물품과 동일한 국내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므로 국내산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산 PET 필름은 이미 장기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23. 2. 23 중국산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종료재심사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의결함과 동시에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36.98%, 인도산 물품에 대해서는 34.9%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023. 5. 8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산 PET 필름의 수입은 202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국내생산자는 중간재심사를 요청하였고,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5. 11. 20. 상향된 덤핑방지관세율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 2. 27부터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산 물품의 저가 수입이 지속되었으며,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우려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국내산업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경험한 생산량 감소,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및 수익성 악화에는 중국산 물품의 영향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국산 물품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재심사요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심사요청물품과 중국산 물품은 모두 국내시장에서 국내생산품과 경쟁하면서 가격 하락 및 가격 인상 억제 효과를 유발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산업의 피해를 심화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중국산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이 2026년 2월부터 상향됨에 따라 향후 중국산 물품의 수입 경쟁력이 일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치까지 종료된다면, 중국산 물품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와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재심사요청물품의 수입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다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수요감소 또는 소비형태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그로 인해 국내생산자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외국생산자 및 국내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이 있었다면 그 내용 및 이들 간의 경쟁이 국내생산자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술개발로 인해 국내생산자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타 요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별첨

별첨 1	대리인 선임장 사본
별첨 2	재심사 요청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별첨 3	피요청인 주소 및 연락처
별첨 4	2018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령 제680호,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첨 4	2021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령 제877호,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첨 6	관세청-재심사요청물품 정의, 분류 및 관세율
별첨 7	주요 수입자 리스트
별첨 8	주요 수요자의 리스트
별첨 9	국내생산자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요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서
별첨 10	관세청 무역통계자료
별첨 1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입통관자료
별첨 12	한국은행 환율통계자료 (원/ US\$)
별첨 13	재심사 요청인이 해외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 관계가 없다는 서약서
별첨 14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의 Trade Map의 태국 수출 현황
별첨 15	ICIS의 TPA 및 MEG 공시가격
별첨 16	PET Chip의 가공비율 산정내역
별첨 17	노무비율 및 제조경비 비율의 산정
별첨 18	태국, 한국의 World Development Data
별첨 19	태국의 판매비와관리비, 이익률 등의 산정
별첨 20	태국의 해상운송료 산정내역
별첨 21	미국, 인도네시아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문
별첨 22	미국ITC의 UAE 무역구제조치 연장 판정문(Sunset Review) 2026. 2. 10
별첨 23	미국ITC의 대만무역구제조치 연장 판정문(Sunset Review) 2026. 2. 12
별첨 24	미국상무성의 대만 재심 판정문(Administrative review) 2026. 4. 13
별첨 25	미국상무성의 UAE 재심 판정문(Administrative review) 2021. 2. 2
별첨 26	인도네시아의 태국 무역구제조치 연장 판정문(Sunset Review) 2026. 4. 1
별첨 27	통관제비용의 산정내역
별첨 28	한국은행의 업종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별첨 29	2025 Global BOPET film Investment Horizon Outlook by Wood Mackenzie

비밀취급요청 목록 및 사유

※ 비밀로 취급해야 할 자료<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① 제조원가, ②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③ 거래선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임

비밀취급 요청 정보	페이지	법적 근거	비밀취급 사유
글로벌 시장정보	1	④	글로벌 시장정보는 전문조사기업에서 조사한 자료로서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피요청국의 산업 현황 정보	1,16,17,19,20.2 8,29,49,50,51,5 2,53	④	피요청국의 생산현황 정보는 전문조사기업에서 조사한 자료로서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현황	1,49,54	④	우리나라의 생산능력 정보는 전문조사기업에서 조사한 자료로서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재심사요청물품 의 수입현황	15.18,19,27,28, 47,48,60	④	분석된 수출입자료로서 가격 및 물량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유출시 당사자에게 사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CIS 정보	23	④	공개되지 않는 유료정보로서, 계약당사자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주요수입자 및 수요자 정보	12	⑤	수입자 및 수요자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수입 및 수요의 사실 등이 공개 될 경우 당사자에 피해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 및 내수 판매량	12	②	공시되지 않는 기업의 부문매출 및 생산에 대한 정보공개는 회사의 경영에서 많은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본 정보를 공개한다면 해당회사의 경영방식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내수급상황	13	②	공시되지 않는 기업의 매출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공개될 경우 회사의 경영에서 많은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본 정보를 공개한다면 해당회사의 경영전략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상운임 및 보 험료	27	②	공시되지 않는 기업의 관계사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공개될 경우 회사의 경영에서 많은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본 정보를 공개한다면 해당회사의 경영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비밀취급 요청 정보	페이지	법적 근거	비밀취급 사유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내소비현황	33,34,35,62,63	②,④	본 자료는 매출수량 및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이며,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 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가격	35,36,58,59,58,66,67,68,69,70,71	①,②,④	가격정보는 국내생산자 또는 해외수출자의 이익창출의 기본 정보로서, 공개 시에는 산업참가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생산현황	2,37	①,②	생산현황은 회사의 이익창출의 기본 자료이며, 미공시자료입니다.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판매현황	38,	②	판매현황은 회사의 이익창출의 기본 자료이며, 미공시자료입니다.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재고현황	39,40	②	재고현황은 회사의 이익창출의 기본 자료이며, 미공시자료입니다.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손익	40,41,42	②	부문손익현황은 회사의 이익창출의 기본 자료이며, 미공시자료입니다.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제조원가	24,25,43	①	제조원가는 회사의 이익창출의 기본 자료이며, 미공시자료입니다.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설비투자현황	44	②	설비투자현황은 국내산업의 생산구조를 포함한 정보로서,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의 가격	45	②	원자재의 가격은 제조원가의 일부로서 미 공시자료입니다.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37호

도레이첨단소재(주), 마이크로웍스(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이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6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도레이첨단소재(주), 마이크로웍스(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나. 요청일자 : 2026년 6월 19일

다. 요청대상물품

-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필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877호(2021.12.24.)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신콩 (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에이제이피 (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
- 폴리플렉스 (Polyplex(Thailand) Public Limited)
- 플렉스 (Flex Middle East FZE)
- 제이비에프 (JBF RAK LCC)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6년 8월 26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세종시 도움6로 42 (전화) 044-215-4463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6,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3867, (FAX) 044-203-481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Following the initiation, the next steps are dispatch of questionnaires, analysis of the submitted questionnaire response, supplementary questionnaire and response (if any), public hearing, on-the-spot verification, disclosure meeting and final determination.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stress that only Korean will be spoken and written throughout the procedures with few exceptions.

The suppliers specified in the enclosed list has been selected for determining the individual dumping margins. Whereas the dumping margin of the selected suppliers is to be computed individually, the KTC normally accepts the voluntary responses of non-selected suppliers unless an individual examination would be considered as unreasonable and overly burdensome to the KTC, or prevent the timely completion of the investigation under Article 6.10.2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To this end, suppliers which desire to enter voluntarily into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obtain an individual dumping margin are required to express their such intention by submitting an enclosed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to the KTC no later than September 17, 2026. The KTC will notify whether to accept the application after consideration of relevant data and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the submitted application. Accordingly, an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should be immediately available to any suppliers which desire to enter into the investigation process. We cordially request your assistance so that they can have an opportunity to defend their interests in the course of this investigation.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Ms. An, Chae-rin (Tel : +82-44-203-3867, email : aquarin@korea.kr), Deputy Director, Dumping and Circumvention Investigation Divis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KOREA TRADE COMMISSION

Sincer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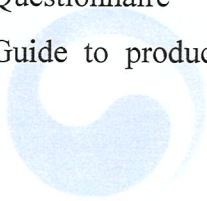
Young-Yoon Kim

Director

Dumping and Circumvention Investigation Division

Enclosures:

- (1) List of selected suppliers under review
- (2)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 (3) Questionnaire
- (4) Guide to product scop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駐韓國代表處經濟組 函

地址：(03186)首爾市鍾路區世宗大路149
號光化門大廈6樓
承辦人：邱玉錦
聯絡電話：(82-2)6329-6052
電子郵件：yjchiou@sa.moea.gov.tw

受文者：經濟部國際貿易署

發文日期：中華民國115年8月31日
發文字號：韓經字第1150831021號
速別：普通件
密等及解密條件或保密期限：

附件：如文 (62a03a_韓經字第1150831021號-1.pdf、62a03a_韓經字第1150831021號-2.pdf、62a03a_韓經字第1150831021號-3.pdf、62a03a_韓經字第1150831021號-4.pdf、62a03a_韓經字第1150831021號-5.pdf、62a03a_韓經字第1150831021號-6.pdf、62a03a_韓經字第1150831021號-8.pdf、62a03a_韓經字第1150831021號-9.pdf、62a03a_韓經字第1150831021號-7.xlsx)

主旨：有關韓國決定對我國產製「聚對苯二甲酸乙二醇酯薄膜」
(PET Film)展開反傾銷落日複查事，謹報請鑒察。

說明：

- 一、依據韓國產業通商部貿易調查委員會(KTC)本(2026)年8月26日致本處英文信函辦理(紙本公函於本年8月31日寄達本處)。相關文號：本組本年8月26日韓經字第1150826041號函諒蒙鈞察。
- 二、來函略以，KTC依據韓國財政經濟部本年8月26日公告，將對臺灣、泰國及阿拉伯聯合大公國產製「聚對苯二甲酸乙二醇酯薄膜」(PET Film)展開為期6個月之反傾銷落日複查(視情可延長4個月)。我國指定接受落日複查對象供應商為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三、KTC表示，複查程序包括請接受調查供應商填寫問卷、分析廠商填復問卷、舉行公聽會、實地訪查、舉行利害關係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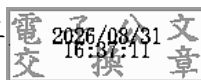
會議及最終認定等，所有過程均以韓文進行。相關資料提交資訊如次：

- (一)提交參與反傾銷調查申請(接受複審對象供應商及其他自願參與調查供應商)截止日期：本年9月17日。
- (二)提交複審對象貨品分類書面意見截止日期：本年9月28日。
- (三)提交反傾銷調查問卷截止日期：2026年10月8日。
- (四)所有資料須於韓國時間18:00前經由下列電子郵件寄送：
本案KTC承辦人：Ms. An, Chae-rin(Tel:+82-44-203-3867, Email: aquarin@korea.kr)。

四、檢陳韓國KTC英文信函及相關附件各1份如附件，敬請轉知我相關公會及廠商因應。

正本：經濟部國際貿易署

副本：經濟部國際貿易署雙邊貿易一組



裝

訂

線



< 재심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 >

본 안내서는 질의서 Section C-1(재심사대상물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재심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에 대하여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1-1. 재심사대상물품의 범위

재심사대상물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 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코팅된 물품의 경우 그 코팅 두께의 합이 $0.25\mu\text{m}$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및 유채색 물품은 제외됩니다.

재심사대상물품이 분류되는 관세분류번호(Harmonized System of Korea: HSK)는 3920.62.0000, 3920.69.0000입니다. 관세분류번호는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재심사대상물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C-1-2. CCN 기준

CCN은 반덤핑조사 목적으로 재심사대상물품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질의서 상에서 언급되는 CCN과 관련하여 아래의 코딩 체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코딩 체계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에서 영업 및 회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코딩 체계에 관하여 함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특성 1 : 등급

물품의 등급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P = Ordinary Prime

N = Non-Prime Merchandise

물품 특성 2 : 수축성

물품의 수축성에 따른 사양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01 = General

02 = Shrinkable

물품 특성 3 : 사양

물품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사양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흐림도(Haze)는 ASTM D 1003에 따라 측정한 값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01 = $0 \leq \text{흐림도(HAZE)} < 1.2$

02 = $1.2 \leq \text{흐림도(HAZE)} < 12$

03 = $12 \leq \text{흐림도(HAZE)} < 65$

04 = $65 \leq \text{흐림도(HAZE)}$

05 = Milky White

06+ = 기타

기타를 선택한 경우, 실제 물품의 거래에 사용된 사양을 별도로 명기하고, 해당 사양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또한,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비용 등의 측면에서 상기 열거된 사양(01~05) 중 가장 유사한 것을 추가 선택하고 관련 내용을 서술하십시오.

물품 특성 4 : 두께

물품의 두께를 마이크론(μm) 단위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010 =	두께 < 20
020 =	20 ≤ 두께 < 40
040 =	40 ≤ 두께 < 60
060 =	60 ≤ 두께 < 80
080 =	80 ≤ 두께 < 100
100 =	100 ≤ 두께 < 120
120 =	120 ≤ 두께 < 140
140 =	140 ≤ 두께 < 160
160 =	160 ≤ 두께 < 180
180 =	180 ≤ 두께 < 200
200 =	200 ≤ 두께 < 220
220 =	220 ≤ 두께 < 240
240 =	240 ≤ 두께 < 260
260 =	260 ≤ 두께 < 280
280 =	280 ≤ 두께 < 300
300 =	300 ≤ 두께

물품 특성 5 : 표면처리

물품의 표면처리 방법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01 = 표면처리 없음
- 02 = 단면 접착처리 (adhesive)
- 03 = 단면 이형처리 (release)
- 04 = 단면 대전방지처리 (antistatic)
- 05 = 양면 접착처리
- 06 = 단면 접착처리, 다른 단면 이형처리
- 07 = 단면 접착처리, 다른 단면 대전방지처리
- 08 = 양면 이형처리
- 09 = 단면 이형처리, 다른 단면 대전방지처리
- 10 = 양면 대전방지처리
- 11+ = 기타

기타를 선택한 경우, 실제 표면처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또한,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비용 등의 측면에서 상기 열거된 표면처리 방법(01~10) 중 가장 유사한 방법을 추가 선택하고 관련 내용을 서술하십시오.

물품 특성 6 : 형태

물품의 형태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S = 시트(sheet)

R = 롤(roll)

CCN 구성 예

단면 접착처리된 두께 12 μ m의 일반(비수축성) PET 필름으로, 롤 형태로 출고되며 사양은 흐림도가 10이며 Prime 등급인 것 → 'P010201002R'로 표기

순번	1	2	3	4	5	6
물품 특성 구분	등급	수축성	사양	두께	표면처리	형태
	Prime	General	Haze=10	20 μ m 미만 (12 μ m)	단면 접착처리	롤
CCN	P	01	02	010	02	R

한국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

반덤핑질의서

(구제 23-2026-7호)

재심사대상물품	PET 필름 (Polyethylene Terephthalate)
공급국/관세영역	대만, 태국, UAE
재심사대상기간	2025. 1. 1. ~ 2025. 12. 31.
답변서 제출기한	2026. 10. 8.(목)
담당 조사관	안채린 (An, Chae-Rin)
－ 전 화	82-44-203-3867
－ 이메일	aquarin@korea.kr
답변서 제출처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
홈페이지	http://www.ktc.go.kr

목 차

Section A. 작성지침	1
A-1. 답변서 제출요령	2
A-2. 답변서 준비요령	3
A-3. 답변자 유형별 제출자료 요약	5
Section B. 일반정보	6
B-1. 회사명 및 연락처	6
B-2. 법적대리인	6
B-3. 기업구조 및 관계자(회사)	7
B-4. 유통경로	10
B-5. 판매과정	11
B-6. 회계 및 재무 정책	12
B-7. ERP 시스템	14
B-8. 제3국을 경유한 수출	15
B-9. 비관계자(회사)에 의해 공급된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	16
Section C. 재심사대상물품	17
C-1. 재심사대상물품	17
C-2. 물품규격	18
C-3. 수출 및 내수 물품 비교	19
Section D. 경영통계	20
D-1. 판매	20
D-2. 손익계산서	21
D-3. 생산실적 및 생산능력	24
D-4. 재고	25
D-5. 관계 재판매회사에 대한 표 작성	26

Section E. 대한민국 판매(수출가격)	27
E-1. 대한민국 판매 및 조정	27
E-2. 한국수출판매의 파일 포맷(EP)	28
E-3. 한국수출판매의 파일 포맷(CEP)	41
Section F. 내수시장판매	54
F-1. 내수판매 및 조정	54
F-2. 내수판매의 파일 포맷	55
F-3. 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	66
Section G. 생산원가 및 구성가격	67
G-1. 일반설명	67
G-2. 일반사항	69
G-3. 답변형식	73
G-4. 매출원가	78
G-5. 생산원가	81
Section H. 한국 내 추가가공 또는 조립원가	82
H-1. 일반설명	82
H-2. 일반사항	83
H-3. 답변형식	85
H-4. 추가가공원가 데이터 파일	87
Section I. 전산자료 준비 안내	90
부록 I. 용어해설	91
부록 II. 자료의 정확성 입증	97
부록 III. 공개본 작성지침	98

Section A. 작성지침

본 질의서는 대한민국 관세법 및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귀사가 **제심사대상물품**을 한국에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관세법 및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반덤핑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조사 시 제공되는 비밀 정보 혹은 비밀 보장 조건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무역위는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해당 정보는 정보를 제출한 귀사의 구체적인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사가 필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 및 최종 판정에 심각한 방해할 하는 경우, 무역위는 별도로 입수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귀사가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져 귀사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사가 이 질의서의 표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어도 제출기일 10일 전에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답변기한 연장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 기한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질의서 관련 질의 혹은 의심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본 질문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1. 답변서 제출요령

아래의 사항은 답변서 작성뿐만 아니라 조사와 관련하여 귀사가 무역위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해당됩니다.

1. 답변서는 질의서 표지에 명기된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2. 답변서의 공개본 및 비공개 본 각각 3부를 제출마감시한까지 제출하십시오.
3. 공개본과 비공개본의 컴퓨터 파일(소프트카피)도 제출마감시한까지 제출하십시오.
4.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공개 청구를 제출하십시오.
5. 공개본에는 합리적인 이해¹⁾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개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6.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십시오. 자료제출자는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이 없는 경우 무역위는 답변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 양식은 부록 II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7. 귀사가 재심사대상물품을 생산하지 않고 단순히 수출 혹은 유통을 하는 경우, 관련 생산자에게 본 질의서를 전달하십시오. 귀사가 당해 제품의 생산에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이 조사에 대응할 의무가 아직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귀사는 본 질의서에 독립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수치자료는 지표나 실제 값의 10퍼센트 이내의 숫자를 사용하여 표시하면 적절히 요약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8. 귀사의 답변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입증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답변서에 제출된 정보는 서로 완벽히 연결되어야 하며, 일치해야 합니다. 제출 정보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조사에 의도적으로 비협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용 가능한 자료가 사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9. 답변서는 양면 복사된 책 형태(링 제본 아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 제약으로 인해 링 제본을 제출하는 경우 일주일 이내에 요구된 형태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A-2. 답변서 준비요령

1. 답변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번역이 어려운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본 질문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십시오.
2.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먼저 질문내용을 반복하고 그 아래에 답변내용을 작성하십시오. 도표의 경우 별도로 제공하는 엑셀파일²⁾에 작성하고, 필요시 시트를 추가하십시오.
3. 전산자료 형식으로 제출되는 정보는 Section I의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4. 질의서의 Section E와 F에서 요구한 조정사항은 판매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보고하고, 특정판매에 국한하여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조정항목은 적절한 배분방식(예: 평균)을 이용하십시오.

만일 특정한 거래별로 가격조정 또는 비용을 보고하는 것이 중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면 귀사가 이에 대한 배분이 합리적으로 세분화되어

2)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조사 진행>반덤핑 조사건명>질의서/답변서(파일명: 답변서 작성양식(엑셀도표)) 참조

- (예컨대 고객별, 생산별 그리고/또는 월별 등) 산정되었다는 것과 불합리한 왜곡이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역위는 배분된 비용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 귀사의 가격 조정과 비용 기재 방식 (2) 귀사의 기록을 이용하여 보다 세분화된 가격조정이나 비용을 보고할 수 없는 사유 (3) 귀사의 배분방법이 부정확성이나 왜곡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5. 특별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정금액과 그 성격을 명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역위는 그 조정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모든 비용과 수익은 그것이 발생하고 이루어진 통화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익과 비용은 귀사의 회계계정표상에서 이름과 계정 과목 또는 세부계정과목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7. 귀사의 서술답변, 계산내역서, 표에서 사용된 모든 계량단위, 통화 및 환산요소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8. 답변내용의 원천자료가 평상시는 어떤 형태로 분류되고 유지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귀사의 답변서 부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동 정보는 무역위가 실사를 준비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9. 질의서는 귀사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회사)도 (부록 I 참조) 이번 조사의 당사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심사대상국가에 위치한 관계자(회사)가 재심사대상물품의 자국 혹은 한국 판매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생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내의 비관계자(회사)에게 판매되기 전 관계자(회사)에 의해 가치 혹은 물리적 특성(추가가공)이 바뀌는 경우, 관계자(회사)는 Section H를 작성해야 합니다.

10. 귀사는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을 포함한 모든 판매자료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사는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11. 보고내용에 대하여는 그 목차와 첨부물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첨부물의 제목과 첨부물별 일련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12. 각 질문내용별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만일 해당하지 않는 질문의 경우 “해당 없음”을 표기하십시오. 그렇지 아닐 경우 당해 특정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귀사에 불리한 추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3. 답변자 유형별 제출자료 요약

아래 표는 본 질의서에 포함된 주요 표를 수출 형태 및 답변자 유형에 따라 구별한 것입니다. 이는 답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본 질문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내에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십시오.

1. 대한민국 판매자료 파일

수출 형태	판매데이터			
	EPSALE	CEPSALE	EXFUCOM	EXFUCOP
EP	0			
CEP	0	0		
한국 내 추가가공	0	0	0	0

2. 내수 판매자료 파일

답변자 유형	판매데이터
	DMSALE
답변자	0
답변자의 제품을 재판매하는 관계자	0

Section B. 일반정보

B-1. 회사명 및 연락처

귀사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기입하고 이와 관련된 담당자의 성명 및 회사 내에서의 역할을 기입하십시오.

- 회사명(영문 및 한글) :
- 주 소(우편번호 포함) :
- 전 화 :
- 이메일 :
- 웹사이트 :
- 담당자 직위(회사 내 역할 포함) 및 성명 :

B-2. 법적대리인

본 조사를 위하여 귀사가 법적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대리인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 법적대리기관명 :
- 법적대리인명 :
- 주 소 :
- 전 화 :
- 이메일 :

B-3. 기업구조 및 관계자(회사)

회사의 경영, 법적구조 및 관계자(회사)에 대한 질문의 목적은 무역위가 재심사대상물품의 개발, 생산,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귀사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역위는 귀사뿐만 아니라 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자(회사)에 대한 정보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가격, 판매 및 일반관리비나 생산원가를 산정하는데 관계자(회사)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나열된 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회사는 물론, 개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귀사뿐만 아니라 본 재심사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회사)도 심사의 당사자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회사들은 A-1.7에서 A-2.9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재심사대상물품의 개발, 생산,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귀사의 조직구조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구조에 대한 설명자료와 회사조직도(각 부서별 인원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귀사 및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재심사대상물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공장, 판매사무소, 연구개발 시설 및 관리사무소의 목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시설의 주소 및 각각의 간략한 목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모든 공장과 판매사무소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재심사대상물품의 생산 또는 상업화에 관련된 모든 국가에 있는 관계회사 또는 모든 자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 및 이메일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들 관계자(회사)의 활동을 명시하여 주십시오. 모든 경우에 귀사와 관계의 성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귀사가 이들 회사와 임원 또는 고위 관리자를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이들 회사와 상호관계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당사자 간의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러한 관계자(회사) 등이 매우 많은 경우 본 질문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래에 나열된 기준에 해당하는 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자회사 및 모회사를 포함한 귀사의 법적구조와 연계조직도를 제출하고 그러한 집단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관계회사는 다음에 열거된 회사를 포함하되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a.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지분을 직·간접으로 5%이상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

b. 귀사가 자회사로 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지분을 5%이상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

c. 제3자에 의해서 귀사와 함께 같이 통제를 받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 이 경우 귀사가 그와 같은 소유권이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귀사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보유한 모든 사람 또는 법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귀사가 다른 회사의 자회사라면 귀사의 모회사(들)가 의결권의 5% 이상을 보유한 다른 법인의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 귀사에 의해 통제되거나 귀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 또는 법인. 채무자, 밀접한 공급자, 합작회사 파트너, 그들의 임원과 관리자가 귀사의 임원과 관리자를 겸하는 경우 그 회사, 귀사와 영업상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회사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사를 통제하거나 또는 귀사에 의하여 통제되는 앞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또는 회사를 포함하십시오. 통제는 사람 또는 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지시나 제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5. 위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언급된 사람 중 직접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였을 경우에 그 소유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총 투입을 포함하여) 재심사대상물품의 개발, 생산, 판매에 있어서의 귀사가 언급한 각 사람의 이름과 역할 및 각 사람과 귀사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6. 위에 언급한 관계자(회사)중 (총 투입을 포함하여) 재심사대상물품의 개발, 생산, 판매 분야에 종사하는 자와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리스트와 관계의 성격 등을 설명하십시오.

7. 귀사, 귀사의 자회사 및 모회사의 10대 지분소유자의 명단과 각자의 지분을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5% 이상 소유한 자의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만일 위 자료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완성시킬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8. 재심사대상물품과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귀사가 지불한 경우”에 그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B-4. 유통경로

귀사가 제시한 유통경로와 판매과정에 대한 자료는 동일한 거래 단계에 있는 내수거래와 수출거래를 비교하거나 또는 동일한 단계의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적절한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한 거래단계에서의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1. 한국수출과 내수시장의 판매경로에 대한 설명과 흐름도를 각각 제시하십시오.
2. 유통과정의 고객유형(예, 대리점, 도매상, 소매상, 최종소비자 등) 명단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구성수출가격의 경우에는 한국의 수입자와 비관계자(회사)의 유형(예, 대리점, 도매상, 소매상, 최종소비자 등)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3. 한국시장과 내수시장에서 행하여진 판매활동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판매활동에는 채고 유지, 보수, 기술 자문, 보증 서비스, 배송, 광고 및 기타 판매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활동 및 용역 중 귀사와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수행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표시하고 각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내수 및 수출거래와 관련된 비용은 공제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Section E와 F의 비용항목으로 보고하십시오.
4. 내수시장과 한국수출시장에서 귀사가 거래처에 따라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그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B-5. 판매과정

1. 상기 B-4에 설명된 유통경로별 판매과정을 설명하십시오.
2. 도매상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판매처나 판매시장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이 경우에 도매상에게 판매지역이나 매출량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밝히십시오.
3. 한국수출과 내수판매와 관련된 계약내용(예, 장기구매계약, 단기구매계약, 구매주문, 주문확인과정 등)을 설명하십시오. 재심사대상기간 동안의 한국수출과 내수거래에 대하여 계약유형별로 각 1건의 거래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계약서등 판매과정에서 작성되는 모든 관련서류의 사본(구매주문서, 내부 또는 외부작성 주문확인서, 송장, 선적 및 수출서류)과 해당 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정 항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십시오.
4. 배송일자 외에 계약일 이후 판매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조건의 변동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5. 상기 B-5.3의 계약유형별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 내수시장과 한국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십시오.
6. 내수시장 및 한국수출시장에서 재심사대상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목록을 제시하고 각각의 가격목록이 어떤 판매유형에 적용되는지를 제시하십시오. 만약 할인이나 리베이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리스트도 제시하십시오.
7. 상기 B-4에서 귀사가 제시한 각각의 유통경로별로 대금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십시오.
8. 내수시장과 한국수출시장에서의 판매 흐름, 즉 주문 수령부터 매출액의 입금까지의 과정과 단계별 평균 소요 기일을 표시한 표를 제공하십시오.

B-6. 회계 및 재무 정책

귀사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회계 및 재무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무역위에 제시하십시오.

1. 귀사의 회계기간을 포함하여, 회계 및 재무보고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2. 귀사의 재무, 회계 원칙이 대상물품 생산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AAP)에 따르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최근 2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세무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감사결과 적정의견 이외의 의견을 받은 경우, 그러한 의견이 덤핑 마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3. 귀사의 회계 장부와 장부보존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를 제공하십시오. 또한 흐름도에 모든 회계 보조부와 회계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문서(원재료 구매, 재고, 판매 및 매출채권 장부 등)를 표시하고, 개별 데이터가 재무제표에 요약 표시되는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4. 최근 2개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다음의 재무 문서와 월별 또는 분기별 재무제표를 제출하십시오.
 - a. 계정과목표(세부단위 기재)
 - b. 연결 및 비연결 감사보고서(감사의견 및 주석 포함)
 - c. 재심사대상물품의 내부 손익 분석 보고서 및 내부 재무 보고서.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재심사대상물품의 정의와 가장 근접한 생산 라인에 해당하는 보고서

- d. 재심사대상물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회사)의 재무제표 및 관련 문서
 - e. 귀사가 위치한 국가에 제출한 기타 재무보고서
 - f. 시산표
5. 다음 사항과 관련된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 a. 원재료, 재공품, 제품의 재고 및 매출원가에 대한 평가방법
 - b. 고정자산의 평가, 재평가, 감가상각 및 유휴자산의 처리
 - c. 고정자산의 종류별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또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최근 2년 이내에 변경된 적이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 d.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을 포함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 e. 연말에 수정분개를 요하는 손익관련 계정과목
 - f. 외화환산 및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처리
 - g. 재고자산 또는 고정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일반관리비 및 이자비용 등의 자본화 방침
 - h. 공장의 폐쇄, 운휴 및 보수 등과 관련된 사항, 특히 재심사대상기간 중에 공장의 일부를 보수, 폐쇄 또는 운휴시킨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것이 귀사의 비용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십시오.
 - i. 귀사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스크랩
 - j. 인플레이션이 재무제표 정보에 미친 영향

B-7. ERP 시스템

귀사가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다음의 정보를 무역위에 제시하십시오.

1. 귀사의 매출과 비용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중심으로 ERP 시스템의 개요를 설명하십시오. 판매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시스템을 무엇인지 설명하고 기능을 서술하십시오.
2. ERP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하고, 서버의 수와 위치를 기술하십시오.
3. 매출 및 비용에 대한 원천문서가 회계 전표, 보조 원장, 총계정 원장을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4. 일반적인 영업환경에서 생성되는 ERP 상의 재심사대상물품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예를 들어, 재고, 판매, 출하) 표본을 제공하십시오.

B-8. 제3국을 경유한 수출

한국수출이 제3국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심사대상물품의 한국수출과 관련된 유통구조를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한국수출과 관련된 회사의 이름을 나열하고 관계자(회사) 여부를 밝히십시오. 재심사대상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물품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고,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모델과 경유국가를 나열하십시오. 이 경우에 물품의 주문부터 배달 및 대금청구까지의 과정을 흐름도로 설명하십시오.
2. 만약 경유국가에서 물품이 추가 가공 또는 조립되거나 어떤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3. 경유국을 통하여 한국으로 선적된 물품이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서 조달된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수입 후 한국의 비관계자(회사)에게 인도될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원산지와 그 부품의 조립이 이루어진 장소를 밝히십시오.

B-9. 비관계자(회사)에 의해 공급된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

한국에 수출한 물품이 귀사 또는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본 질의서의 다음 부분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1. 본 질의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귀사 또는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수출한 물품을 귀사에 공급한 자의 이름, 주소, 팩스번호 등을 담당 조사관에게 알려주십시오.
2. 귀사에 물건을 공급한 자가 귀사에 재심사대상물품을 판매할 당시에 그 물품의 최종 판매처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3. 본 조사에 해당되는 공급자에게 본 질의서를 전달해 주십시오.

Section C. 재심사대상물품

C-1. 재심사대상물품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별도의 지침 문서는 대상물품의 정의와 Control Code Number(이하"CCN")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CCN의 구성방법은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 코딩 시스템에 의한 모델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2. 귀사가 CCN의 구성에 추가 또는 변경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재심사개시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원가와 판매가격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사의 제품을 제품코드(Prodcod), 규격,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CCN으로 구성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CCN 구분을 위하여 사용한 원천자료가 무엇이고, 추출된 원천자료로부터 최종 CCN으로 구분한 전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해당 샘플 증빙(ERP 화면, 송장, 회사내부자료 등)을 제출하기 바랍니다.(E 섹션 및 F 섹션의 내수 및 수출 판매자료에서 CCN을 부여한 방식과 G 섹션의 제조원가에서 CCN을 부여한 방식을 각각 모두 설명하십시오.)

C-2. 물품규격

다음의 정보는 귀사 또는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한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규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한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가능한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 아래 표의 기호를 열의 머리글로 사용하여 재심사대상물품에 관한 모든 모델에 대하여 다음의 정보를 CODE라는 리스트로 제출하십시오. 제품 코드는 가능한 자세하여야 하며 귀사의 생산라인 및 ERP 등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항목명	항목코드	항 목 설 명
1	CCN	(CCN)	제품의 통제번호
2	제품코드	(PRODCOD)	제품코드
4	제품모델	(MODEL)	송장에 기재하는 모델명 (대표 모델명이 아닌 해당되는 모든 모델명을 보고할 것)
5	제품모델-1	(MODEL-1)	홈페이지, 브로셔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모델명 내지 브랜드명 (대표 모델명이 아닌 해당되는 모든 모델명을 보고할 것)
5	매출량	(EXQTY)	한국에서의 모델별 매출량
6	매출액	(EXVAL)	한국에서의 모델별 매출액
7	매출량	(DMQTY)	내수에서의 모델별 매출량
8	매출액	(DMVAL)	내수에서의 모델별 매출액
9	매출량	(EXOTHQTY)	한국의 수출국에서의 모델별 매출량
10	매출액	(EXOTHVAL)	한국의 수출국에서의 모델별 매출액
11	제품특성	(PRODESC)	제품의 특성 설명

-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을 포함한 귀사 및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작성한 제품의 카달로그나 브로슈어를 제시하십시오.
- 무역위는 CCN을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계산할 것이나, 필요시 제품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십시오.

C-3. 수출 및 내수물품 비교

귀사가 판매하는 내수시장 물품과 수출시장 물품 중 동일한 CCN으로 분류되었으나, 시장에 따라 다른 제품코드 및 다른 모델명(브랜드명)를 가지고 있는 판매 건이 있는 경우, 아래 표를 작성 하십시오.

특히 원료, 디자인, 특징, 규격, 생산과정 및 생산설비 등에 있어서의 차이와 함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단위 :)

한국 판매 제품					내수 판매 제품					
CCN	제품 코드	모델명 (브랜드명)	수량	금액	CCN	제품 코드	모델명 (브랜드명)	수량	금액	차이

Section D. 경영통계

D-1. 판매

세금과 할인을 공제한 귀사의 비연결 기준 순매출액³⁾을 재심사대상기간과 재심사대상기간 직전 3 회계연도에 대해 아래양식으로 작성하십시오. 이 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원천 데이터 및 해당 데이터의 보관 장소를 설명하십시오. 아래 표의 사업부를 구분한 기준과 대상물품이 어느 사업부에 속하는지를 제시하십시오. 아래 표의 대상물품 매출액은 EPSALE 및 DMSALE의 매출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만일 차이가 있다면 그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파일명 : SALES

(단위 :)

구 분	[]		[]		[]		재심사대상기간	
	A(*)	U(*)	A	U	A	U	A	U
회사전체 매출액 (모든 생산품)								
- 내수판매								
- 한국수출								
- 기타국가수출								
재심사대상물품을 포함한 사업부문의 매출액								
- 내수판매								
- 한국수출								

3) 회계에 사용된 화폐단위를 계속 사용하십시오.

- 기타국가수출								
재심사대상물품의 매출액								
- 내수판매								
- 한국수출								
- 기타국가수출								
* 국가 1								
* 국가 2								
* 국가 3								
* 기타국가								
재심사대상물품의 매출수량								
- 내수판매								
- 한국수출								
- 기타국가수출 ⁴⁾								
* 국가 1 ⁵⁾								
* 국가 2								
* 국가 3								
* 기타국가								

*A : 관계자에 대한 판매

*U : 비관계자에 대한 판매

D-2. 손익계산서

귀사의 비연결 기준 손익계산서의 주요 항목을 재심사대상기간과 재심사대상기간 직전 3 회계연도에 대해 아래 양식으로 작성하십시오. 재심사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비용을 배부 방식으로 설명하십시오.

4) 기타국가 수출 = 국가 1 + 국가 2 + 국가 3 + 기타

5) 국가 1 ~ 3은 매출량(수량)의 순으로 보고하십시오.

< 모든 제품 >

(단위 :)

항 목		[]	[]	[]	POI
매출액	(1)				
반품액	(2)				
반품후 매출액	(3=1-2)				
기초재고	(4)				
당기제품제조원가/당 기구매액	(5)				
기말재고	(6)				
매출원가	(7=4+5-6)				
매출총이익	(8=3-7)				
판매및일반관리비	(9)				
영업이익	(10=8-9)				
영업외수익	(11=12+13)				
이자수익	(12)				
기타영업외수익	(13)				
영업외비용	(14=15+16)				
이자비용	(15)				
기타영업외비용	(16)				
법인세차감전순익	(17=10+11-13)				
법인세	(18)				
법인세차감후순익	(19=17+18)				

< 재심사대상물품 >

(단위 :)

항 목		[]	[]	[]	POI
매출액	(1)				
반품액	(2)				
반품후 매출액	(3=1-2)				
기초재고	(4)				
당기제품제조원가 /당기구매액	(5)				
기말재고	(6)				
매출원가	(7=4+5-6)				
매출총이익	(8=3-7)				
판매및일반관리비	(9)				
영업이익	(10=8-9)				
영업외수익	(11=12+13)				
이자수익	(12)				
기타영업외수익	(13)				
영업외비용	(14=15+16)				
이자비용	(15)				
기타영업외비용	(16)				
법인세차감전순익	(17=10+11-13)				
법인세	(18)				
법인세차감후순익	(19=17+18)				

D-3. 생산실적 및 생산능력

1. 다음 표와 같이 총 생산량과 재심사대상물품의 구매량을 제시하십시오.

(단위 :)

기 간	[]	[]	[]	재심사 대상기간	예측치
- 생산능력					
- 생 산 량					
- 가 동 률(%)					
- 재심사대상물품의 구매량 ⁶⁾					

2. 생산능력과 가동률의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따른 것인지 기술하십시오.

3. 귀사가 재심사대상물품을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관련 제조공장별로 상기 표를 작성하십시오.

4. 귀사를 비롯한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판매한 생산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원산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5. 수출국,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생산을 시작하거나 생산능력을 증가시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6. 입수 가능한 범위에서 공급국 전체의 재심사대상물품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출처를 명시하십시오.

6) 관계자(회사)나 자회사의 구매를 포함한 최종 생산품의 모든 구매량을 기록하되, 재판매하기 전에 구매물품의 사소한 변경(예, 재포장)은 최종 생산품의 구매로서 고려되지 않음.

(단위 :)

기 간	[]	[]	[]	조사대상 기간	예측치
- 생산능력					
- 생 산 량					
- 가 동 률(%)					

D-4. 재고

1. 다음 표와 같이 재고 금액과 수량을 제시하십시오.

(단위 :)

기간	제품				상품			
	모든제품 재고금액	재심사대상물품			모든상품 재고금액	재심사대상물품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2021 기초재고								
2021 기말재고								
2022 기말재고								
재심사대상기간 기초재고 (2023 기말재고)								
재심사대상기간 기말재고 (2024 기말재고)								

2. 재심사대상기간 동안의 재고자산의 수불을 요약하는 다음 표를 작성하십시오. 재심사대상물품의 재고물량 수불을 보고하여 주시고, 금액과 관련하여 원재료와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물품을 포함한 모든 재고자산의 수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 자회사 및 모든 관계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 TOT_INVEN)

<재고 금액>

(단위 :)

항목	재심사대상기간 기초재고	생산	구매	판매	타계정대체	기타 증가	기타 감소	재심사대상기간 기말재고
제품 재고								
-재심사대상물품								
-비 재심사대상물품								
구매 재고								
-재심사대상물품								
-비 재심사대상물품								
원재료								
기타재고자산								
총합								

* 필요시 칸을 추가하십시오.

<재고 수량>

(단위 :)

항목	재심사대상기간 기초재고	생산	구매	판매	타계정대체	기타 증가	기타 감소	재심사대상기간 기말재고
생산된 재심사대상물품								
구입된 재심사대상물품								
총 합								

* 필요시 칸을 추가하십시오.

D-5. 관계 재판매회사에 대한 표 작성

만약 관계 재판매회사가 내수시장에서 재심사대상물품의 재판매에 관련되어 F-3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앞에서 열거된 D-1부터 D-4까지의 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본 질의서 Section B와 Section G에서 요구되는 질문 및 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Section E. 대 한국 판매(수출가격)

이 장에서는 재심사대상물품의 한국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며, 특히 한국에 수출된 제품의 판매가격과 그 산정방법에 대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서를 수령한 수출자는 생산자와 함께 본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정매출의 재심사대상기간 내 포함여부는 상업송장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일에 대한 정의는 부록I을 참고하십시오.

E-1. 대 한국 판매 및 조정

1. 귀사의 한국수출 형태가 EP인 경우 “CEPSALE” 파일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CEP인 경우 “EPSALE”과 “CEPSALE” 파일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파일의 매출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십시오. EP와 CEP의 정의는 부록I을 참고하십시오.
2. 전체 매출액에서 “EPSALE”과 “CEPSALE” 파일에 보고된 매출액을 산출한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3. 아래에 필드별 설명에 따라 한국수출 거래에 대해 “EPSALE”과 “CEPSALE” 파일을 완성하십시오. “EPSALE”과 “CEPSALE” 파일에는 건별 판매자료와 그에 대한 조정사항을 제시하십시오. 표본 거래에 대하여 조정사항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 한 세트를 제출하십시오.
4. 조정사항 중 관계자(회사)에 의해 발생한 항목이 있는 경우 조정사항별 관련된 관계자(회사) 목록을 제공하고 정상가격 여부를 입증하십시오.
5. 한국수출과 관련된 조정사항과 연관이 있는 모든 계정을 열거하고 관련 조정사항을 표시하는 차트를 제출하십시오.

E-2. 한국수출판매의 파일 포맷(EP)

파일명 : EPSALE

필드번호 0 : 일련번호

필드명 : SN

설명 : 각 매출 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십시오. 이 번호는 타 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필드번호 1 : Control Code Number

필드명 : CCN

설명 : C-1에 따라 CCN 번호를 작성하십시오. 한국 내에서 추가 가공되는 경우 수입 당시 제품을 기준으로 CCN 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필드번호 2 : 제품코드

필드명 : PRODCOD

설명 : 회계관리 목적으로 귀사에서 부여한 제품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 : 모델명

필드명 : MODEL

설명 : 송장에 표시되는 제품모델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1 : 모델명-1

필드명 : MODEL-1

설명 : 홈페이지, 브로셔 등 대외적으로 제품을 표시하는 모델명 내지 브랜드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 : HS코드

필드명 : HSCD

설명 : 한국시장 통관 시 보고되는 HS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5 : 상업송장일자

필드명 : INVDATE

설명: 판매 건별 상업송장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6 : 판매일

필드명 : SALDATE

설명 : 상업송장일자와 다른 경우에만 보고하십시오. 판매일 보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당 조사관과 연락하십시오.

필드번호 7 : 상업송장번호

필드명 : INVNUM

설명 : 상업송장번호를 보고하십시오. 또한 송장번호의 생성체계와 번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8 : 출하일

필드명 : SHIPDATE

설명 : 공장 또는 보관창고에서 고객에게 출고된 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9 : 대금입금일

필드명 : PAYDATE

설명 : 판매대금 입금일을 보고하고 해당 입금일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원천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10 : 지급조건

필드명 : PAY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지급조건(예 : 일람지급, 30일 후 지급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경로별로 지급조건이 차이가 있다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지급조건을 고객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조기지급 할인이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면 위 지급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 신용장거래방식의 경우 10.1 L/CNUM(신용장번호)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필드번호 11 : 인도조건

필드명 : DEL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인도조건(예 : FOB, C&F, CIF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
경로별로 인도조건이 차이가 있다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2 : 고객코드

필드명 : CUSTNUM

설명 : 각 판매 건별 고객코드를 보고하고 귀사의 고객 코드, 주소,
이름이 기재된 리스트를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13 : 고객구분

필드명 : CUSCAT

설명 : 아래의 코드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십시오.

- 1 = 제조업자
- 2 = 상사
- 3 = 도매상
- 4 = 소매상
- 5 = 자가소비
- 6 - n = 기타

필드번호 14 : 유통경로

필드명 : CHANNEL

설명 : B-4에서 제시한 유통경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5 : 고객구분(관계자(회사)여부)

필드명 : CUSREL

설명 : 아래의 코드를 이용하여 관계자(회사)를 구분하십시오.

- U = 비관계자(회사)
- A = 관계자(회사)

필드번호 16 : 주문서 또는 계약 번호

필드명 : ORDNUM

설명 : 주문서 또는 계약번호를 보고하십시오. 주문번호의 생성체계와
번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 해상운송방식의 경우 16.1 B/LNUM(선하증권번호)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필드번호 17 : 제품등급

필드명 : GRA

설명 : 귀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세부 제품등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8 : 매출량

필드명 : QTY

설명 : 매출량을 보고하십시오. 각 출하기준 혹은 상업송장의 행번호
수량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수량의 단위가 달라 단위기준으로
환산이 필요한 경우, 환산된 수량은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19 : 수량단위

필드명 : QTU

설명 : 수량단위를 입력하십시오. 판매와 비용 발생시 여러 단위가 사용
되는 경우 주요 단위를 선정하여 단일한 단위기준으로 데이터를
보고하고, 별도의 필드를 추가하여 발생 단위기준의 값을 보고
하십시오.

필드번호 20 : 송장금액

필드명 : SALESAM

설명 : 최초의 고객에 대한 거래통화기준 세후 매출액을 보고하고
단위를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21 : 조기지급할인액

필드명 : EPAY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고객별 조기지급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 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2 : 수량할인액

필드명 : QTY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고객별 수량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3 : 기타할인액

필드명 : OTH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기타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추가 필드를 삽입하여 작성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4 : 순송장금액

필드명 : NETSALES

설명 : 필드 21에서 23에 보고된 금액을 매출액(필드 20)에서 차감한 순 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5 : 현지통화 순송장금액

필드명 : TURNOVER

설명 : 필드 24에 보고된 순송장금액을 귀사의 회계시스템상에 기록된 내수통화로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6 : 반품수량

필드명 : CREDQTY

설명 : 반품수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7 : 반품금액

필드명 : CREDTURN

설명 : 반품금액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8 : 반품후 수량

필드명 : NETQTY

설명 : 반품후 수량을 보고하십시오.(즉, QTY - CREDQTY)

필드번호 29 : 반품후 금액

필드명 : NETVAL

설명 : 반품후 순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즉, NETSALES - CREDTURN)

필드번호 30 : 금액조정

필드명 : BILLADJ

설명 : 송장에서 직접 차감되는 할인(필드번호 21에서 23) 및 리베이트(필드번호 31) 이외의 송장에서 차감되지 않는 금액조정 및 할인이 있는 경우,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과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금액조정의 유형이 다양한 경우 추가필드를 삽입하여 보고하고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금액을 증가시키는 조정은 양, 감액시키는 경우는 음의 부호로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1 : 리베이트

필드명 : REBAT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지 않는 판매 건별 리베이트를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리베이트 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귀사의 리베이트 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리베이트금액 산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32 : 간접세

필드명 : INDTAX

설명 : 각 판매 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세를 보고하고, 어느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설명하십시오. 각각의 세금항목에 대하여 세금의 부과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십시오. 또한 각 세금항목의 계산방법, 정산방법, 납부와 관련한 서류도 첨부하십시오.

필드번호 33 : 공장에서 물류창고까지 내륙운반비

필드명 : INLFTW

설명 : 귀사의 공장에서 창고(또는 중간 경유지)까지의 운반비금액을 보고하십시오. 공장에서 항구까지의 운반비는 필드 번호 34번에 보고하십시오. 운송형태(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운송을 위해 사용한 배송업체와 맺은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고, 배송업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여러 항목이 동일 운송 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배부한 경우 발생 단위에 근거하여 배부하고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본사 소유의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 계산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4 : 물류창고비용

필드명 : INWARE

설명 : 창고보관비용을 보고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비용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보관비용 및 고객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귀사가 운영하는 물류창고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창고의 위치를 설명하십시오. 고객을 위해 창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 리스트와 함께 제공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창고가 타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운영회사와 귀사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5 : 공장/물류창고에서 항구까지 내륙운반비

필드명 : INLFTP

설명 : 귀사가 재심사대상물품을 항구까지 운송하기 위해 발생한 운반비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운송 형태(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여러 항목이 동일 운송 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배부한 경우 발생 단위에 근거하여 배부하고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운송을 위해 사용한 배송업체와 맺은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고, 배송업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본사 소유의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 계산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6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 부대비용

필드명 : INHANDLE

설명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 부대비용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7 : 보험료

필드명 : ININSUR

설명 : 수출국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금액을 보고하고, 계산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8 : 해상운반비

필드명 : OCFREIGHT

설명 : 수출항에서 한국까지 배송을 위해 발생한 운반비를 보고하십시오.
운송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십시오.
해당 비용 계산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9 : 해상보험료

필드명 : OCINSUR

설명 : 수출국 항구에서 한국 항구까지 발생한 해상보험료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해당 비용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0 : 한국내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필드명 : KRCHARGE

설명 : 한국 내에서 발생한 핸들링,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1 : 한국내 항구에서 물류창고까지 운반비

필드명 : KINLFPW

설명 : 한국통관 후 물류창고까지 발생한 운반비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2 : 한국내 물류창고비용

필드명 : KRWARE

설명 : 창고보관비용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비용은 고객에게 별도로 청구하여 회수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필드번호 43 : 항구/물류창고에서 고객까지 운반비

필드명 : KINLFWC

설명 : 한국내 항구 또는 물류창고에서 고객까지 발생한 운반비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4 : 한국내 보험료

필드명 : KRINSUR

설명 : 한국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 금액을 보고하고,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5 : 신용비용

필드명 : CREDIT

설명 : 단기차입이자율을 사용한 신용비용을 계산하십시오. 귀사가 적용한 단기차입이자율 관련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신용비용은 개별 매출건의 입금일과 출하일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계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의 평균회전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46 : 신용기간

필드명 : CREPRD

설명 : 위 신용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일수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7 : 은행수수료

필드명 : BKCHARGE

설명 : 한국 고객으로부터 대금 회수 시 발생한 은행수수료를 보고하십시오. 은행수수료의 항목이 다양한 경우 각 항목별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은행별 수수료가 다른 경우 은행별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 필드에 보고된 비용의 계산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8 : 판매보증비용

필드명 : WARR

설명 : 판매보증비용을 보고하십시오. 배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보고하십시오. 직전 3 회계연도 동안의 연도별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판매보증비용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비용의 산출방법과 근거를 명시하십시오. 이러한 비용이

재심사대상물품의 일부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또는 여러 물품에 공통적으로 발생된 비용이라면 관련금액을 배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판매보증 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거래건별 파일에 제시된 보증비용의 계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9 : 기술지원 및 서비스비용

필드명 : AFTERSAL

설명 : 기술서비스 비용을 보고하십시오. 배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의 비용을 보고하십시오. 거래처에 제공하는 서비스, 수리, 상담 등의 서비스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50 : 수수료

필드명 : COMM

설명 : 판매와 관련하여 지불한 지급수수료의 금액과 그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여러 종류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종류별로 별도의 필드에 보고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조건과 수수료가 결정되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업체가 관계회사인지 여부를 설명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1 : 판매대행사

필드명 : SELAGEN

설명 : 판매 대행업체의 이름 또는 내부 관리코드를 보고하십시오. 여러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업체별 수수료율 및 관계자(회사) 여부를 표시한 리스트를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52 : 관세환급

필드명 : DTDRAW

설명 : 관세환급액을 보고하고, 계산방식을 보여주는 파일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3 : 관세 및 통관비용

필드명 : DTCREAR

설명 : 수입통관시 실제 부담한 관세액과 통관비용을 보고하고, 계산방식을 보여주는 파일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4 : 포장비

필드명 : PACK

설명 : 한국 수출을 위해 발생한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비에는 재료비, 인건비 및 가공비가 포함됩니다. 여러 공장에서 포장비가 발생한 경우 공장별 가중평균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 자재비, 인건비, 가공비 별 계산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포장 자재비의 경우 소요되는 자재 리스트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5 : 환율

필드명 : FXRATE

설명 : 송장금액을 회계장부 표시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을 기재하십시오. 아울러 기재된 환율의 출처와 적용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외화환산과 관련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국의 환율변동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수출과 관련된 최근 2년 동안의 외화의 공식 매도율과 매입률 자료와 중앙은행환율을 제시하십시오. 또한 비공식 환율이 있다면 그것을 기재하고 그 원천을 밝히십시오.

필드번호 56 : 과세가격

필드명 : CIFVAL

설명 : 한국 통관시 보고한 과세가격을 보고하십시오. CIF금액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방식과 증빙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7 : 수입상

필드명 : IMPORTER

설명 : 수입자를 기재하십시오.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확인 안 됨”으로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58 : 제조자

필드명 : MFR

설명 : 귀사가 제조자가 아닌 경우 제조자명을 표시하십시오. 제조자를 모르는 경우 귀사에게 재심사대상물품을 공급한 공급자를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59 : 포장유형

필드명 : PACKING TYPE

설명 : 제품이 판매되는 포장유형을 보고하십시오.

E-3. 한국수출판매의 파일 포맷(CEP)

아래에 항목설명에 따라 한국 내 최초 비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 건별로 “CEPSALE” 파일을 완성하십시오.

파일명 : CEPSALE

필드번호 0 : 일련번호

필드명 : SN

설명 : 각 매출 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십시오. 이 번호는 타 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필드번호 1 : Control Code Number

필드명 : CCN

설명 : C-1에 따라 CCN번호를 작성하십시오. 한국 내에서 추가 가공되는 경우 수입당시 제품을 기준으로 CCN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필드번호 2 : 제품코드

필드명 : PRODCOD

설명 : 회계관리 목적으로 귀사에서 부여한 제품 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 : 모델명

필드명 : MODEL

설명 : 송장에 표시되는 제품모델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1 : 모델명-1

필드명 : MODEL-1

설명 : 홈페이지, 브로셔 등 대외적으로 제품을 표시하는 모델명 내지 브랜드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 : HS코드

필드명 : HSCD

설명 : 한국시장 통관시 보고되는 HS 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5 : 상업송장일자

필드명 : INVDATE

설명 : 판매 건별 송장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6 : 판매일

필드명 : SALDATE

설명 : 송장일자와 다른 경우에만 보고하십시오. 판매일 보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당 조사관과 연락하십시오.

필드번호 7 : 상업송장번호

필드명 : INVNUM

설명 : 상업송장번호를 보고하십시오. 또한 송장번호의 생성체계와 번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8 : 출하일

필드명 : SHIPDATE

설명 : 공장 또는 보관창고에서 고객에게 출고된 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9 : 대금입금일

필드명 : PAYDATE

설명 : 판매대금 입금일을 보고하고 해당 입금일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원천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10 : 지급조건

필드명 : PAY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지급조건(예 : 일람지급, 30일 후 지급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경로별로 지급조건이 차이가 있다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지급조건을 고객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조기지급 할인이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면 위 지급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 신용장거래방식의 경우 10.1 L/CNUM(신용장번호)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필드번호 11 : 인도조건

필드명 : DEL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인도조건(예 : FOB, C&F, CIF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경로별로 인도조건이 차이가 있다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2 : 고객코드

필드명 : CUSTNUM

설명 : 각 판매 건별 고객코드를 보고하고 귀사의 고객 코드, 주소, 이름이 기재된 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13 : 고객구분

필드명 : CUSCAT

설명 : 아래의 코드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십시오.

1 = 제조업자

2 = 상사

3 = 도매상

4 = 소매상

5 - n = 기타

필드번호 14 : 유통경로

필드명 : CHANNEL

설명 : B-4에서 제시한 유통경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5 : 고객구분(관계자(회사)여부)

필드명 : CUSREL

설명 : 아래의 코드를 이용하여 관계자(회사)를 구분하십시오.

U = 비관계자(회사)

A = 관계자(회사)

필드번호 16 : 주문서 또는 계약 번호

필드명 : ORDNUM

설명 : 주문서 또는 계약번호를 보고하십시오. 주문번호의 생성체계와 번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 해상운송방식의 경우 16.1 B/LNUM(선하증권번호)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필드번호 17 : 제품등급

필드명 : GRA

설명 : 귀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세부 제품등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8 : 매출량

필드명 : QTY

설명 : 매출량을 보고하십시오. 각 출하 기준 혹은 상업송장의 행번 별 수량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수량의 단위가 달라 단위기준으로 환산이 필요한 경우, 환산된 수량은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19 : 수량단위

필드명 : QTU

설명 : 수량단위를 입력하십시오. 판매와 비용 발생 시 여러 단위가 사용되는 경우 주요 단위를 선정하여 단일한 단위기준으로 데이터를 보고하고, 별개의 필드를 추가하여 발생 단위기준의 값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0 : 송장금액

필드명 : SALESAM

설명 : 최초의 고객에 대한 거래통화기준 세후 매출액을 보고하고 단위를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21 : 조기지급할인액

필드명 : EPAY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고객별 조기지급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2 : 수량할인액

필드명 : QTY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고객별 수량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3 : 기타할인액

필드명 : OTH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기타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추가 필드를 삽입하여 작성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

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4 : 순송장금액

필드명 : NETSALES

설명 : 필드 21에서 23에 보고된 금액을 매출액(필드 20)에서 차감한 순 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5 : 현지통화 순송장금액

필드명 : TURNOVER

설명 : 필드 24에 보고된 순송장금액을 귀사의 회계시스템상에 기록된 내수통화로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6 : 반품수량

필드명 : CREDQTY

설명 : 반품수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7 : 반품금액

필드명 : CREDTURN

설명 : 반품금액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8 : 반품 후 수량

필드명 : NETQTY

설명 : 반품 후 수량을 보고하십시오.(즉, QTY - CREDQTY)

필드번호 29 : 반품 후 금액

필드명 : NETVAL

설명 : 반품 후 순 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즉, NETSALES - CREDTURN)

필드번호 30 : 금액조정

필드명 : BILLADJ

설명 : 송장에서 직접 차감되는 할인(필드번호 21에서 23) 및 리베이트(필드번호 30) 이외의 송장에서 차감되지 않는 금액조정 및 할인이 있는 경우,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과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금액조정의 유형이 다양한 경우 추가필드를 삽입하여 보고하고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금액을 증가시키는 조정은 양, 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음의 부호로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1 : 리베이트

필드명 : REBAT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지 않는 판매건별 리베이트를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리베이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귀사의 리베이트 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리베이트금액 산출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32 : 간접세

필드명 : INDTAX

설명 : 각 판매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세를 보고하고, 어느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설명하십시오. 각각의 세금항목에 대하여 세금의 부과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십시오. 또한 각 세금항목의 계산방법, 정산방법, 납부와 관련한 서류도 첨부하십시오.

필드번호 33 : 공장에서 물류창고까지 내륙운반비

필드명 : INLFTW

설명 : 귀사의 공장에서 창고(또는 중간 경유지)까지의 운반비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공장에서 항구까지의 운반비는 필드 번호 34번에 보고하십시오. 운송형태(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운송을 위해 사용한 배송업체와 맺은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고, 배송업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여러 항목이 동일

운송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배부한 경우 발생 단위에 근거하여 배부하고 배부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본사 소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 계산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4 : 물류창고비용

필드명 : INWARE

설명 : 창고보관비용을 보고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비용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보관비용 및 고객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귀사가 운영하는 물류창고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창고의 위치를 설명하십시오. 고객을 위해 창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 리스트와 함께 제공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창고가 타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운영회사와 귀사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5 : 공장/물류창고에서 항구까지 내륙운반비

필드명 : INLFTP

설명 : 귀사가 재심사대상물품을 항구까지 운송하기 위해 발생한 운반비금액을 보고하십시오. 운송형태(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여러 항목이 동일 운송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배부한 경우 발생단위에 근거하여 배부하고 배부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운송을 위해 사용한 배송업체와 맺은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고, 배송업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본사 소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 계산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6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 부대비용

필드명 : INHANDLE

설명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 부대비용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7 : 보험료

필드명 : ININSUR

설명 : 수출국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 금액을 보고하고,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8 : 해상운반비

필드명 : OCFREIGHT

설명 : 수출항에서 한국까지 배송을 위해 발생한 운반비를 보고하십시오. 운송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십시오. 해당비용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9 : 해상보험료

필드명 : OCINSUR

설명 : 수출항구에서 한국항구까지 발생한 해상보험료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해당비용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0 : 한국내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필드명 : KRCHARGE

설명 : 한국 내에서 발생한 핸들링,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1 : 한국내 항구에서 물류창고까지 운반비

필드명 : KINLFPW

설명 : 한국통관 후 물류창고까지 발생한 운반비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2 : 한국내 물류창고비용

필드명 : KRWARE

설명 : 창고보관비용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비용은 고객에게 별도로 청구하여 회수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필드번호 43 : 항구/물류창고에서 고객까지 운반비

필드명 : KINLFWC

설명 : 한국내 항구 또는 물류창고에서 고객까지 발생한 운반비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4 : 한국내 보험료

필드명 : KRINSUR

설명 : 한국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 금액을 보고하고,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5 : 신용비용

필드명 : CREDIT

설명 : 단기차입이자율을 사용한 신용비용을 계산하십시오. 귀사가 적용한 단기차입이자율 관련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신용비용은 개별 매출건의 입금일과 판매일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계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의 평균 회전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46 : 신용기간

필드명 : CREPRD

설명 : 위 신용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일수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7 : 은행수수료

필드명 : BKCHARGE

설명 : 한국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시 발생한 은행수수료를 보고하십시오. 은행수수료의 항목이 다양한 경우 각 항목 별 설명

을 제공하십시오. 은행별 수수료가 다른 경우 은행별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 필드에 보고된 비용의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8 : 판매보증비용

필드명 : WARR

설명 : 판매보증비용을 보고하십시오. 배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제외한 후 보고하십시오. 직전 3 회계연도 동안의 연도별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판매보증비용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비용의 산출방법과 근거를 명시하십시오. 이러한 비용이 재심사대상물품의 일부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또는 여러 물품에 공통적으로 발생된 비용이라면 관련금액을 배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판매보증 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거래건별 파일에 제시된 보증비용의 계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9 : 기술지원 및 서비스비용

필드명 : AFTERSAL

설명 : 기술서비스 비용을 보고하십시오. 배상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제외한 후의 비용을 보고하십시오. 거래처에 제공하는 서비스, 수리, 상담 등의 서비스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50 : 수수료

필드명 : COMM

설명 : 판매와 관련하여 지불한 지급수수료의 금액과 그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여러 종류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종류별로 별도의 필드에 보고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조건과 수수료가 결정되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업체가 관계회사인지 여부를 설명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1 : 판매대행사

필드명 : SELAGEN

설명 : 판매 대행업체의 이름 또는 내부 관리코드를 보고하십시오. 여러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업체별 수수료를 및 관계자(회사) 여부를 표시한 리스트를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52 : 관세 및 통관비용

필드명 : DTCREAR

설명 : 수입통관 시 실제 부담한 관세액과 통관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고하고, 계산방식을 보여주는 파일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3 : 포장비

필드명 : PACK

설명 : 한국 수출을 위해 발생한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비에는 재료비, 인건비 및 가공비가 포함됩니다. 여러 공장에서 포장비가 발생한 경우 공장별 가중평균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 자재비, 인건비, 가공비 별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포장 자재비의 경우 소요되는 자재 리스트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4 : 한국 내 포장비

필드명 : KPACK

설명 : 한국 내에서 발생한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비에는 재료비, 인건비 및 가공비가 포함됩니다. 한국 내에서 이뤄지는 포장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55 : 환율

필드명 : FXRATE

설명 : 송장금액을 회계장부 표시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을 기재하십시오. 아울러 기재된 환율의 출처와 적용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외화환산과 관련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국의 환율변동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수출과 관련된 최근 2년 동안의 외화의 공식 매도율과 매입률 자료와 중앙은행환율을 제시하십시오. 또한 비공식 환율이 있다면 그것을 기재하고 그 원천을 밝히십시오.

필드번호 56 : 과세가격

필드명 : CIFVAL

설명 : 한국 통관 시 보고한 과세가격을 보고하십시오. CIF금액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 방식과 증빙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7 : 수입상

필드명 : IMPORTER

설명 : 수입자를 기재하십시오.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확인 안 됨”으로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58 : 제조자

필드명 : MFR

설명 : 귀사가 제조자가 아닌 경우 제조자명을 표시하십시오. 제조자를 모르는 경우 귀사에게 대상물품을 공급한 공급자를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59 : 포장유형

필드명 : PACK TYPE

설명 : 제품이 판매되는 포장유형을 보고하십시오.

Section F. 내수시장 판매

Section F에서는 내수시장에서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귀사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판매가격과 가격 책정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심사대상물품이 내수시장에서 판매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⁷⁾, 무역위는 Section G의 구성가격이나 한국을 제외한 타국가로의 수출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본 질문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내에 문의하십시오.

재심사대상기간 내에 포함되는 판매인지 여부는 상업송장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매일에 대한 정의는 부록I을 참고하십시오.

F-1. 내수판매 및 조정

이 부분에서는 귀사가 관계자(회사) / 비관계자(회사)에게 직접 판매한 건별 매출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전체 매출액에서 “DMSALE” 파일에 보고된 매출액을 구별해 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2. “DMSALE” 파일에는 건별 판매자료와 그에 대한 조정사항을 제시하십시오. 표본거래에 대하여 조정사항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 한 세트를 제출하십시오. 조정사항 중 관계자(회사)에 의해 발생한 항목이 있는 경우 조정사항별 관련된 관계자(회사)리스트를 제공하고 정상가격 여부를 입증하십시오.
3. 내수가격과 관련된 조정사항과 연관이 있는 모든 계정을 열거하고 관련 조정사항을 표시하는 차트를 제출하십시오.

7) 통상 대한민국 수출물량의 5%미만인 경우를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F-2. 내수판매의 파일 포맷

파일명 : DMSALE

필드번호 0 : 일련번호

필드명 : SN

설명 : 각 매출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십시오. 이 번호는 타 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필드번호 1 : Control Code Number

필드명 : CCN

설명 : C-1에 따라 CCN 번호를 작성하십시오. 한국 내에서 추가 가공되는 경우 수입당시 제품을 기준으로 CCN 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필드번호 2 : 제품코드

필드명 : PRODCOD

설명 : 회계관리 목적으로 귀사에서 부여한 제품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 : 모델명

필드명 : MODEL

설명 : 송장에 표시되는 제품모델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1 : 모델명-1

필드명 : MODEL-1

설명 : 홈페이지, 브로셔 등 대외적으로 제품을 표시하는 모델명 내지 브랜드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 : 상업송장일자

필드명 : INVDATE

설명 : 판매건별 송장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5 : 판매일

필드명 : SALDATE

설명 : 송장일자와 다른 경우에만 보고하십시오. 판매일 보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당 조사관과 연락하십시오.

필드번호 6 : 상업송장 번호

필드명 : INVNUM

설명 : 상업송장 번호를 보고하십시오. 또한 송장번호의 생성체계와 번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7 : 출하일

필드명 : SHIPDATE

설명 : 공장 또는 보관창고에서 고객에게 출고된 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8 : 대금입금일

필드명 : PAYDATE

설명 : 판매대금 입금일을 보고하고 해당 입금일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원천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9 : 지급조건

필드명 : PAY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지급조건(예 : 일람지급, 30일 후 지급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경로별로 지급조건이 차이가 있다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지급조건을 고객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조기지급 할인이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면 위 지급 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0 : 인도조건

필드명 : DEL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인도조건(예 : FOB, C&F, CIF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경로별로 인도조건이 차이가 있다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1 : 고객코드

필드명 : CUSTNUM

설명 : 각 판매건별 고객코드를 보고하고 귀사의 고객코드, 주소와 이름이 기재된 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12 : 고객구분

필드명 : CUSCAT

설명 : 아래의 코드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십시오.

- 1 = 제조업자
- 2 = 상사
- 3 = 도매상
- 4 = 소매상
- 5 - n = 기타

필드번호 13 : 유통경로

필드명 : CHANNEL

설명 : B-4 에서 제시한 유통경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4 : 고객구분(관계자(회사)여부)

필드명 : CUSREL

설명 : 아래의 코드를 이용하여 관계자(회사)를 구분하십시오.

- U = 비관계자(회사)
- A = 관계자(회사)

필드번호 15 : 주문서 또는 계약 번호

필드명 : ORDNUM

설명 : 주문서 또는 계약번호를 보고하십시오. 송장번호의 생성체계와 번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6 : 제품등급

필드명 : GRA

설명 : 귀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세부 제품등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7 : 매출량

필드명 : QTY

설명 : 매출량을 보고하십시오. 각 출하기준 혹은 상업송장의 행번호
수량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필드번호 18 : 수량단위

필드명 : QTU

설명 : 수량단위를 입력하십시오. 판매와 비용 발생 시 여러 단위가
사용되는 경우 주요단위를 선정하여 단일한 단위기준으로 테
이터를 보고하고, 별개의 필드를 추가하여 발생 단위기준의 값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9 : 송장금액

필드명 : SALESAM

설명 : 최초의 고객에 대한 세후 매출액을 보고하고 단위를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20 : 조기지급 할인액

필드명 : EPAY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고객별 조기지급 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
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1 : 수량할인액

필드명 : QTY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고객별 수량 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
하여 귀사의 할인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
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
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2 : 기타 할인액

필드명 : OTH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기타 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추가필드를 삽입하여 작성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
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
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방법
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
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송장별로 직접 추적하여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번호 23 : 순송장금액

필드명 : NETSALES

설명 : 필드 20에서 22에 보고된 금액을 매출액(필드 19)에서 차감한
순 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4 : 현지통화 순송장금액

필드명 : TURNOVER

설명 : 필드 24에 보고된 순송장금액을 귀사의 회계시스템상에 기록된
내수통화로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5 : 반품수량
필드명 : CREDQTY
설명 : 반품수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6 : 반품금액
필드명 : CREDTURN
설명 : 반품금액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7 : 반품 후 수량
필드명 : NETQTY
설명: 반품 후 수량을 보고하십시오.(즉, QTY - CREDQTY)

필드번호 28 : 반품 후 금액
필드명 : NETVAL
설명 : 반품 후 순 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즉, NETSALES - CREDTURN)

필드번호 29 : 금액조정
필드명 : BILLADJ
설명 : 송장에서 직접 차감되는 할인(필드번호 20서 22) 및 리베이트
(필드번호 29) 이외의 송장에서 차감되지 않는 금액조정 및 할
인이 있는 경우,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과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금액 조정의 유형이 다양한 경우 추가필드를 삽입하여 보고하고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금액을 증가시키는 조정은 양, 감액시키는
경우는 음의 부호로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0 : 리베이트
필드명 : REBAT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지 않는 판매 건별 리베이트를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경로별 다른 리베이트 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귀사의 리베이트 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본

거래를 통해 리베이트금액 산출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31 : 물리적 특성 차이
필드명 : PHYDIFF
설명 : 각 모델별로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금액을
보고하십시오. 조정금액은 두 모델의 차이에 대한 시장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산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물리적 특성 차이에 대
한 세부목록을 항목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귀사
가 주장하는 각 차이별로,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32 : 간접세
필드명 : INDTAX
설명 : 각 판매 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세를 보고하고, 어느 계정
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설명하십시오. 각각의 세금항목에 대하
여 세금의 부과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
을 첨부하십시오. 또한 각 세금항목의 계산방법, 정산방법, 납
부와 관련한 서류도 첨부하십시오.

필드번호 33 : 공장에서 물류창고까지 내륙운반비
필드명 : INLFTW
설명 : 귀사의 공장에서 창고(또는 중간 경유지)까지의 운반비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운송형태(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여
러 항목이 동일 운송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배부한 경우
발생단위에 근거하여 배부하고 배부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하십시오. 본사 소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
송비 계산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4 : 물류창고비용
필드명 : INWARE

설명 : 창고 보관비용을 보고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비용은 공장
에서 발생하는 보관비용 및 고객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귀사가 운영하는 물류창고 시스템의 운영방식
과 창고의 위치를 설명하십시오. 고객을 위해 창고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 리스트와 함께 제공 용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창고가 타 회사에 의해 운영
되는 경우 운영 회사와 귀사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귀사가
이 필드에 보고된 비용을 계산한 방식을 첨부파일로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35 : 공장/물류창고에서 고객까지 내륙운반비

필드명 : INLFTP

설명 : 귀사가 재심사대상물품을 고객까지 운송하기 위해 발생한 운반
비금액을 보고하십시오. 운송형태(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
십시오. 여러 항목이 동일 운송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배
부한 경우 발생단위에 근거하여 배부하고 배부방법에 대한 설
명을 제공하십시오. 운송을 위해 사용한 배송업체와 맺은 계약
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고, 배송업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본사 소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 계산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6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필드명 : INHANDLE

설명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7 : 보험료

필드명 : ININSUR

설명 : 수출국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금액을 보고하고, 계산 방식을 설
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8 : 신용비용

필드명 : CREDIT

설명 : 단기차입이자율을 사용한 신용비용을 계산하십시오. 귀사가 적
용한 단기차입이자율 관련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신용비용은
개별 매출건의 입금일과 판매일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되,
계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의 평균회전일수를 기준으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39 : 신용기간

필드명 : CREPRD

설명 : 위 신용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일수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0 : 은행수수료

필드명 : BKCHARGE

설명 :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시 발생한 은행수수료를 보고하십시오.
은행수수료의 항목이 다양한 경우 각 항목별 설명을 제공하십
시오. 은행별 수수료가 다른 경우 은행별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 필드에 보고된 비용의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1 : 판매보증비용

필드명 : WARR

설명 : 판매보증비용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배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보고하십시오. 직전 3 회계연도 동안의
연도별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판매보증비용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비용의 산출방법과 근거를 명시하십시오. 또한 연도별 판매
보증비용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이러한 비용이 재심사대상물품의
일부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또는 여러 물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관련금액을 배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판매보증 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거래건별 파일에 제시된 보증비용의 계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
십시오.

필드번호 42 : 기술지원 및 서비스비용

필드명 : AFTERSAL

설명 : 기술서비스 비용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배상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보고하십시오. 거래처에 제공하는 서비스, 수리, 상담 등의 서비스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3 : 수수료

필드명 : COMM

설명 : 판매와 관련하여 지불한 지급수수료와 그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여러 종류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종류별로 별도의 필드에 보고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조건과 수수료가 결정되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업체가 관계회사인지 여부를 설명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44 : 판매 대행사

필드명 : SELAGEN

설명 : 판매 대행업체의 이름 또는 내부관리코드를 보고하십시오. 여러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업체별 수수료율 및 관계자(회사) 여부를 표시한 리스트를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45 : 포장비

필드명 : PACK

설명 : 내수판매를 위해 발생한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비에는 재료비, 인건비 및 가공비가 포함됩니다. 여러 공장에서 포장비가 발생한 경우 공장별 가중평균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 자재비, 인건비, 가공비별 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포장 자재비 경우 소요되는 자재 리스트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46 : 제조자

필드명 : MFR

설명 : 귀사가 제조자가 아닌 경우 제조자명을 표시하십시오. 제조자를 모르는 경우 귀사에게 대상물품을 공급한 공급자를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47 : 포장유형

필드명 : PACK TYPE

설명 : 제품이 판매되는 포장유형을 보고하십시오.

F-3. 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귀사로부터 재심사대상물품을 구매한 후 추가 가공하여 비재심사대상물품을 생산, 판매한 경우는 관계자(회사)가 동 제품을 소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외의 경우 관계자(회사)가 해당 재심사대상물품을 재판매한 것으로 봅니다.

1. 내수시장에서 귀사로부터 재심사대상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한 관계자(회사)리스트를 제공하고, 관계자(회사)를 통한 재판매 비율을 제출하십시오.
2. 한국 외에 위치한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귀사로부터 재심사대상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DMSALE"를 제출하여야 합니다.(A-2.9 참조). 이때, 매출액은 재판매한 관계자(회사)가 최초의 비관계자(회사)에게 판매한 금액을 보고하여야 하며, 재판매한 관계자(회사)가 지출한 비용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3. 관계자(회사)가 판매보증 서비스, 기술지원 서비스, 운송 등의 서비스를 비관계자(회사) 고객에게 제공하는지 설명하십시오.
4. 내수시장에서 귀사로부터 재심사대상물품을 구매하여 소비한 관계자(회사)리스트를 제공하고, 해당 판매비율을 제출하십시오. 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에 적용되는 가격정책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SECTION G. 제조원가 및 구성가격

G-1. 일반설명

본 장은 귀사의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내수판매, 한국 및 기타국으로의 수출판매와 관련된 생산원가 및 구성가격 보고내용을 설명합니다. 작성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본 질문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내에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십시오.

1. 제조원가(Cost of manufacturing)

제조원가는 귀사에 의해서 생산된 재심사대상물품의 CCN별 가중평균 제조원가를 의미합니다. 무역위가 별도로지시를 하지 않는 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대상물품에 대한 단위당 제조원가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역위는 생산원가나 구성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제조원가 자료를 활용할 것입니다.

2. 생산원가(Cost of production)

생산원가는 귀사에 의해서 판매된 재심사대상물품의 CCN별 가중평균 생산원가를 의미합니다. 무역위가 별도로지시를 하지 않는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내수, 한국 및 기타국 시장에서 판매된 모든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단위당 매출원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역위는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생산원가와 내수판매가격을 비교할 것입니다.

3.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

구성가격은 귀사가 한국시장에 판매한 재심사대상물품의 CCN별 가중평균 생산원가에 내수시장의 이윤을 더한 금액입니다. 구성가격은 정상

가격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제품이 마치 내수시장에서 판매된 것과 같은 상황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귀사가 구성가격을 제출하는 경우 계산에 사용된 원천자료와 함께 계산 방식 설명자료를 제출하시고 아래의 표를 작성하십시오. 아래 표의 필드는 "COM" 파일의 필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CCN	COM	판매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CV profit	CV

4. 제조원가와 생산원가의 보고대상기간

본장의 제조원가, 생산원가에 대한 답변은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귀사에 의해서 발생한 정상적인 회계기록 하의 실제원가에 근거해서 보고하여야 합니다.⁸⁾

5. 가중평균 제조원가, 생산원가

생산원가, 제조원가는 각 CCN별 생산수량을 가중요소로 하여 평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동 물품을 생산한다면 생산원가, 제조원가는 각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가중평균하여야 합니다.

8) 만약 귀사의 회계연도가 재심사대상기간과 3개월 이하로 차이가 난다면, 귀사의 회계연도에 근거한 자료로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역위의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십시오.

G-2. 일반사항

다음 항목의 질문에 대해서 완전하고 자세한 답변을 하십시오.

1. 제품 설명

귀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2. 생산공정

재심사대상물품의 생산공정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귀사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재심사대상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생산품을 구분하여 주십시오.
- 재심사대상물품의 생산공정에 대한 흐름도를 제공하십시오.
- 생산공정을 통하여 공정산출물 또는 작업로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재심사대상물품의 생산공정에서 연산품, 스크랩 혹은 부산물 등이 생산된다면 이를 나열하십시오.
- 재심사대상물품의 생산을 위한 특정 원재료, 노무, 전기 또는 다른 동력, 기계와 설비, 하청계약,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투입요소를 나열하고 이 중 관계자(회사)로부터 조달되는 투입요소를 구분하십시오.
-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재심사대상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주요 투입요소 3개에 대해(예 : 원재료, 에너지 비용 등) 다음의 양식에 맞춰 구매수량 및 금액을 제출하십시오. 주요 투입요소는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원가요소를 의미합니다.

(단위 :)

연월	투입요소1			투입요소2			투입요소3		
	수량	금액	COM 대비 비중	수량	금액	COM 대비 비중	수량	금액	COM 대비 비중

g-1.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재심사대상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관계자(회사)로부터 구매한 주요 투입요소의 리스트를 제공하십시오. 각 주요 투입요소 별로 다음의 표를 완성하십시오.

(단위 :)

주요 투입 요소	공급자명	공급자와의 관계	구매 수량	구매 금액	평균 구매 단가	공급사의 COP	공급자별 구매 비중	COM 대비 비중
요소1	관계자(회사) 공급자명	A	(a)	(b)	(c=b/a)	(d)	(i=a/h)	
	비관계자(회사) 공급자명	U	(e)	(f)	(g=f/e)	-	(i=e/h)	
	총 합		(h)					

- 투입요소 및 관계자(회사) 별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총 구매수량
- 투입요소 및 관계자(회사) 별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총 구매금액
- 평균구매단가
- 관계자(회사)인 공급사의 COP(제조원가와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합금액) 및 COP계산에 대한 설명과 근거자료 제시
- 투입요소별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비관계자(회사)로부터 구매한 총 수량 및 금액
-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관계자(회사)인 공급사가 비관계자(회사)에게 판매한 동일물품의 매출량 및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각 주요 투입요소 별로 다음의 표를 완성하십시오.

(단위 :)

주요투입요소	비관계자(회사) 명	판매수량	판매금액	평균판매 단가	공급사의 COP
요소1	.	(a)	(b)	(c=b/a)	
	.				
	총 합	(d)			

g-2. g-1에서 특수관계자(회사)로부터 주요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주요 원재료, 공급사별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구매단가(생산량, 제조원가, 제조단가, 구매수량, 구매금액, 구매단가 등)
- COP(손익계산서 등 COP 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포함)
- 공급사의 관련 주요 원재료 판매현황

3. 원가계산제도 및 회계정책

귀사의 정상적인 원가계산제도 및 통상적인 사업에서 재심사대상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된 원가를 분류, 집계, 배분,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a. 회계제도에 대한 답변 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십시오.

- 귀사의 정상적인 원가회계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 귀사가 통상적으로 원가를 집계하는 제품군의 단계
- 귀사의 원가회계제도와 관련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록 및 관리 보고서의 형태별 설명

- b. 만약 귀사의 원가회계제도가 표준원가 또는 예산원가에 기초하고 있다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i. 귀사의 원가계산제도 하에서 기록되고 있는 차이분석의 종류
 - ii. 각 차이를 계산하고 기록하는 대상기간
 - iii. 각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
 - iv. 표준 또는 예산원가(예 : 투입가격과 사용량)가 계산되는 방법 및 귀사가 이러한 표준 또는 예산원가를 개정하는 빈도 그리고 가장 최근 재심사대상물품과 관련하여 투입요소의 가격 및 투입량 정보를 개정한 일자
 - v. 각 회계기간 동안 생산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유리한 차이 또는 불리한 차이의 처분(조업도 차이 포함) (예 : 매출원가에 배분,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에 안분 등)
- c. 각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처리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하십시오.
- d. 재심사대상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산품 또는 부산품이 발생하는 경우 귀사의 원가회계제도 하에서 동 물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하십시오.
- e. 재무회계 목적과 원가회계 목적상 각각 다르게 평가되는 생산원가가 있다면 모두 설명하십시오.
- f. 재심사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 원가계산 기간이 초기가동 기간에 해당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초기가동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정사항을 제출하십시오.

G-3. 답변 형식

Section G에 대한 답변은 단위당 제조원가, 생산원가 및 구성가격의 계산이 귀사의 원가계산 시스템에서 계산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귀사에서 사용하는 회계 기록 및 관련 재무제표와도 일치하여야 합니다.

제조원가, 생산원가 및 구성가격은 귀사의 정상적인 회계기록에 기초해서 산정하고 그 기록은 수출국(또는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과 일치해야 합니다.

1. 답변방법의 기술

귀사의 제조원가, 생산원가 및 구성가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 a. 다음의 각 원가요소에 대해 단위당 제조원가와 생산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귀사가 사용하는 원가 및 재무회계 기록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i. 원재료
 - ii. 노무비
 - iii. 제조간접비(귀사가 제출한 간접비 금액에 대한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공)
 - iv. 연구개발비
 - v. 일반관리비(귀사가 잡손과 잡익으로 처리한 항목을 포함한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공)

- vi. 판매비(귀사가 제출한 수치에 대한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공)
- vii. 순 금융비용(모든 이자수입 항목, 비용항목, 순이자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총액)
- b. 귀사의 손익계산서와 반덤핑조사를 위하여 제출한 원가 사이에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아래의 지침에 따라 제출하십시오. 자료는 귀사의 재무제표에서 시작하여, 최종 보고된 원가 데이터까지 단계별 접근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 원천 데이터를 표시하십시오.
- i. 감사보고서상의 손익계산서의 원가와 귀사 회계장부(자산표, 보조부 등) 원가의 연결
- ii. 귀사 회계장부 상의 원가에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의 원가 식별
- iii. 회계장부 상의 재심사대상기간 원가와 원가시스템 상의 원가 연결
- iv. 원가시스템상의 원가와 제조원가의 연결
- v. 재심사대상기간 동안의 제조원가와 무역위에 보고한 원가와의 연결
 - 보고에서 제외된 제품의 리스트와 이유
- c. 귀사가 재심사대상기간 동안에 한 곳 이상의 시설(설비)에서 물품을 생산하였다면 귀사가 생산에 사용한 모든 시설로부터 계산된 가중평균 모델별 제조원가를 제시하시고 적용한 가중평균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2. 계산내역

귀사의 단위당 제조원가의 계산내역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답하십시오.

- a.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내수,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판매된 재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CCN 별 "COM"파일을 제출하십시오.
- b. 내수시장 및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CCN에 대하여, "COM"파일에 보고된 원가의 산출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표준원가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차이 배부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파일명 : COM

필드번호 1 : Control Code Number

필드명 : CCN

설명 : C-1에 따라 CCN 번호를 작성하십시오.

필드번호 2 : 제품코드

필드명 : PRODCOD

설명 : 회계관리 목적으로 귀사에서 부여한 제품 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 : 모델명

필드명 : MODEL

설명 : 송장에 표시되는 제품모델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 : 제품타입

필드명 : PTYPE

설명 : 아래의 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하십시오.

P = 귀사가 직접 제조

M = 타 공급사로부터 구매 후 재판매

필드번호 5 : 생산수량

필드명 : QTYPROD

설명 : 재심사대상기간 동안의 생산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6 : 직접재료비
필드명 : DIRMAT

필드번호 7 : 부산물
필드명 : TOTSCRAP

필드번호 8 : 직접노무비
필드명 : DIRLAB

필드번호 9 : 변동제조경비
필드명 : VOH

필드번호 10 : 고정제조경비
필드명 : FOH

필드번호 11 : 제조원가
필드명 : SUBTOTPROD
설명 : 필드6 - 필드7 + 필드8 + 필드9 + 필드10

필드번호 12 : 기초 재공품
필드명 : BEGWIP

필드번호 13 : 구매 재공품
필드명 : PURCHWIP

필드번호 14 : 타계정 입고
필드명 : TRINWIP

필드번호 15 : 타계정 출고
필드명 : TROTWIP

필드번호 16 : 기말재공품
필드명 : ENDWIP

필드번호 17 : 제품제조원가
필드명 : TOTCOM
설명: 필드11 + 필드12 + 필드13 + 필드14 - 필드15 - 필드16

필드번호 18 : 단위당 제품제조원가
필드명 : TOTCOMUNIT
설명 : 필드17 / 필드5

G-4. 매출원가

1. 매출원가/재고 : 모든 제품과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해 아래의 “COGS”와 “INVEN” 파일을 완성하십시오. 각 파일에 단위를 표시하십시오.
재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재심사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파일명 : COGS

<모든 제품>

(단위 :)

항목		[]	[]	[]	재심사대상기간
매출액	1				
매출원가					
제품					
기초재고	2				
제조원가	3				
기말재고	4				
매출원가	5=2+3-4				
상품					
기초재고	6				
구매입고	7				
기말재고	8				
매출원가	9=6+7-8				
총매출원가	10=5+9				
매출총이익	11=1-10				
매출이익률	12=11/1				

<재심사대상물품>

(단위 :)

항목		[]	[]	[]	재심사대상기간
매출액	1				
매출원가					
제품					
기초재고	2				
제조원가	3				
기말재고	4				
매출원가	5=2+3-4				
상품					
기초재고	6				
구매입고	7				
기말재고	8				
매출원가	9=6+7-8				
총매출원가	10=5+9				
매출총이익	11=1-10				
매출이익률	12=11/1				

파일명 : INVEN

< 재심사대상물품 수량 >

(단위 :)

CCN	제품 코드	기초 재고	생산	구매	판매	타계정 대체	기타 증가	기타 감소	기말재고

<재심사대상물품 금액>

(단위 :)

CCN	제품코드	기초제고	생산	구매	판매	타계정대체	기타증가	기타감소	기말제고

* 필요한 경우 필드를 추가하십시오.

* 기타증가, 감소의 경우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2. 판매 및 일반관리비용의 배부 : COP 계산에 사용된 판매 및 일반관리비용의 배부를 이해하기 위해 "SG&A"파일을 작성하십시오.

(단위 :)

항목		모든 제품	비재심사대상물품	재심사대상물품	배부기준 공식
매출액					
매출원가					
제조원가					
총판매비용	(1)				
운반비					
수수료					
감가상각비					
:					
총일반관리비용	(2)				
인건비					
전력비					
:					
총영업외 수익및비용	(3)				
이자수익					
이자비용					
:					
총합	(1+2+3)				

* 재심사대상물품 생산·판매와 관련된 영업외 수익과 특별이익을 보고했다면, 해당 수익과 재심사대상물품 생산·판매와 관련 있음을 입증하고 그 세부내역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5. 생산원가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내수시장 및 한국에 판매된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 각 CCN별 다음의 정보를 위한 "COP" 파일을 제공하십시오.

*	항 목 명	항목코드	항 목 설 명
1	시장	(MKT)	시장 구분
2	Control code	(CCN)	질문서 Section C-1에서 언급
3	제품 코드	(PRODCOD)	제품 코드
4	POR 동안의 매출량	(QTYSOLD)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판매된 단위당 모델별 재심사대상물품의 총량.
5	단위당 COM	(COMUNIT)	POI동안 판매된 각 모델별의 단위당 COM
6	총 판매비	(SELL)	내수/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총 관련비용
7	총 일반관리비	(G&A)	내수/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관련비용
8	순 금융비용	(FINANC)	내수/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관련비용
9	총 연구개발비용	(R&D)	내수/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총 비용
10	기타	(OTHER)	기타 비용
11	총 판매관련 비용	(SELLREL)	6에서 10까지의 합계
12	단위당 판매관련 비용	(SELLUNIT)	단위당 판매관련 비용
13	단위당 생산원가	(COPUNIT)	5와 12의 합계

Section H. 한국 내 추가가공 또는 조립 원가

본 장에서는 한국 내에서 추가가공 또는 조립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원가의 보고 관련 지침을 설명합니다.

H-1. 일반설명

1. 추가가공원가

생산원가는 한국 내에서 추가가공 또는 조립 시 발생하는 원재료, 노무비, 가공비, 재포장비용, 판매 및 일반관리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원가를 의미합니다.

2. 보고기간

답변은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귀사에 의해서 발생한 정상적인 회계기록 하의 실제원가에 근거해서 보고하여야 합니다.⁹⁾

3. 가중평균 추가가공원가

추가가공원가는 각 CCN별로 한국 내 판매물량을 가중요소로 하여 평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한국 내 생산시설에서 동 물품을 생산한다면 각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가중평균하여야 합니다.

9) 만약 귀사의 회계연도가 재심사대상기간과 3개월 이하로 차이가 난다면, 귀사의 회계연도에 근거한 자료로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역위의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십시오.

H-2. 일반사항

다음 항목의 질문에 대해서 완전하고 자세한 답변을 하십시오.

1. 생산공정

재심사대상물품의 한국 내 추가가공 공정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a. 귀사의 추가가공 생산시설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b. 동 설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 리스트를 제공하고 제품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c. 재심사대상물품의 추가가공 공정에 대한 흐름도를 제출하십시오.

d. 추가가공 공정을 통하여 공정산출물 또는 작업로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e. 재심사대상물품의 생산을 위한 특정 원재료, 노무, 전기 또는 다른 동력, 기계와 설비, 하청계약,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투입요소 리스트를 제출하십시오.

f. 주요 투입요소 중 관계자(회사)로부터 구매한 내역이 있는 경우 투입요소 리스트를 제출하고 아래의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 모든 공급처로부터 구매한 투입요소의 총수량 및 총금액, 관계자(회사)로부터 구매한 투입요소의 총수량 및 총금액

－ 관계자(회사)가 귀사에 청구한 금액

* 관계자(회사)가 비관계자(회사)에게 청구한 내역 또는 귀사가 비관계자(회사)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보고

－ 위의 관계자 청구금액 및 추가가공 원가 계산에 사용한 원천자료

2. 원가계산제도 및 회계정책

- a. 귀사의 원가회계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또한 추가가공시 발생하는 원가를 식별하여 장부에 보고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b. 각 공정별 직접, 간접 코스트 센터리스트를 제공하고, 각 코스트 센터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설명하십시오.
- c. 만약 귀사의 원가회계제도가 표준원가 또는 예산원가에 기초하고 있다면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 i. 귀사의 원가계산제도 하에서 기록되고 있는 차이분석의 종류
 - ii. 각 차이를 계산하고 기록하는 대상기간
 - iii. 각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
 - iv. 표준 또는 예산원가(예; 투입가격과 사용량)가 계산되는 방법 및 귀사가 이러한 표준 또는 예산원가를 개정하는 빈도 그리고 가장 최근 재심사대상물품과 관련하여 투입요소의 가격 및 투입량 정보를 개정한 일자
 - v. 각 회계기간 동안 생산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유리한 차이 또는 불리한 차이의 처분(조업도 차이 포함) (예 : 매출원가에 배분,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에 안분 등)
- d. 재무회계 시스템과 원가회계 시스템이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원가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H-3. 답변 형식

Section H에 대한 답변은 단위당 생산원가와 구성가격의 계산이 귀사의 원가계산 시스템에서 계산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귀사에서 사용하는 회계기록 및 관련 재무제표와도 일치하여야 합니다. 귀사가 실제 원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가가공 원가 계산 시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표준원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추가가공 원가 계산 시에도 역시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표준원가를 실제원가로 전환하기 위한 차이는 적절히 배부되어야 합니다.

귀사는 단위당 추가가공 원가를 귀사의 실제 회계처리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1. 답변방법의 기술

귀사의 추가가공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 a. 다음의 각 원가요소에 대해 단위당 추가가공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귀사가 사용하는 원가 및 재무회계 기록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i. 원재료
 - ii. 노무비
 - iii. 제조간접비(귀사가 제출한 간접비금액에 대한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공)
 - iv. 연구개발비
 - v. 일반관리비(귀사가 잡손과 잡익으로 처리한 항목을 포함한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공)

- vi. 판매비(귀사가 제출한 수치에 대한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공)
- vii. 순 금융비용(모든 이자수입 항목, 비용항목, 순금융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총액)
- b. 귀사의 원가 및 재무회계 시스템에서 계산된 원가와 반덤핑조사를 위하여 제출한 원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2. 계산내역

귀사의 단위당 추가가공 원가의 계산내역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답하십시오.

- a.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CCN에 대하여, 재료비, 노무비, 변동 및 고정제조경비 산출방식을 설명하십시오. 귀사가 표준원가를 사용하는 경우, 원가차이를 배부하는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 b. 판매 및 일반관리비용의 비율을 계산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 c. 순 금융비용비율을 계산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H-4. 추가가공원가 데이터 파일

한국 내에서 발생한 추가가공 원가를 아래의 “EXFUCOM” 및 “EXFUCOM” 파일 양식에 맞춰 제공하십시오. 다만, 필요한 경우 양식을 적절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름 : EXFUCOM

필드번호 1 : Control Code Number

필드명 : CCN

설명 : C-1에 따라 CCN번호를 작성하십시오.

필드번호 2 : 제품코드

필드명 : PRODCOD

설명 : 회계관리 목적으로 귀사에서 부여한 제품 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 : 모델명

필드명 : MODEL

설명 : 송장에 표시되는 제품모델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 : 매출량

필드명 : QTYSOLD

설명 : 재심사대상기간 동안의 매출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5 : 생산수량

필드명 : QTYPROD

설명 : 재심사대상기간 동안의 생산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6 : 직접재료비

필드명 : DIRMAT

필드번호 7 : 부산물
필드명 : TOTSCRAP

필드번호 8 : 직접노무비
필드명 : DIRLAB

필드번호 9 : 변동제조경비
필드명 : VOH

필드번호 10 : 고정제조경비
필드명 : FOH

필드번호 11 : 제조원가
필드명 : SUBTOTPROD
설명 : 필드6 - 필드7 + 필드8 + 필드9 + 필드10

필드번호 12 : 기초 재공품
필드명 : BEGWIP

필드번호 13 : 구매 재공품
필드명 : PURCHWIP

필드번호 14 : 타계정 입고
필드명 : TRINWIP

필드번호 15 : 타계정 출고
필드명 : TROTWIP

필드번호 16 : 기말 재공품

필드명 : ENDWIP

필드번호 17 : 제품제조원가
필드명 : TOTCOM

설명 : 필드11 + 필드12 + 필드 13 + 필드14 - 필드15 - 필드16

필드번호 18 : 단위당 제품제조원가
필드명 : TOTCOMUNIT
설명 : 필드17 / 필드5

파일이름 : EXFUCOP

*	항 목 명	항목코드	항 목 설 명
1	Control code	(CCN)	질문서 Section C-1에 언급
2	제품 코드	(PRODCOD)	제품 코드
3	모델명	(MODEL)	제품 모델명
4	POR 동안의 매출량	(QTYSOLD)	제심사대상기간 동안 한국시장에서 판매된 제심사대상물품의 매출량
5	단위당 COM	(COMUNIT)	POI동안 판매된 각 모델별의 단위당 COM
6	총 판매비	(SELL)	한국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
7	총 일반관리비	(G&A)	한국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
8	순 금융비용	(FINANC)	한국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
9	총 연구개발비용	(R&D)	한국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
10	기타	(OTHER)	기타 비용
11	총 판매관련 비용	(SELLREL)	6에서 10까지의 합계
12	단위당 판매관련 비용	(SELLUNIT)	단위당 판매관련 비용
13	단위당 생산원가	(COPUNIT)	5와 12의 합계

Section I. 전산자료 준비 안내

귀사는 모든 데이터를 다음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출력하여 제출한 자료는 CD 또는 USB로 다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 아래와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회사명	
제출일	

2. 모든 제출자료는 리스트를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3. 답변서는 HWP, MS-WORD 또는 동 프로그램과 호환 가능한 파일 포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질의서가 필요한 경우 담당 조사관과 연락하십시오.
4. 데이터와 표는 MS-EXCEL 또는 동 프로그램과 호환 가능한 파일 포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의 표 양식이 필요한 경우 담당 조사관과 연락하십시오.
5. 파일은 각 자료에 분리, 연계, 공간 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부록 I. 용어해설

질의서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설명과 정의를 첨부합니다.

관계자(회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자(회사)로 볼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가족 구성원 (2) 회사의 임원 또는 관리자 (3) 동업자 (4) 고용주와 그들의 고용인 (5)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6) 상대방을 통제하는 자와 통제받는 상대방 (7) 직접 지배를 행사하는 자와 직접 지배 또는 공동 지배를 받는 자는 관계자에 해당됩니다. 일방이 귀사의 국내 시장의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영업적 위치에 있는 경우 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단계차이 조정

거래단계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무역위는 유통시스템, 고객 분류, 판매활동 및 판매 관련 비용 발생 수준을 조사합니다. 대개는 유통경로가 다른 구매자들이나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다른 판매 활동을 하는 판매자가 있는 경우 다른 거래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판매활동의 차이가 반드시 거래단계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거래단계가 차이가 있는 경우 판매활동의 차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같은 논리로 고객을 도매상, 소매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거래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임은 맞으나 반드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역위는 판매자의 판매과정 전체를 고려하여 다른 거래단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성가격(CV)

수출국 내에서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 (내수판매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및 정상적인 거래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으로 인하여 정상가격을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구성가격은 원산국에서의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내수시장에서 발생하는 적정이윤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덤핑

통상의 상거래에서 재심사대상물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가격이 수출국으로 간주되는 나라에서의 비교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물품은 덤핑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관계자(회사)

관계자(회사)로 정의할 수 없다면 비관계자(회사)로 간주됩니다. : 위의 관계자(회사)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생산원가(COP)

생산원가는 제조원가와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합니다. 재무비용은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일부분입니다. 제조원가와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수출가격(EP)과 구성수출가격(CEP)

한국으로 판매된 제품의 가격은 수출가격과 구성수출가격, 두 종류의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무역위는 덤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합니다. 수출가격과 구성수출가격 모두 국외의 최초 비관계자(회사)에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비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가 한국 내 수입 전에 일어나는 판매의 경우 수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제조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한국에 수출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면, 제조자의 판매가 원심 또는 재심의 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초의 비관계자(회사)에 대한 무역상의 판매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비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가 한국 내 수입 후에 일어나는 판매의 경우 구성수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최초의 비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가 수입 전에 이뤄지더라도, 판매가 한국 내에 존재하는 수출자의 관계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한국 내 관계자(회사)가 단순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구성수출가격으로 판정됩니다.

무역위는 수출가격과 구성수출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송장금액에 판매 관련 부대비용 등의 조정사항을 고려합니다. 이에 더해 구성수출가격의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한 판매 관련 비용, 추가가공 원가 및 수익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한국 내 판매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한국 내 관계자(회사)의 활동과 관련 있습니다. 이들 비용 중 제조자나 수출자에 의해 보상받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은 조정사항에서 제외됩니다.

이용 가능한 자료

이해관계자가 자료(정보) 접근을 또는 제공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자료(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판정이나 최종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제출된 것이 발견되면 그 정보는 무시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덤핑조사 과정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원산국

원산국은 보통 상품의 생산이 전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나, 일국 이상의 국가가 상품의 생산에 관련되었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합니다.

주문자상표표시 생산(OEM)

구입자의 상표로 판매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를 말합니다.

재료비

재료비는 재심사대상물품의 생산에 발생한 모든 재료비를 포함합니다.

정상가격(Normal Value)

정상가격은 수출국에서 독립고객이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기초합니다. 수출국에서 수출자가 재심사대상물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경우의 정상가격은 다른 판매자나 생산자의 가격에 기초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은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에 기초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구성가격(CV) 설명 참조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는 간접노무비, 감가상각비, 동력비, 수선유지비 등 재심사 대상물품에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제조원가(COM)

제조원가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로 구성됩니다. 원재료비,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재심사대상물품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재심사개시 공고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정요소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 공정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case별로 물리적 차이, 수입비용과 간접세, 할인, 리베이트와 수량, 거래단계, 운송, 보험, 핸들링, 하역과 부대비용, 포장, 신용, A/S 비용, 커미션과 환산 금액을 포함한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 조정을 요구하는 생산자 및 수출자는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는 생산량에 직접 영향을 줌으로써 재심사대상물품의 생산 과정과 직접 연계되는 노무비를 말하며, 이 비용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통상(정상)적인 상거래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로서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내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된 거래를 통상적인 상거래로 간주합니다.

판매일

무역위원회는 보통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수출자나 생산자의 기록이 기재된 상업송장 상의 일자를 사용합니다. 다만, 판매일이 수출자나 생산자의 판매조건(가격, 수량)을 더욱 적절히 반영할 경우 다른 일자

(장기계약의 경우에 계약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자가 송장일 외의 다른 일자를 판매일로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 설명을 제시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일에 따라 어떤 판매가 이 질의서의 Section E와 F에 대한 답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와 수출가격을 환산할 적절한 환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판매 및 일반관리비 (SG&A)

판매 및 일반관리비는 생산원가의 일부분이며 별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비용을 포함합니다.

제조원가 = 재료비 + 직접 노무비 + 제조 제경비

생산원가 = 제조원가 + 판매 및 일반관리비

부록 II. 자료의 정확성 입증

본인은 “회사명”에 소속된 “직책, 이름”로서, 제출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본인이 아는 한 완벽하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서 명)

부록 III. 공개본 작성 지침

본 질의서에 대한 공개본 답변서는 모든 수출자, 수입자 및 한국 생산자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공개본 답변서는 비공개로 제출된 정보의 실질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공개본 답변서 작성 시 다음의 사항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1. 완성된 비공개본 답변서를 근거로 귀사가 기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를 식별하여 공개본에 포함하십시오.
2. 귀사가 비공개본 답변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정보가 실제로 비밀정보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기밀정보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본 답변서에 사항별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해당 기밀정보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시하십시오. 요약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요약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아래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여러 해에 걸쳐 관련된 정보를 요약하는 경우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밀 정보 예시

2010	2011	2012
US\$ 100,000	US\$ 200,000	US\$ 300,000

공개본 표시 예

2010	2011	2012
100	200	300

기밀 정보가 단일 수치로 표시되는 경우 백분율을 적용하여 변화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밀정보 예시 : 귀사의 COM이 USD 1000/Ton인 경우 비공개본의 요약 정보는 USD 1100/Ton으로 표시하고, 주석으로 기밀정보이므로 실 제치에서 +/- 10% 범위 안에서 조정되었음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기밀정보가 수치가 아닌 문장인 경우, 요약하거나 이름 등을 제외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밀정보 예시 : "A사로부터 수입가가 20% 낮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문장의 경우 비공개본의 요약정보는 "[고객 중 한곳]으로부터 수입가가 20% 낮다는 사실을 들었다" 로 요약될 수 있다.

駐韓國代表處經濟組 函

地址：(03186)首爾市鍾路區世宗大路149
號光化門大廈6樓
承辦人：邱玉錦
聯絡電話：(82-2)6329-6052
電子郵件：yjchiou@sa.moea.gov.tw

受文者：經濟部國際貿易署

發文日期：中華民國115年8月26日
發文字號：韓經字第1150826041號
速別：速件
密等及解密條件或保密期限：
附件：如文 (707707_韓經字第1150826041號-1.pdf)

主旨：有關韓國決定對我國產製「聚對苯二甲酸乙二醇酯薄膜」
(PET Film)展開反傾銷落日複查事，謹報請鑒察。

說明：

- 一、依據韓國財政經濟部本(2026)年8月26日致本處英文信函辦理。相關文號：本組本年5月6日韓經字第1150506011號函諒蒙鈞察。
- 二、上揭來函略以，該部依據「1994年關稅暨貿易總協定第6條執行協定」第11.2條相關規定通知我方，應韓商Kolon Industries Co., Ltd、Microworks Co., Ltd、Hyosung Chemical Co., Ltd、Hwaseung Chemical Co., Ltd及Toray Advanced Materials Korea Inc.等，依據韓國《關稅法》第56條及同法施行令第70條第1款第2項規定申請對我國、泰國及阿拉伯聯合大公國產製PET Film展開反傾銷落日複查案。該部經與產業通商部貿易調查委員會(KTC)相關部會協商後，決定展開落日複查。相關內容摘要如次：

(一)申請日期：本年6月19日。

(二)申請產品：依據韓國企劃財政部令第877號(2021年12月24日)公告對我國、泰國及阿拉伯聯合大公國課徵反傾銷關稅之貨品；稅則號列(HSK)：3920.62.0000、

3920.69.0000。

(三)申請落日複查主要事由：依據韓國《關稅法》第70條第1款第2項規定，停止課徵反傾銷稅恐再度因傾銷導致國內產業損害再度或持續發生等疑慮。

(四)落日複查對象供應廠商：我國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及泰國及阿拉伯聯合大公國等計5家廠商。

(五)落日複查調查機關：韓國產業通商部貿易調查委員會(KTC)。

(六)落日複查對象期間：

1、傾銷複查期間：2025年1月1日至2025年12月31日。

2、國內產業損害複查期間：2022年1月1日至2025年12月31日。

(七)落日複查進行計畫：

1、複查啟動日：本年8月26日。

2、複查期間：複查啟動日起6個月(依法可延長4個月)

3、是否延長課徵反傾銷關稅決議：複查啟動公開日起12個月。

三、本案倘擬提出相關疑義或資料得逕洽承辦人，相關資訊如下：

(一)財政經濟部反傾銷關稅組：電話(82-44-215-4463)。

(二)產業通商部貿易調查委員會產業損害調查課：電話(82-

44-203-5866)、傳真(82-44-203-4815)。

(三)產業通商部貿易調查委員會傾銷調查支援課：電話(82-44-203-3867)、傳真(82-44-203-4813)。

四、檢陳韓國財政經濟部英文信函及該部第2026-237號令(韓文版)各一份如附件，敬請轉知我相關公會及廠商因應。

正本：經濟部國際貿易署

副本：經濟部國際貿易署雙邊貿易一組



裝

訂

線